

27

독일통일 총서

동독의 통일대비 입법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27

독일통일 총서

동독의 통일대비 입법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총서 27

동독의 통일대비 입법 분야 관련 정책문서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처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7

디자인·제작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전화 02)2272-0307

CONTENTS



I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주요 입법적 조치와 그 정책적 시사점

제1장 서론 10

제2장 통일 이후 법령 조정 14

제1절 동독의 법체계 14

제2절 통합조약상 동독 법령의 조정 17

제3장 통일과정에 있어서 법적 준비단계 19

제1절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의 조성에 관한 조약(국가조약) 19

1. 조약 체결의 의의 19
2. 국가조약의 내용 22

제2절 선거조약 26

1. 선거조약 의의 26
2. 선거조약의 주요 내용 27
3. 선거법 개정(1990.10.8.) 31

제3절 통일조약 32
1. 통일조약의 의의 32
2. 통일조약의 법적 성격 33
3. 통일조약상 법령의 조정 35
4. 국제법제 조정 38
제4절 2+4 협정 40
1. 2+4 협정의 체결 40
2. 2+4 협정의 내용 41
3. 2+4 협정의 법적 의미 41

제4장 동독의 통일대비 분야별 법제사항 43
제1절 동독지역에서의 사법법제 43
1. 배경 43
2. 사법부의 조직과 관할 45
3. 검찰청 52
4. 법관의 지위 53
제2절 주입법기관에 대한 권리 55
제3절 분야별 동독의 법제정책 57
1. 재산반환의 문제 57
2. 구동독에서의 재산권질서 59
3. 시장경제 통합 법제의 준비방안 64
4. 형사법 분야 77
5. 노동법 분야 85

제5장 결론 93

CONTENTS

Ⅱ 정책문서를 통해 본 과도기 동독 개혁정부의 통일/가입 준비

(1989년 11월 9일~1990년 10월 2일 사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입법 개혁)

들어가며 98

제1장 과도개혁 정부의 개혁 입법을 위한 정치적 기본 조건 101

제1절 1990년 초 소련 지도부의 독일정책 기본 입장 확립 104

제2절 동독의 정치지형 변화 및 독일정책에 관한 서독 정부의 기본 원칙 105

제2장 동독 과도개혁기 입법 행위자: 정부와 최고인민회의 108

제1절 개혁정부 1기와 2기 108

제2절 서독에서 온 자문관들 113

제3절 최고인민회의 115

제3장 과도개혁기의 입법 업무 119

제1절 국민으로부터 신뢰 획득 122

제2절 정치권력 구조와 체제 개혁 127

제3절 경제제도의 개혁 131

나가며 136

Ⅲ 동독의 통일대비 입법 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142

문서 요약 156

문서 요약(문서번호 35~1029) 156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표 목차

표 2–1〉 1989년도 동독 주민의 서독 이주 102

표 2–2〉 변화된 기본조건 107

표 2–3〉 동독 과도개혁 내각 1기, 2기 구성 110

표 2–4〉 1990년 3월 18일 선거 전후 최고인민회의 원내 정당세력 117

표 2–5〉 9대·10대 회기 동안 연이어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의원 118

독일통일 총서 27

동독의 통일대비 입법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주요 입법적 조치와 그 정책적 시사점

최 석 림 (법무법인 태평양), 손 현 진 (히로시마대)



제1장

서론

체제가 서로 다른 두 나라를 통합함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법제도가 각각 존재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서로 다른 법문화도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적 통합을 하는 경우에도 양 분단국 주민들의 감정에 가장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새로운 통일국가의 정체성 및 수용에 있어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수용국 및 가입국 법률제도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들에 관한 보다 세심한 분석과 함께 이러한 과정에서 법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상황에 관한 편견 없는 조사작업이 필요하다.

독일의 통일과정은 서로 상이한 이데올로기가 충돌함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독일 및 유럽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위한 통합의 성공 사례가 되었다.

1989년 8월 3일 동·서독 간 정기 항공노선이 개설된 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고 1990년 3월 18일에는 동독에서 자유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1] 동독 주민들은 총선거 이전부터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심리적으로 이미 통일된 독일을 선호하고 있었다. 동독 주민에 대

[1] 독일통합연구자료집, 통일원, 1990, p.44.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8%가 스스로를 '독일인'이라고 생각한 반면, 37.8%만이 '동독인'이라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독의 정당과 제휴한 정당, 특히 '독일동맹'의 지지자들의 78.2%가 '독일인'이라 생각하였고, 서독의 '민주주의'에 대해 응답자의 51.4%가 매우 존경한다고 응답했다.[2]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1961년에서 1988년까지는 약 61만 명이었으나, 1989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34만 명에 이르렀으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에는 하루 평균 약 2천 명이 이주해 나갔다.[3] 동독의 주민들은 베를린 장벽 철거 이전에는 여행자유화, 자유선거, 경제·사회개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으나, 장벽 철폐 이후에는 자유선거와 공산독재의 종식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다.[4]

동독은 베를린 장벽을 개방하고 새로운 선거법 제정, 연립정부 구성, 지방자치 실시, 헌법재판소 설치, 총체적 경제개혁 등 체제민주화 방향을 제시하며 이에 대처하였다. 그러나 동독 정부의 체제민주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시위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동독 국민은 사회주의 이념의 범주를 넘어서 서독생활을 동경하여 민족통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동독의 사태를 주시하고 있던 서독 정부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며 동서독의 통일문제가 이미 역사적 민족문제로 등장했음을 동서독에 확고하게 인식시켰다.

또, 동독에서는 1989년 가을 이후 새로 등장한 민주개혁당, 동독사민당, 동독녹색당, 평화인권발의 등과 기존의 사회주의통일당(동독 공산당), 자유민주당, 민족민주당, 민주농민당, 기민당 등 모두 17개의 동독 정치 단체들이 동독의 민주화를 감시·통제할 목적으로 원탁회의를 결성하였다. 모드로우의 동독 정부는 국가기본 정책의 집행과 서독과의 정치협상에서 국민의 지지

[2] 양창석, 브란덴부르크비망록, 늘품플러스, 2011.5, p.89.

[3] 독일연방공화국개황, 외무부, 1991.2, p.226.

[4] 법제처, 독일통일관계법연구, 1991, p.65.

를 확보하기 위해 원탁회의와 협력했다. 모드로우 총리는 원탁회의와 협의하여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의 자유총선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독일국가연합의 틀 속에서 통일독일을 형성하는 점진적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원탁회의의 대표 13명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등 거국적 책임내각을 구성한 후 서독과 양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독 정상회담에서 양독 간 화폐통합과 경제공동체의 형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서독은 동독 모드로우 정부의 정통성의 흠결을 이유로 동독에 대한 서독의 즉각적인 연대기여금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다. 이즈음 동독의 정치 상황은 더욱 공동화되었고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독 최초의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총선에 참여한 20여 개의 정당은 상당수가 서독의 자매당과 제휴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총선에 임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독일은 40여 년에 걸친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1990년 10월 마침내 통일을 달성하였다. 독일통일은 통일의 대내외적 요인들이 상호결합하여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동독에 대한 서독의 정치·경제·사회 체제상의 절대적 우위가 독일통일의 내재적 요인인 반면,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와 함께 동서냉전 구조가 와해되어 서독에 유리하게 조성된 주변 환경은 독일통일의 외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통일이 아닌 법적인 통일을 이루려 노력하였으며, 통일 후의 모습까지 법적인 틀로 만들어 내는 또 하나의 역사적 작업을 마친 것이다.

독일 분단의 극복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에 세 개의 조약이 체결되었다.[5] 독일통일의 입법과정과 동독의 통일과정에서의 입법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 가지 조약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

[5] 1. 1990년 5월 18일 자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의 조성에 관한 조약(이른바, 국가조약), 2. 1990년 6월 3일 자 독인 연방의회의 최초의 전 독일 총선거의 준비와 실행에 관한 조약(이른바, 선거조약), 3. 1990년 8월 31일 자 독일통일의 회복에 관한 조약(이른바, 통일조약)이 그것이다.

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근거로 동독의 분야별 입법 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서독 양국 간의 사법 체계는 근본적으로 상이했다. 동독의 경우에는 사회주의식 재산권(특히, 국가 재산의 형태였음) 개념이 근간이 되었으며, 사유재산은 부차적인 의미밖에 갖지 못하였다.

제2장

통일 이후 법령 조정

제1절 동독의 법체계

동독 법질서의 내용을 서독 법질서와 대비시켜 파악해 보면 동독 법질서의 특색이 분명히 드러난다. 먼저,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볼 때, 서독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동독은 인민주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 국가구조도 서독이 의회주의, 권력분립의 원리, 사회적 법치국가, 연방주의를 그 기초로 하고 있는 데 비하여 동독은 인민대표주의, 권력통합의 원리, 중앙집권주의를 그 기초로 하고 있었다.

정당질서에 있어서도 서독이 복수정당제를 전제로 정당 설립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및 정당 간의 경쟁기회의 균등을 보장함으로써 야당의 존립과 활동의 가능성을 헌법의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데 반하여, 동독은 단일정당제와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정치적 영도력을 전제로 하여 야당의 존립과 활동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었다.

기본권의 보장에 관해서 볼 때 서독은 인간 존엄성의 불가침을 비롯한 자유로운 인격의 발전, 자유로운 표현 등 자연법상의 권리를 최고 가치로 하면서, 기본권은 그것을 남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박탈되지

아니하며, 그 기본권의 성격도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방어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동독은 기본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권리와 의무의 합일성'이라는 이론에 입각하여 권리는 사회합치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사회 유보에 따르고 있었다.[6]

사법제도에 관해서 볼 때, 서독의 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재판소 및 주의 재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서독기본법 제92조), 연방헌법재판소가 최고기관으로서 연방법이나 주법에 대한 위헌심사를 담당한다(서독기본법 제92조 제1항). 판사는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하며 판사는 각 사건 분야에 따라 당해 장관과 판사 선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임명한다(서독기본법 제95조 제2항, 제98조 제4항).

동독 법원은 대법원, 지방법원, 군법원과 사회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동독헌법 제92조), 대법원이 최고기관이었다(동독헌법 제93조 제1항). 판사는 인민과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충실하여야 하며(제94조 제1항), 인민도 비전문인 판사로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동독헌법 제90조 제3항), 사회법원의 모든 판사는 인민 대표기관 또는 인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법원은 법률의 합헌성 심사를 할 수 없으며(동독헌법 제89조 제3항), 동독의 의회인 인민의회 기관인 국가평의회(동독헌법 제66조 제1항)가 법률의 합헌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동독의 법체계는 소련의 '사회주의적 합법성' 이론[7]이 동독에 그대로 수

[6] 권영성, 비교헌법학, 법문사, 1992, p.257.

[7] 소련에서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국가의 동요를 진정시켜야 했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당과 국가기관이 반복해서 저질렀던 합법성의 침해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적 합법성'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적 합법성'의 성립은 소련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하여 '시민'이라는 법적 형태는 사회의 동질적인, 비적대적인 성원, 즉 근로인민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소비에트 국가의 모든 기관, 소련의 모든 시설, 사회단체, 공무원 및 시민이 소비에트 법률을 정확히 준수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민주주의

용되어서 동독헌법 제86조는 「사회주의 사회, 노동인민의 정치적 권력, 국가 및 법률질서는 정의, 평등, 우의 그리고 인도의 정신하에서 헌법의 준수와 실현을 근본적으로 보장한다」고 하고 있었다. 또한, 제87조는 「사회와 국가는 인민과 인민의 단체들을 사법과 사회주의 법준수를 위한 사회적 및 국가적 통제하에 둠으로써 합법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일반 법규정은 동독헌법 제89조 제3항에 따라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의 합헌성 심사는 국가평의회가 하도록 되어 있었다. 헌법 밑에 동독의 의회인 인민의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의결이 있었으며, 그 밑에 인민의회의 법률과 의결의 범위 내에서 행정부에 해당하는 각료회의가 동독헌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발할 수 있는 명령과 결정이 있었다. 즉, 동독의 법 단계는 헌법, 법률과 의결, 명령과 결정의 순으로 되어 있었다.

동독이 서독에 편입됨으로써 서독의 연방국가법 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및 이와 불가분으로 결부된 법질서가 동독에 적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40여 년간의 분단에서 전개된 생활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독일연방의 법질서를 예외 없이 구동독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었다.[8]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에 의해 소집된 인민의회는 광범위한 입법을 통하여 모든 영역에서 사회주의의 극복을 위한 법적인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시기에 제정된 법은 구동독의 생활관계를 서독의 생활관계로 조정하는 것이었으며, 국가적 통일의 성취 후에 조정의 과정을 보다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편입 당시에는 이미 사회주의적인 법의 본질적인 부분은 이미 폐지 또는 개정되어 기본법과 대립하는 상당 부분이 제거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구동독의 다른 생활관계가 그 내용상 고려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양독 간의 법 조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독자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동독

법학연구회, 소련 사회주의 법현실의 전개와 페레스트로이카,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 1990, 한울, p.248).

[8] Sighart Lörler, Die öffentliche Recht im Einigungsvertrag, in : NVwZ 1991/ Heft 2. S. 133f.

공산당법이 아니라 구동독 인민회의가 제정한 법률을 어떻게 무리 없이 연방법률과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경과법의 문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조약은 이 경과법을 무리 없이 연결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 원칙을 두고 있었다.

제2절 통합조약상 동독 법령의 조정

서독과 동독의 통합 방식은 대등한 통합이 아니라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흡수통합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통합 후 동독지역의 법질서도 궁극적으로 서독의 법질서에 동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독지역의 법체계도 결국 종래의 서독에서처럼 EC법, 기본법, 연방법, 주법의 순으로 우열관계에 있게 될 것이다. 통합조약은 기존 동독의 법체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서독의 법체계로 변경시킬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서로 이질적인 두 체제의 통합을 위한 새로운 규범구조로서는 자유 민주주의적이며 사회적 법치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서독의 기본법이 동서독에 확대 적용되었다. 이와 함께 통일독일의 정치적 골격이 헌법적으로 완성되어야 했다. 즉, 통일국가의 정치적 책임을 담당할 주체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기본적 정치노선이 국민에 의해 심판되고 정당화되어야 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과정은 선거에 의하여 실천되어진다.

그러나 선거는 일정한 제도적 틀을 전제할 수밖에 없고, 선거가 특정한 제도적 틀을 전제하고 있는 한 어떠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표출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형태를 달리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느냐, 즉 어떠한 선거제도를 마련하는가 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기본법은 독일의 정치제도로서 의원내각제를 규정하고 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를 가장 중요한 통치기구로 상정한다. 그리고 서독의 선거법은 연방



하원 의원의 선거제도로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병행하고 있었다. 즉, 한 유권자가 2표를 행사하며, 한 표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통일독일의 연방의회는 통일적 법적 토대 위에서 통일적 선거법에 따라 선출되어야 했다. 기본법 제38조 제3항은 연방의회 선거를 위하여 하나의 연방법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연방선거법 제55조 제3항은 편입의 경우에는 연방선거법이 편입된 지역에도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제3장

통일과정에 있어서 법적 준비단계

제1절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의 조성에 관한 조약(국가조약)

1. 조약 체결의 의의

동서독의 법질서 통합을 위한 가장 의미 있는 첫 번째 작업으로 1990년 5월 18일 '동독과 서독 간 화폐·경제 및 사회통합 조성에 관한 조약'(이하, '국가조약')이 체결되고 같은 해 7월 1일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서독의 마르크화가 동독지역에서도 유일한 지불수단이 되었다. 이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1990년 7월 1일부터 양독 정부는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을 실현시키는데, 이로써 중부유럽에 커다란 마르크 경제권이 탄생하게 되었고, 통일독일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강국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조약은 동독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목표로 하였다. 양독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조약은 비록 전체 독일의 국가 원수와 기타 공공의 국가기관을 창설하지는 않지만, 국가연합으로서 계속되는 결합 관계를 창설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9]

동독의 헌법과 법률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저촉되는 한 헌법의 실질

[9] M. Kriele, Die Politische Bedeutung des Staatsvertrages, DtX. 1990. 5. S. 188 ff.

적 부분과 일반 법률의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국가조약의 체결로써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실패한 사회주의 국가 및 경제 질서를 포기하고 자유주의, 민주주의, 연방주의, 법치국가 및 사회적 기본 질서에 따라 형성된 국가, 법 및 경제 질서로의 전환에 합의하였다(국가조약 제2조 제1항).

이에 앞서 서독 정부는 동독이 서독 연방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정치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화폐통합을 추진했다. 1989~1990년 급속히 악화되는 동독의 경제 사정과 이주자들의 급증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서독 정부는 1990년 2월 13일 화폐·경제·사회통합을 제안하였다.

이 조약의 가장 중요한 규정들은 통화지역을 단일화하고 도이치 마르크를 공통의 화폐로 하는 통화지역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동서독이 정치적 통일의 전 단계로서 먼저 경제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서 동독의 경제사회 체제의 개편과 대폭적인 법제도의 개혁이 단행될 수밖에 없었다.[10]

국가조약 제4조에 의하면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지도원칙은 동독에서 직접 구속력이 있는 규범으로서, 자유 민주적 원칙에 맞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조약이 민사법상의 소송에서 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소송에서도 사법적 권리 보호라는 포괄적 체제를 직접 도입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다(제6조).

동독은 일련의 법규정을 실효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일차적으로 통화 체제, 경제 체제 및 사회 체제와 직접 관련 있는 조항, 즉 계약법, 대외거래법, 외환법, 농업생산조합법, 에너지경제규정, 노동조합법 및 모드로우 정부에 의해 제정된 일련의 법률과 명령 및 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강제집행법, 법원조직법 및 변호사법을 포함한다.[11]

[10] 명재진, 독일통일 후의 법제도 변화, 한국통일연구 제8권 제1호, 2003년, p.158.

[11] 국가조약 제4조, 부속문서 III.

또한 동독은 일련의 법규정을 서독에 적용되는 법에 상응하도록 개정할 의무를 부담하며, 여기에는 국립은행법, 어음법, 수표법, 국제경제계약에 관한 법, 기업법, 부동산거래규정, 노동법편, 임대차규정, 기업의 영업소에 관한 규정, 외혼, 가격형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과거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금지한 동독 헌법 제12조를 폐지하고, 동독의 경제질서에 사유재산, 자유경쟁, 시장가격의 형성, 노동·자본·재화 및 용역의 완전한 이전의 자유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도입되었다.[12]

화폐통합과 경제통합에 따른 경제적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 임금협상, 사회보장 등 사회 분야 통합이 병행되어야 했다. 특히 사회적 시장경제에 상응하는 노동법 질서, 노동성과의 정당성과 사회적 균형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했다. 사회통합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요구하는 노동법적 제도가 마련되고 정당한 성과와 사회적 균형을 보장하는 제도가 구축될 때 완성된다. 따라서 동독은 서독의 사회적 안전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서독법을 그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13]

한편,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시장경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가격 자율화와 경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일반 원칙들을 「지도원칙에 관한 공동의정서」에 제시했다. 특히, 화폐통합의 규정들이 동독의 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경제통합 부분에서 이들 기업이 새로운 시장 조건에 맞게 급격한 구조적 조정을 용이하게 만드는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동독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1990년 6월 17일 이른바 헌법기본원칙법률

12 법제처, 전게서, pp.5-6.

13 양창석, 전게서, p.97.

(Verfassungsgrundsätzegesetz)을 제정하여 자유 민주주의와 연방국가 구조, 서독식 사회국가 체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선언하였다.[14] 이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헌법 규정은 별도의 폐기절차 없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법률은 통치권의 일부를 서독에 이양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더하여 동독은 인민회의 재적 의원 2/3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의 효력을 갖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하였다.

국가 구조의 측면에서도 동독은 1990년 7월 22일 이른바 주(州)도입법을 제정하여 1952년 폐지되었던 5개 주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켰다. 이로써 중앙집권적인 단일국가를 연방국가로 변경하여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2. 국가조약의 내용

1) 경제통합

국가조약의 전문에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동독에 도입시킬 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1조에서도 사회적 시장경제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1조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내용으로서 사유재산제, 능력에 의한 경쟁, 자유로운 가격형성 그리고 노동·자본재화 및 용역의 완전한 자유이동을 채택할 것을 결정하고 있다(제1조 3항).

막강한 서독 경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시장경제란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순수 시장경제와 국가계획하에서 생산과 분배가 통제되는 중앙계획경제의 장점을 종합하여 만들어낸 서독 고유의 제3의 혼합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이라는 의미와 '시장경제'라는 의미가 모두 포함된 이 경제 체제는 자유의 실현을 우선으로 하되 개인의 자유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면 국가가 조정하도록

[14] Maunz/Zippelius, Deutsches Staatsrecht, 29, Aufl., 1994, p.13.

구상되어 있다.

따라서, 법치국가적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제한을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 시장경제 체제'라고도 할 수 있다.[15]

사유재산제도, 소비선택의 자유, 영리추구의 자유, 경쟁의 자유, 생산 및 거래의 자유, 직업 및 직장선택의 자유 등 자유주의적 요소들은 시장경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2) 통화통합

독일의 분단은 서방연합군 점령지대 및 소련군 점령지대에 별개의 통화지역이 성립되면서부터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면, 통화통합은 통화발행고권을 서독연방은행으로 귀속시켜 일원화한다는 의미를 넘어 상징적으로는 통일의 현실적 실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화폐통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했던 핵심 문제는 서독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 간의 교환율을 정하는 것이었다. 교환율은 동독 주민의 임금 수준과 보유 현금 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16] 적정 수준의 교환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기존 환율이나 구매력 평가에 따른 교환율, 외환 수익률에 따른 교환율이었다. 동독의 드 메지에르 수상은 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임금과 연금을 1:1로 교환할 것을 요구하여 협상의 단초를 열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임금·연금 등을 1:1로 교환한다는 것은 서독으로 하여금 엄청난 통화 팽창의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서독 마르크화의 가치는 현실적으로 동독 마르크

15 법제처, 전게서, pp.72-74.

16 법제처, p.76.



화의 몇 배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서독은 실질적 가치의 산정보다는 통일의 정치적 의미에 더 비중을 두었으므로 동독의 제안을 대폭 수용하여 임금·연금은 1:1로 교환하고, 기타는 1:2의 교환 비율로 정하여 양독의 유동성을 단일화시켰다.[17]

이러한 통화통합에 의하여 서독의 마르크화가 지불, 계산, 가치 척도 및 가치 저장 수단이 되었고, 이 통화통합 목적을 위하여 독일연방은행이 화폐발행 은행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통화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독 경제를 위한 화폐가치의 안정과 서독에서의 통화안정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쌍방은 독일의 전 영역에서 어떠한 인플레이션 충격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동시에 동독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통화교환 방식을 선택하기로 규정하였다.

또한, 금융정책의 전제가 되는 것은 동독이 시장경제적 금융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즉, 시장경제적 원칙에 따라 은행의 경쟁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금리 형성 등이 요구되었다.[18]

동독은 국유재산의 상황, 수익률을 조사하고 또한 경제구조의 변혁과

---

17 이 조약이 발효하여 1990년 7월 23일까지 동독 내 거주자는 4,470억 동독 마르크를 2,460억 독일 마르크로 교환하여 평균 1:1.8의 교환율을 기록하였다. 기업의 경우는 570억 동독 마르크를 270억 독일 마르크로 교환하였다. 동서독 간 통화통합이 단행된 후 동독의 사회주의 체계가 시장경제 구조로 전환되어 동서독의 완전한 경제사회통합을 이루기까지 약 5년간의 과도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1,150억 독일 마르크의 독일통일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 중 200억 마르크는 연방 예산에서 나머지 950억 마르크는 서독연방 소속의 각 주와 군읍이 책임을 지고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기로 되었으며,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분할하여 모집하도록 되어 있었다.

18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독 정부는 ① 임금, 월급, 장학금, 연금, 집세 그리고 기타 정기적 지불은 1:1의 비율로 지급, ② 동독 마르크로 된 다른 채권과 채무는 원칙적으로 1 서독 마르크 대 2 동독 마르크의 비율로 교환, ③ 동독 내의 독일 마르크 교환은 동독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동독에 본부를 둔 기관들에만 적용되며 동독의 은행구좌를 통해서만 가능, ④ 동독에 거주하는 개인의 금융기관 예금은 신청을 받아서 일정 한도액까지 1:1의 비율로 교환하고 연령별로 한도액을 다르게 정하고, ⑤ 동독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개인의 예금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국가재정의 재건에 국유재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한 후에 2:1의 교환 시에 예금자의 손해액에 대하여 추후 배당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990년 6월 30일 동독인들의 예금은 1,700억 독일 마르크였으며, 동독 국민들의 재산은 동독 마르크 2대 서독 마르크 1의 비율로 청산되었다. 또 '통화통합 및 통화전환을 위한 조치' 제6조에는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14살까지의 아이들에게는 2,000마르크씩,

(2) 15살부터 59살까지의 사람들에게는 4,000마르크씩,

(3) 만 60세가 넘는 사람들에게는 6,000마르크씩을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 사회통합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 진영에서는 가장 경제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에 속해 있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를 제거하겠다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하고 건설된 나라이기 때문에,[19]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이란 측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 국가보다 제도적 보장이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선진국인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사회보장 혜택에 매료되었고 그것이 통일과정에서 서독으로의 집단탈출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20]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사회적 노동법 질서와 사회보장제도, 급부의 정의와 사회적 형평의 실현이 강조되었다. 국가조약은 이와 함께 동 조약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에 기초한 사회 및 국가질서에 관한 독일민주

19 Staatsrecht der DDR, Academie : für Staats-und Rechtswissenschaft der DDR. 1984. S.109.

20 법제처, 전게서, pp.78-79.

공화국의 헌법 규정 중 이 조약의 내용과 합치하지 않는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제2조 제2항) 헌법을 개정하는 효력, 즉 헌법조약(Verfassungsvertag)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국가조약으로서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통일의 회복을 향한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양 독일의 염원이 표현되었다.[21]

제2절 선거조약

1. 선거조약 의의

1990년 8월 3일 양독 정부는 국가조약에 따라 서독과 동독 간의 전독연방의회 선거의 준비와 시행을 위한 조약(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이하, '선거조약')[22]에 합의함으로써 국가통일을 위한 방법에 관한 중요한 논쟁점을 해결하였다.

서독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선거법이 동독지역에도 확대적용된다는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이미 체결된 국가조약에 이어서 또다시 동독이 그의 통치권의 일부를 서독에 이양한 것이며, 이로써 독일통일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된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서독 국내법적으로는 서독의 연방법에 의한 동서독 총선은 이미 동독을 연방선거법의 선거영역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연방법률을 제정하는 연방선거법 제55조가 예정하고 있던 절차였다.

특히, 지난 40년 동안 동독에서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이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 이후 설립되었거나 혹은 민주화 운동 후에야 비로소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동독의 정당들이 서독의 정당에 비해서 통일독

21 Maunz/Zippelius, p.14.

22 Bundesgesetzblatt 1990 II, p.813.

일 의회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었다.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 동독대표 144명이 포함된 독일의회는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선거법을 제정했다.[23] 새로운 선거법은 기존의 선거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다만, 5% 이하의 정당에는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통일 후 최초의 총선에 한해 구동독지역에서는 적용을 배제하였다. 또 동독지역에서는 정당 간의 선거 제휴 및 연합후보 명단 작성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었다. 즉, 각 주에서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즉 각 주에서 두 개의 정당이 독자적으로 정당후보자를 내세우지 않은 정당만이 연합명부 작성(Listenverbindung)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른바 'Konkurrenz-Klausel'). 이 선거법에 따라 1990년 12월 2일 통일 후 전 독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2. 선거조약의 주요 내용

1) 통일적 선거구역

선거조약은 제1차 전독선거를 위하여 5개 편입 주와 선거의 준비와 시행을 위하여 하나의 주로 취급되는 베를린지역을 그때까지 효력이 있던 연방선거법의 효력 영역에 편입시켰다.[24]

선거조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선거감시법이, 제2조에 따라 연방선거령과 선거위원회령이 당시의 형태로 적용되게 되었다. 선거위원회령에서는 연방선거법 제52조와 제35조에 근거하는 내무부 장관의 법규명령이 문제 되었다. 선

[23] 헌법재판소는 동독 정당에게 독일 전체 유권자의 5%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고 한 서독의 선거법이 동독 국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이 동독의 군소정당에게 무리한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동서독을 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5% 조항을 이원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24] Michael Brenner, Die Entwicklung des Wahlrechts und der Grundsatz der Wahlrechtsgleichheit im wiedervereinigten Deutschland, AöR 1991. 12. S. 553f.

거영역의 확대에 의하여 이 법규명령들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내무부 장관이 동독 내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었다.

선거법 제4조에 의하면 전 선거구역에서 선거입후보의 등록과 선거 결과의 확정이 연방선거관리위원장과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에 놓이게 되었다. 선거조약 제4조 제2항은 연방선거관리위원장에게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연방선거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위원에 추가하여 동독에 주소를 둔 2명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연방선거법 제53조 제1항의 개정에 의하여 연방선거법 제9조 제2항의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증원되었다.

연방선거법의 동독으로의 확장과 이에 의한 선거영역의 확대는 당연히 연방선거법의 개정을 야기했다. 개정된 연방선거법의 부분은 독일 연방의회의 의원 숫자의 증가, 명부구속의 허용, 연방선거법상의 수많은 기간의 단축, 동독 주에 대한 관할권 규율, 선거 준비 행위, 피선거권자의 결정과 관련된 조항들이다. 그 외에 518명에서 658명의 의석 증가에 상응하여 전체적으로 71개의 선거구가 증설되었다. 동독지역과 베를린지역에 설치된 선거구는 연방선거법에 대한 부속문서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연방선거법의 개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오직 저지조항뿐이었다.

2) 5% 저지조항의 유지

제1차 전독의회선거에서 5% 저지조항이 의석 분할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랫동안 중요한 논점이었다.[25] 이것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이것은 전 선거영역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하는지 또는 양독에 분리되어 고려되어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주와 관련된 5% 저지조항도 논의되었다. 정당이 최소한 3개의 선거구에서 1개의 의석을 획득했다면 이 정당도 의석을 가져야

[25] Klaus Stern, Einigungsvertrag und Wahlvertrag, S. 14f.

한다는 조항(소위 기본의석조항)은 거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동독의 선거법은 인민회의의 선거와 자치단체 선거에 대하여 이러한 저지조항을 규정하지 않았다.[26]

5% 저지조항을 약화시키자는 요구는 동독의 군소정당과 단체에게 의석획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기되었다. 동독에서의 평화적, 민주적 혁명을 위해 그 정치적 활동을 처음 시작한 투쟁단체에 대하여 기존의 정당에 대해서보다 의석획득에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 정책적으로 요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적 논거로서 선거권 평등의 원칙은 저지조항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서독의 선거 영역에서 의석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독에서보다 훨씬 많은 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통일독일의 총인구 약 8천만 명 중 6천만 명 이상이 서독지역에, 그 나머지가 동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바, 서독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정당은 비록 총인구수가 증가하였다 할지라도 5% 선을 넘는 득표를 과히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또 동독지역에 불어닥친 민주화의 바람으로 인하여 동독지역에서도 상당한 득표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독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정당은 경우가 달랐다. 동독기민당, 동독사민당, 동독자유당과 같이 서독지역의 정당과 통합 내지는 흡수합병이 가능한 정당은 통일과 함께 정당의 통일도 이룩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었다. 다만,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과 같은 공산당파의 정당은 서독지역의 정당과 제휴도 불가능하고 서독지역에서의 득표도 기대할 수가 없었다.[27]

당연히 당의 전술적 계산하에 취해진 각 정당의 태도는 처음부터 거의 화합할 수 없을 만큼 대립되어 있었다. 여기에 군소정당 간의 연합공천의 허

[26] 1989년까지의 DDR의 선거법에 대해서는 W.Schreiber, Handbuch des Wahlrechts zum Deutschen Bundestag, 4. Aufl. 1990. 참조.

[27] 연방내무부의 계산에 의한 5% 저지조항을 극복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지역에서는 약 4,000만의 유효 투표수 중에서 200만 표의 득표가 필요하며, 독일민주공화국의 영역에서는 1,150만의 유효투표수 중에서 57만여 표의 득표가 필요하다.

용과 함께 통일적 선거구역에 대한 5% 저지조항의 유지라는 타협이 행해졌는데, 이 타협은 연방의회와 인민의회의 연립정당과 양 의회의 사회민주당 모두에게 만족스러웠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연방과 주에서 적용되는 5% 저지조항을 지속적으로 합헌적이라 판결했다.[28] 최소한 3개의 선거구의 획득을 요구하는 기본의석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이 행해졌다.[29]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5% 조항을 무난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나,[30] 기본의석조항에서는 중요 정당의 우대 때문에 의문을 표시했다.[31] 민족적 소수자에 대해서만 예외가 인정되었다(연방선거법 제6조 제6항 제2문). 그 근거로서는 본질적으로 저지조항에 의하여 의원내각제의 기능이 확보되며, 정당의 난립이 예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열거되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동시에 5% 저지조항을 분명히 상한선으로 간주했다.[32]

5% 저지조항을 위한 근거는 서독에서 40여 년 동안 계속 존속되었다. 그러한 권한을 위한 논거는 계속 성장하였고, 헌법적으로도 기본법에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의심 시 되지 않았다. 그러한 안전장치 없이 저지조항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조된 공격되지 않는 국가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전 독일의 헌법적 관습법으로서 정당화되었다.

이후, 서독의 군소정당이라 할 수 있는 녹색당(Die Grüne), 공화당(Die Republikaner)과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SED)의 후신인 독일사회당(PDS) 등은 연방선거법 제6조 6항의 5% 조항을 선거지역이 동독지역으로 확대된 통독의회선거에 적용되는 것 그리고 비경쟁관계에 있는 정당들 간에만 연합

28 BVerfGE 1. 208(247) ; 4. 30(40) ; 4. 375(380) ; 5, 77(83) ; 24, 300(341) ; 41, 399(421) ; 47, 198(227) ; 47, 253(277) ; 51, 222(236).

29 BVerfGE 4,31(40) ; 5, 77(83) ; 6,94(95).

30 Statt aller, K. Stern, Staatsrecht Bd. I. s Aufl. 1984, § 10 II 3b.

31 H. U. Erichsen, Jura 1984, 22(32).

32 BVerGE. 47. 253(277).

명부를 허용하는 것은 기본법 제38조 1항의 평등선거 그리고 기본법 제38조 1항과 기본법 제21조에 근거를 갖는 정당 간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 규정이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90년 9월 25일 판결에 의해 동 재판소는 연방선거법 제53조 2항을 무효로 선언하고 동 법률 제6조 제6항 제1문의 저지조항이 제1차 전독연방의회 선거에 대하여 전 선거구역과 관련되는 한 기본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33] 이 두 경우에 동 재판소는 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선거의 평등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3. 선거법 개정(1990.10.8.)

독일연방의회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독일통일 달성 직후, 1990년 10월 4일 정당 간의 사전담화에 의하면 연방내무성에 의해 준비된 연방선거법 개정안 초안이 구동독의 대표자가 추가됨으로써 확대된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 같은 날 내무위원회는 동 초안을 다루고 몇 가지를 간단하게 수정하였다. 연방의회는 제2, 제3 독회를 거쳐 1990년 10월 5일 절대적 다수로 이를 의결하였다. 연방상원은 1990년 10월 8일 특별회의에서 이를 찬성하여 10월 10일 연방관보로 공포되었다.

사실 의회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의도를 추종했다. 연방선거법 제53조에는 새로운 항이 추가되었는데, 이에 따라 제6조 제6항 제1문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즉, 주 명부에 의석을 배석할 때에는 서독지역 또는 동독지역에서 투표된 제2 투표의 최소한 5% 이상을 획득한 정당만이 고려된다.

이에 의하면 정당 또는 결사는 동독지역 또는 서독지역에서 5% 저지조항을 극복한 경우에만 제12대 연방의회에 들어간다. 이들 정당이 선거구에서 3개의 의석을 획득한 경우에도 배정받는다. 이 규정은 연방선거법 제10차 개정

33 NJW 1990. S. 3001 ff.

법률과 1990년 10월 5일의 정당법 개정법률도 개정하지 않았다.

그 외에 연방선거법 제53조 제2항에서 1990년 10월 3일 동독지역에 그 소재지를 두는 정당·정치결사 또는 그 주의 단체는 공동의 후보자 명부를 제출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다.

제3절 통일조약

1. 통일조약의 의의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조약에 의하여 독일통일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조약에 근거하여 1990년 7월 1일을 기해 양독 간의 화폐통합이 실현되고 서독의 연방은행이 동독지역의 통화정책을 관할하게 되었다. 그러나 화폐통합 이후 동독 경제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 자유경쟁적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도적 상황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의 자유총선에 의해 수립된 정부도 그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정치적 공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면한 동독의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서독의 통일은 기본법 제23조[34] 의 가입에 의한 통일이 선호되었고 가입의 시기가 10월 3일로 앞당겨졌다. 물론 동독 인민회의는 1990년 8월 23일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동독의 서독에로의 가입을 의결하였다. 동독의 서독연방에의 가입 일자가 확정되기 전부터 협상을 거듭한 동서독은 1990년 8월 31일 동독과 서독이 법질서 통합을 위해서 가장 방대하고 중요한 '통일조약(Vertrag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을 체결하여 독일의 국가적 통일의 회복이 결정되었다.[35]

---

34 기본법 제23조는 "기본법은 당분간 바덴, 바이에른, 브레멘 등 서독지역의 주에만 적용되고 독일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입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5 P. Badura, "Die innerdeutschen Vertäge, insbesondere der Einigunsvertag", in: Isensee/

동서독은 이 통일조약에서 1990년 10월 3일을 통일의 날로 확정함으로써 독일통일의 법적 효력이 이날로부터 발생하게 했다. 따라서 동독은 이날 국가로서 소멸하고 동독 헌법도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에 서독 기본법이 통일독일의 헌법으로서 동독지역까지 그 공간적인 범위가 확대되었다.

통일조약은 독일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헌법적 전제로서 자유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적인 서독의 기본법을 상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동독지역의 주들이 서독 연방에 가입함으로써 통일이라는 목적이 빠르게 달성될 수 있었으며, 기본법 적용 영역이 새로 편입된 동독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원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이 자신의 헌법을 헌법(Verfassung)이라고 하지 않고 기본법(Grundgesetz)이라고 했던 것은 기본법은 어디까지나 독일의 종국적인 헌법이 아니고 통일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통일 이후에 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전 독일인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36]

2. 통일조약의 법적 성격

국가조약이 동독에 대한 헌법적 성격의 조약이라면 통일조약은 서독에게 헌법을 개정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이다.[37]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조약의 특별한 성격이 있다. 왜냐하면 한 국가가 국제조약에서 헌법을 개정할 위임을 떠맡는 것은 국제조약에서 일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조약은 국제법적인 조약일 뿐만 아니라 양독 간의 모든 조약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유형의 조약이기도 하다. 통일국가를 위한 유일한 기준이 되는 기본법 개

Kri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Bd.Ⅷ, 1995, p.175.

36 명재진, 전게논문, p.160.

37 K. Stern, Der verfassungsändernde Charakter des Einigungsvertrages, in : DtZ. 1990. 9. S. 289f.

정의 합의는 이러한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이를 헌법적으로 평가할 때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조약이 기본법의 개정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통일조약은 다른 양독간의 조약과 똑같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기관은 기본법 제59조 제2항 제1문을 유추적용하여 이에 동의만 해 주면 될 뿐이다. 그리고 통일조약의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부분은 일반 서독법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전체 서독 입법자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38]

그러나 통일조약은 그 헌법 개정적 성격 때문에 기본법 제59조 제2항 제1문에 의하면 이 조약에 대한 동의 법률은 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입법기관의 협력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기본법 제79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기본법이 명시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기본법은 제79조 제3항에서 기본법 개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소위 이러한 기본법의 항구성 또는 불가침성의 보장은 일정한 헌법적 가치를 보다 높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학설과 판례에서는 기본법 제79조 제3항의 내용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가 없다.[39] 기본법 제79조 제3항의 기본법 개정 금지조항은 조약을 통하여 기본법을 개정하는 동의법률의 제정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통일조약도 기본법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법 개정 금지조항과의 충돌문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일조약은 기본법의 헌법적 요구인 독일의 국가적 통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본법 제23조의 방법에 의한 독일의 국가적 재통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 제79조 제3항이 규정한 기본법 개정금지의 법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38 이 조약에 국제법적 근거를 관련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조약의 독일 내적 성격이란 점에서 의문이 될 수 있다.

39 K. Stern, Staatsrecht bd. I. § 5. IV.

3. 통일조약상 법령의 조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독과 동독의 통합방식은 대등한 통합이 아니라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흡수통합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통합 후 동독지역의 법질서도 궁극적으로 서독의 법질서에 동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독지역의 법체계도 결국 종래의 서독에서처럼 EC법, 기본법, 연방법, 주법의 순으로 우열관계에 있게 될 것으로 하였다. 통일조약은 기존 동독의 법체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서독의 법체계로 변경시킬 것인가를 다루고 있었다.

통일조약의 법령 조정을 실행하기 위해 양독 간에 합의된 부속문서 I은 법령 조정을 위하여 개정·폐지·변경되는 서독의 법령을 열거하고 있고, 통일조약 부속문서 II는 법령 조정을 위하여 개정·폐지·변경되는 동독의 법령을 열거하고 있다.

통일조약 제3장에서 '법령의 조정'이라는 제목하에 3개의 조문으로 법령 조정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첫째, EC에 관한 조약들, 국제조약 및 국제적 합의사항들은 동독지역에 대해 독일통일과 함께 적용된다(통일조약 제10조 제1항).

EC법에 근거하여 독일에서 제정된 법도 EC법 자체에 예외규정이 없는 한 동독지역에도 독일통일과 함께 적용된다. 또 EC법에 따를 때 각 주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 주는 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서독연방법은 독일통일 후 동독지역에 대해서도 연방법 자체나 통일조약상 제한이 없으면 그대로 적용된다(통일조약 제8조).

기본법상 연방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하여야 하나 동독의 구체적 사정으로 아직 새로운 법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독의 법령이 새로운 연방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유효하다. 이 경우 적용되는 동독법은 법 단계상 연방법으로 유효하게 된다(통일조약 제9조 제1항).

셋째, 기본법상 주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존의 동독법

령은 EC법, 기본법, 연방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통일조약 제9조 제1항). 통일조약 발효 후 공포된 동독법령은 서독과 동독이 합의(통일조약 제9조 제3항)하면 계속 효력을 발휘한다.

또한 통일조약 제9조 제4항 제1문에 따르면 통일조약 제9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는 구동독법은 연방의 전속적 입법의 대상인 경우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동독법령이 연방의 경합적으로 규율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한 통일조약 제9조 제4항 제2문에 따라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통일조약 제9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특정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효력이 유지되는 구동독법은 편입되기 전에 이미 연방법적 성격을 갖는 규정을 담고 있었는데, 이러한 구동독법은 통일조약 제9조 제4항 제2문에 의하여 특수한 연방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통일조약 제9조 제4항 제2문의 의미와 목적에 따르면 이 결과가 모든 상황에 대해 정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래서 기존의 연방 영역에서 이에 상응하는 사안이 이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하더라도 이전된 연방법이 편입지역의 특정한 사안을 처음부터 규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 같다.[40] 그러한 경우에 편입지역 이외의 연방지역에서 상응하는 관계 연방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조약 제9조 제4항 제2문에 의하면 그 한도에서 효력이 유지되는 구동독법을 특수한 연방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이 상황은 연방이 장래의 경합적 입법의 영역에서 지금까지 오직 주법에 의해 규율된 영역에 대한 규정을 규율하는 것과 유사하다. 마찬가지로 이전된 연방법이 규율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안이란 점에서 효력이 유지되는 구동독법을 특수한 연방법으로 간주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41]

[40] 그래서 예컨대 편입지역에서의 연방법은 특정한 날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생각될 수 있다.

[41] 법제처, 독일통일관계법연구(II), 1992, p.51.

따라서 통일조약 제9조 제4항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기본법의 권한질서에 따르면 경합적 입법권 또는 개요입법권에 속하지만 기존의 연방영역에서 연방법적으로 규율되지 않는 구동독법의 효력 유지에 관한 규정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이 법들은 통일조약 제9조 제2항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통일조약 제9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효력을 갖는다.[42]

이미 통일조약 제9조 제4항의 문언은 그러한 해석을 허용하고 있다. 그 규정은 분명히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는 법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 이 법이 연방법으로서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가를 규율하고 있다. 통일조약에 대한 양해각서에서는 통일조약 제9조 제1항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제9조 제2항에 대하여 구동독의 법은 부속문서 II에 열거된 한에 있어서만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부터 입법자의 의사에 따르면 연방의 경합적 입법의 대상과 관련되는 그러나 그 밖의 영향 영역에서는 연방법적으로 규율되지 않는 구동독의 법은 통일조약 제9조 제2항이 아니라 오직 통일조약 제9조 제1항 제2문에 따라서 효력을 유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덧붙여 말하면 통일조약 제9조 제4항은 설명에 대한 각서에서 왜 이것이 나타나는지는 거의 알 수 없다. 통일조약 제9조 제4항은 통일조약 제9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연방법 또는 주법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구동독법의 효력 확장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또 이것은 통일조약 제9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구동독법은 통일조약 제9조 제4항에 따라 연방법으로 효력이 유지될 때에만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관념을 조약 당사국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43]

---

42 Eckard Rehbinder, Die Freistellung von Anlagenerwerben von der Verantwortlichkeit für die Sanierung von Altlas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 DVBI. 1991. S. 421.

43 Kloefer, Umweltrecht in geeinten Deutschladn, DVBI. 1991. S. 1ff.

4. 국제법제 조정

독일통일은 동독이 서독에 편입됨으로써 일국이 소멸하고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독일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 동독의 편입으로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법적 관점에서 신국가의 창설은 아니다. 즉, 독일통일은 일국이 타국에서 병합·흡수된 경우로 보거나 또는 연방에 가입한 경우 양자에 다 해당한다. 흡수와 가입은 실제로 구분하기가 어렵고, 구분의 실익도 없다.[44]

이런 기준에서 통일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동은 먼저 조약 등 국제협력의 경우 서독이 맺은 국제협약이 구동독의 영역에 확대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45]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발효되지 않고 있으나, 일응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경이 변동되더라도 조약은 그 국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국제협약을 통하여 예외적 규정을 둘 수는 있다. 이에 따라 통일조약 제11조에는 독일통합조약 부록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독이 맺은 제 조약이 구동독지역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독일 정부와 당해 조약 당사국과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독이 통일 전 체결한 조약은 그 효력을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영토 등의 기본적인 조건이 변경되어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것은 물권적·처분적 조약이 아닌 채권적 조약을 말한다.

통일조약 제12조 제1항에서는 동독이 체결한 국제법상 조약에 관하여 조약 당사국과 협의를 거쳐서 그 효력의 유지, 조정 또는 효력 상실을 규율하거나 확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규정하였다.[46] 그 밖에 동독 정부의 재산 및

---

44 C.W.A. Timmermans, "German unification and community Law", common Market Law Review(vol. 27, 1990), p.438.

45 Restatement of the Laws,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vol. 1, 1987), p.108.

46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신뢰 보호, 관련국의 이익, 서독의 조약상의 의무, 자유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 질서의 원리, 유럽공동체의 권한의 존중 등 5개의 관점이 언급된다.

기타 계약상 권리·의무는 위치에 상관없이 독일연방정부에 귀속한다.

이에 따라 EC조약의 경우는 위의 설명에 따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 적용된다. 다만, 몇몇 분야에 걸쳐 조정작업을 필요로 하였다.[47] 통일조약 제12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에서는 동독 측이 부담하고 있는 국제법상 의무의 이행 및 국제기구, 다자조약의 가입에 EC측과 협의하여 모순·저촉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증가하였으므로 그 비례에 따라 유럽의회에 진출하는 대표의 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EEC의 공동경제정책을 구동독지역에 적용하기 위하여 과도적 경과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NATO조약도 구동독지역에 적용되나, 소련과 국제협정을 통하여 소련군 철수 절차·방법 등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2+4 협정에 따라 외국군을 구동독지역에 배치할 수 없다. 즉, 이것은 앞서 살펴본 국제협약을 통한 예외에 해당한다. 동독이 소멸했으므로, 독일연방공화국이 UN에서 전 독일의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조약은 구동독의 국제조약의 효력을 관계 당사국의 협상의 결과에 의존시켰다. 따라서 관계 당사국과의 협상의 개시 전 또는 협상의 종료 전 구동독의 국제조약의 효력은 유동적 상태에 놓여 있으며, 구동독의 국제조약을 적용해야 하는 신연방주와 과거 서독에 있는 법원과 행정관청은 결국 이중과세 협정조항이나 동독의 권리구제조약의 충돌규범에 근거하여 이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또는 예외적 자동충돌규정에 근거하여 이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다.

동독의 국제조약에 관한 통일조약 제12조는 그 문장과 내용에 의하면 결코 구속적 규정이 아니다. 이 조항은 오직 외국의 조약 당사국과 협상만을 지적하고 있다. 1990년 10월 3일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획득된 개별적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된다. 독일통일 이후 동독의 국제조약의 존립에 의존하

[47] 1990년 4월 28일 더블린에서의 EC 정상회담에서 EC 정상들은 EC조약의 개정 없이 경과조치를 수행할 것임을 공포하였다.



는 법적 지위에 관한 진행 중인 협상의 종결 전 상태에 있는 한, 통일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합의된 협상 기준은 이용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공해 준다. 이에 따르면 일면 서독의 조약은 동독의 상응하는 조약에 우위를 가지며, 다른 면으로 협정에 근거하여 동독과 조약을 체결한 외국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시민 및 동독의 시민도 신뢰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 범위의 개별적 권리에 관계되는 한 과도기에 대해서는 동독이 조약을 체결한 외국에 대하여 서독이 조약을 경합적으로 체결하지 않는 한 동독의 국제조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제4절 2+4 협정

1. 2+4 협정의 체결

제2차 세계대전이 종반에 이르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의 4대 연합국들은 독일이 다시는 유럽의 평화질서를 깨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독일을 분할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는 독일문제 해결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전승 4대국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1990년 3월 1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독일통일의 외적 통일을 논의하는 방법으로 동서독 및 4대국이 동시에 참가하는 '2+4 외상회담' 방식이 합의된 것이었다.

네 차례의 통독 외상회담이 개최되어 동서독 간의 내적 통일과정이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 체결과 함께 완결되자, 국제협상도 동년 9월 12일 제4차 모스크바 2+4 외상회담에서 독일통일에 대한 기본 골격이 합의되어 '독일에 관한 최종 해결조약(Vertrag über die abschlichießende Regelung in bezug auf Deutschland)'이 체결됨으로써 성공적으로 끝났다.

2. 2+4 협정의 내용

전문 및 10개조로 이루어진 2+4 협정은 전문에서 당사국은 유엔헌장에 따라 제 민족의 동등한 자결권을 존중하고, 통독과정에서 이루어진 국경문제의 최종 타결이 유럽평화·안정에 기여하며, 통독의 달성과 동시에 4대 전승국의 독일에 관한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하였다.

제1조에서 통일독일의 국경을 동서독의 국경으로 하고, 제2조에서 독일의 무력불사용 선언을 규정했으며, 제3조에서 독일의 군사력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제4조에는 소련군 철수문제, 제5조는 동독지역의 군사력 배치문제 등을 규정하며, 제6조에서 독일의 동맹가입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4대 전승국의 권리와 책임을 종료시켜 통일독일의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는 규정을 두었다.

3. 2+4 협정의 법적 의미

동 협정의 체결은 통독에 관한 외부적 조건이 최종적으로 타결되었음을 의미하고, 전쟁 상태에서 비롯된 전후시대의 법적 장애를 제거하는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최종적 해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통일을 통하여 비로소 전 독일의 대표성을 회복한 정부가 연합국 측과 전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들을 협상하고 최종적으로 수락·타결하여 전후 분단시대의 법적 모순을 해소하게 되었다.

포츠담협정에서 독일을 대표하는 정부가 수락할 강화절차를 준비한다고 규정한 이래 실로 45년 만에 전후처리를 법적으로 완결지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분단시대를 벗어나 대외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의 적대행위가 종식되어 실질적 전쟁 상태는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강화조약의 형태라고는 볼 수는 없는 최종 해결조약으로 전쟁 상태에서 비롯된 문제를 타결지었다.



이 협정을 기본으로 하여 폴란드와의 국경조약, 소련군철수협정, 독·소우호조약 등을 체결하게 되었다.

제4장

동독의 통일대비 분야별 법제사항

제1절 동독지역에서의 사법법제

1. 배경

동독의 서독 편입과 함께 사법의 영역에서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통일조약상의 규정에 의하면 서독의 사법에 관한 법, 즉 법원조직법, 법관법 및 검찰청법이 원칙적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구동독지역에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효력을 유지하던 동독의 법은 부분적인 영역에서 잠정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48]

1952년 제정되고 이후 수차례 개정된 동독의 법원조직법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부인하며 사회주의적 국가권력의 통일성에 입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법부는 통일된 국가 권력의 구성 부분의 일부이며 사회주의적 유일 정당의 지도에 종속된다.[49]

구동독의 법원은 형사, 민사, 가사 및 노동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었다. 헌법재판소, 재정법원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회보장 사건에 대해서는

[48] M. Treffkorn, zum Rechtsanwaltsgesetz der DDR, in : DtZ 1990. 9. S. 308ff.

[49] 1952년 10월 2일 제정된 법원조직법(GBI DDR I. 983)은 1963년 4월 17일, 1974년 9월 27일에 개정되었으며 검찰청법은 1963년 4월 17일, 1977년 4월 7일에 개정되었다.

사회보장 조직의 주체로서 기능하는 노동조합의 소청위원회가 관할권을 행사했다. 상거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필요는 포괄적인 국가의 계획경제로 인하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50] 물론 국가조약 이후 법원조직법[51]과 검찰청법[52]이 개정되어 법치국가적인 요소가 일부 도입되어 통일 이후 법령조정의 과정에서 과도적 해결방법은 될 수 있었다.[53]

그러나, 서독의 사법에 관한 법이 즉시 아무런 제한과 수정 없이 과거 동독영역에 도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법원조직법, 법관법, 절차규정 및 기타 소송규정을 완전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물적 및 인적자원이 마련되어야 했다. 그러나 구동독에서는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그러한 활동을 행할 수 있는 판사 또는 법률가가 충분하지 못했으며 사법 보조기관도 충분하지 못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 변화는 기대될 수 없었다. 따라서, 통일조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어 이에 대비하였다.

- 구동독 사법부의 재판권의 지금까지의 조직적 구조는 경과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서독지역의 사법부는 주의 법원으로서 지방법원(Amtsgericht), 주법원(Landgericht) 및 상급주법원(Overlandesgercht)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나, 구동독에는 지구법원(Kreisegericht) 및 지역법원(Bezirksgericht)이 존재했다.
- 특별법원은 당분간 설치하지 않으며, 행정법원, 재정법원 및 사회법원이 설

50 Ronald Brachmann, Die Gerichtsverfassung im Übergang, in : DtZ 1990. 9. S. 298f.

51 1990년 7월 5일 법원조직법의 개정과 보충을 위한 조직법(Verfassungs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 von 5. 7. 1990), GBI DDR I, 634.

52 1990년 7월 5일 독일민주공화국 검찰청법의 개정과 보충을 위한 조직법(Verfassungs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über die Staatsanwaltschaft der DDR von 5. 7. 1990), GBI DDR I, 635.

53 R. Brachmann, a. a. O. S. 299f.

치될 때까지 지구법원(Kreisegericht)과 지역법원(Bezirksgericht)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전심기관에서의 법원조직법상 및 절차법상의 예외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판권에 대한 연방의 5개의 최고법원에 대한 항소 또는 이의제기이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 법관법과 검사 및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자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동독지역에서 이러한 직업에 있던 자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이들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구동독의 최고법원은 폐지된다.

2. 사법부의 조직과 관할

1) 사법부의 조직

주의 법원으로서 통상의 사법부에는 주의 다른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당시까지 존재하던 지구법원(Kreisegericht)과 지역법원(Bezirksgericht)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 법원에 속하는 재판권의 업무에 대해서도 계속 관할권을 갖는다.[54]

이에 따라 구동독의 각급 법원이 구서독의 각급 법원에 갈음하게 되었다. 즉 구동독의 지구법원(Kreisegericht)은 구서독의 지방법원(Amtsgericht)에 갈음하고 구동독의 지역법원은 주법원(Landesgericht)과 상급주법원(Oberlandsgericht)에 갈음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대체전환 방식은 단순히 심급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사법업무의 할당이 이 대응조항에 의해 포섭될 수 없다. 명백히 다른 규정이 있다면 이 조항을 배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사쟁송에 있어서는 지구법원은 지방법원과 주법원 1심 관할업무를 담당한

54 통일조약 부속문서 I, 제3장 4항 A 제3절 1호.

다. 그리고 지역법원은 공소사건과 항고사건에서 주법원에 갈음한다.

또 상급주법원에 귀속되는 모든 업무가 지역법원에 귀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역법원은 주법원이 제1심법원이 되고 상급주법원이 항소심법원으로 되는 사건에서는 그에 갈음할 수 없다. 그러한 사건은 그 지역 내 연방정부 소재지가 있는 지역법원에 있는 특별재판부에 속한다. 이 특별재판부는 불가피한 경우에 상급주법원에 갈음한다.

2) 지구법원의 관할과 규정

① 민사소송

지구법원은 제1심법원으로 혼인사건, 가족사건 및 비송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지방법원과 주법원에 속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지구법원은 이러한 사건에서는 유일한 제1심법원이다. 법원조직법은 민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과 주법원의 관할권의 분배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동독지역에서는 지구법원이 지방법원과 주법원(LG)의 제1심 관할사건 모두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므로 법원조직법상의 관할권의 분배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지구법원이 지방법원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한다(§22. I. 법원조직법). 지금까지 구동독의 법에 따라 지구법원의 제1심 절차에 대한 참심원의 참가가 이로써 소멸되었다.

법관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구법원이 주법원에 갈음하여 심판하는 사건에서도 일반적으로 단독판사가 사건을 심판한다. 법률상 규정된 관할을 갖는 개별부는 가정법원, 상속법원, 후견법원 등으로 표기한다. 과거 구동독의 법률에서는 지구법원의 심판은 합의체인 Kammer에 의해서만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규정은 폐지되었다.

② 형사사건

형사사건에서는 지역법원의 관할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지구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갖는다. 지구법원은 3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형에 병과하거나 형과는 독립하여 정신병원에의 유치를 선고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지구법원의 관할권은 지방법원의 관할권과 상당히 유사하다(법원조직법 제24조).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할권 규정은 지금까지의 지구법원의 업무를 지역법원의 업무로 현저하게 전환시킨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구법원은 지금까지 지구법원의 관할에 속했던 범죄행위, 특히 과실치사와 고의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있기 때문이다.[55]

지방법원에 갈음하는 지구법원은 과태료의 결정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있다. 과태료사건에 대해서는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지구법원에 속하게 된 지방법원의 다른 여러 업무는 형사소송 절차에 규정되어 있다(수색, 압류,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 주형사법원의 업무는 거의 지구법원에 귀속되지 않으며, 여기에는 법원조직법 제78조의a에 따라 주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이전 형집행부의 활동과 형사소송법규칙 제161조의a III. 2에 따른 그 외의 결정(증인과 감정인이 결석했을 때 검찰의 조치에 대한 사법적 결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형집행부는 그 관할지역 내에 형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구법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할의 집중이 허용된다(법원조직법 제78조a II).

지구법원은 1년 이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단독판사가 판결하는데, 그 밖에는 1인의 판사와 2인의 참심원이 있는 참심법원으로서 공판절차에서 판결한다.

55 R. Brachmann, a. a. O. S. 301f.

③ 지역법원의 관할과 구성

이혼사건,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 등 민사소송에서는 지역법원이 배타적 제2심 관할법원이 된다. 이때 특별부(Senate)의 관할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주법원과 상급주법원의 관할권이 합쳐져서 지역법원에 속한다.[56]

지역법원의 합의체는 Senate라 표시하며 지역법원이 합의체로서 Kammer가 설치되어 있는 주법원의 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법원의 Senate는 주법원의 Kammer에 해당된다. 민사부(Zivilsenate)는 3명의 직업판사로 구성되며, 주법원의 민사부(Zivilkammer)의 구성과 상급주법원의 민사부(Zivilsenate)와 상응하는 것이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지역법원의 관할권은 주법원의 관할권에 따른 제1심 관할법원으로서 지역법원이 다음과 같은 사건을 심판한다.

- 법원조직법 §74 II에서 열거된 범죄행위
- 형사절차상 지구법원의 형벌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건
- 소년재판소법 제41조에 따라 소년형사부가 관할권이 있는 소년범죄 사건
- 사건의 범위, 비중 및 의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역법원의 심리가 요구되는 사건
- 관할집중에 따라 특별부가 설치되는 법원조직법 §74c에 열거된 경제범죄
- 법원조직법 §74a에 따른 국가보호사건

제1심법원으로서 지역법원은 2인의 판사와 2인의 참심원으로 구성되어 심판한다.[57] 제2심법원으로서 지역법원이 참심법원, 지구법원 단독판사 및 과태료에 대한 지구법원의 결정에 대한 공소 및 항소법원이 된다. 항소법원으로서

56 베를린시법원은 제2심법원으로서만 기능한다.

57 통일조약 부속문서 I. 제3장 사항A 제3절 제14호 b.

지역법원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심판한다.

- 단독판사의 결정에 대한 공소사건 과태료 절차에서의 항소사건에서는 1인의 판사와 2인의 참심원(소참심법원)
- 참심법원의 판결의 공소에 있어서는 2인의 판사와 2인의 참심원
- 지구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와 형사사건의 파기에 관한 결정에서는 3인의 판사

구동독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통일조약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1992년 9월 22일까지 구동독의 판결의 파기를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이와 관련된 구동독의 형사소송 규정은 일정한 규정에 따라 계속 적용된다.[58]

지역법원에 사법적 불법을 제거하는 업무를 할당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복권법 제11조가 있다.[59] 이에 따르면 3인의 판사로 구성된 복권절차를 위한 특별부가 설치된다.

④ 특별부(Senate)의 관할과 구성

주정부 소재지에 있는 지역법원에 설치되는 특별부는 3인의 판사로 구성되며 관할권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특별한 의미로 인하여 상급주법원에 할당된 업무로 국가보호사건, 법원조직법 제120조,[60] 형사소송규정 제120조, 제121조에 따른 구류사건, 제172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소송강제절차에서의 결정과 제310조에 따른 구류사건의 항소와 민사사건으로 법원조직법 제21조의b에 따른 재판부의 기피에 관한 결정.

58 특별합의서 제3조 제6호 참조.

59 BGBl I. 701.

60 이 사건은 특별한 조직적 예방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베를린의 Kammer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둘째, 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으로서의 업무, 즉 연방최고법원에 판결 또는 결정의 상위에 대한 재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연방최고법원의 업무과중에 병립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항소 및 상고법원으로서의 특별부의 관할권이 인정된다. 형사사건으로 EC법원조직법 제25조 1항에 따라 형사사법 보조업무와 집행업무, 상사법,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형사사건상 국제적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급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 주법의 위반에 대해 상고가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형사법원의 판결, 소법정(1인 판사, 2인 참심원)의 항소판결, 지역법원의 1심판결 등에 대한 상고 등이 있고, 민사사건으로 형사사법 보조기관과 관련되지 않는 사건에서 EC법원조직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법행정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비송사건재판권의 사건상 비송사건절차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항변을 기각하는 등기법원의 처분에 대한 항고, 혼인사건에서 외국법원의 결정의 승인에 관한 사법행정청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등.

셋째, 지역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가 불가피한 업무로 형사사건으로 심리가 개시된 때 당해 법원으로서 지역법원의 형사부(Strafsenate)의 결정에 대한 상소에 관한 결정과 민사사건으로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에 관한 법률 제102조와 민사소송 규정 제71조, 제89조 제1항 제3호, 제135조, 제141조 제3항, 제372조의a, 제406조, 제409조, 제4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타 상소에 관한 결정.[61]

넷째, 그 밖의 업무로 재심절차와 파기절차에서 다룬 토지관할 지역법원의 결정,[62] 질서위반법 제79조,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사건에서 항고와 항고의 허가, 경쟁제한에관한법률 제62조 이하, 제82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과태료 사건상 사법절차와 독점규제 기관의 처분에 대한 항고, 상급주법원

61 통일조약 부속문서 I. 제3장 사항A 제3절 제5호 d.

62 통일조약 부속문서 I. 제3장 사항A 제3절 제14호 h.

의 1심 관할법원이 되는 범위 내의 복권에 대한 이의신청[63] 등이 있다.

⑤ 특별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서독에는 특별법원으로서 행정법원, 사회법원, 노동법원 및 재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동독에는 이러한 특별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못했다. 그래서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 독자적인 특별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주법원으로서의 지역법원과 지구법원이 노동법원, 행정법원, 사회법원 및 재정법원의 업무도 대행하도록 하였다. 이들 법원은 노동법원법, 행정법원법, 사회법원법 및 재정법원법 등과 통일조약에 의해 수정된 법원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법원으로 기능한다.[64] 구동독지역에서 특별법원은 화폐·경제 및 사회동맹의 창설을 위한 조약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일반법원의 특별부가 이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의 집중이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서독의 법률상 행정법원이 관할권이 있는 사건은 지역법원이 소재해 있는 지역의 지구법원의 행정법에 관한 부(Kammer)에 속한다. 사회법에 관한 부(Senate)에게는 상급행정법원의 업무가 할당되고 사회법에 관한 부(Senate)에는 주 사회법에 관한 업무가 할당된다. 이러한 특별부는 주정부가 소재해 있는 지역의 지역법원에만 설치된다.

재정사건에서 제1심 관할권에 대해서 유사한 상황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정부가 소재하는 지역의 지역법원에 재정법에 관한 부(Senate)가 설치된다. 이 부는 재정법원에 귀속되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노동법 사건에서의 결정에 대해서는 관할의 집중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유추가 가능하다. 노동법원에 귀속되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

63 복권법 제11조 제1항.

64 Lörler, Das öffentliche Recht im Einigungsvertrag, in : NVwZ. 1991. S. 135f.

구법원의 노동법에 관한 부(Kammer)가 관할권을 갖는다. 제2심 관할법원은 지역법원의 노동법에 관한 부(Senate)이다.

지구법원과 지역법원에서 이 특별부의 구성은 사회법원, 재정법원 및 노동법원에 대하여 기타의 연방지역에서의 특별부의 구성에 관한 것과 같다.

다만,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다르다. 지구법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행정사건에 대해서는 2인의 판사와 3인의 명예판사, 이에 대하여 기타 연방지역의 행정사건은 3인의 판사와 2인의 명예판사에 의해 구성된다.
- 노동·사회법사건에서는 1인의 판사와 2인의 명예판사[65]
- 행정사건, 재정사건, 사회사건에서는 2인의 판사와 3인의 명예판사
- 노동법에서는 1인의 판사와 2인의 명예판사

3. 검찰청

검찰청은 법원의 구조에 따라 조직되며, 지역법원에는 주법원의 검찰청에 비견되는 검찰청이 설치된다. 지구법원에는 독자적 검찰청이 설치되지 않으며 지역법원이 설치된 지역의 검찰청이 지구법원에서의 검찰청의 직무도 수행하게 된다.

모든 군(Kreise)에 검찰청이 설치되지는 않으며, 검찰업무는 1개 지역 또는 다수지구를 관할하는 지역법원에 있는 검찰청의 지청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1개 또는 다수의 지구법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1개의 지구법원에 독자적 검찰청이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그 밖에는 검찰청은 각 주의 사정에 따라 조직된다.[66]

상급주법원의 검찰청에 비교될 수 있는 검찰은 특수부가 설치되어 있는

[65] R. Brachmann, a. a. O. S. 303f.

[66] Lörler, Das öffentliche Recht im Einigunsvertrag, in : NVwZ. 1991. Heft 2. S. 136f.

지역법원에만 설치된다. 특별부가 있는 주의 검사(장)는 지역법원에 있는 검사에게 지시권과 복무감독권을 갖는다. 당해 검찰청의 사물관할은 검찰청이 병행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사물관할에 따른다.

검찰은 그에 속하는 업무를 집행할 때 구동독에는 없는 검찰보좌관을 이용한다. 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찰보좌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0년 6월 30일까지 이 업무는 내부 수사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4. 법관의 지위

구동독의 사법권은 다른 두 개의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시민 간의 분쟁에 관한 중립적 해결을 임무로 하는 독자적 국가 권력이 아니었다. 사법권은 오히려 단일체로서 파악되는 국가 권력의 일부였으며, 다른 국가 기관과 협력하고 단일정당에 의해 형성된 국민의사를 최종적으로 관철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67]

법관의 역할도 이에 상응하여, 헌법상 인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적으로만 독립되어 있었다. 법관의 독립은 기본법상의 법관의 독립에 비해 거의 인정되지 못했으며, 국가조약에 의해 구동독의 법원의 독립성은 강화되었다. 특히 헌법원칙법,[68] 1990년 7월 5일의 법원조직법[69]과 법관법[70]은 헌법과 일반법의 차원에서 구동독 법관의 인적, 물적 독립성을 강화했다. 동시에 법관관계는 공법상의 근무관계와 충성관계에 있는 근로관계로 재형성되었다.

양독의 통일과 함께 서독의 독일법관법은 연방법으로서 편입지역에 적용

---

67 Jürgen Schmidt Räntsch, Richterrecht in den neuen Ländern, in : DtZ 1991. 2. S. 33f.

68 GBI DDR I, 299.

69 GBI DDR I, 634.

70 GBI DDR I, 637.

되고, 편입지역의 법관법은 주법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71]

그런데, 독일법관법[72]은 예컨대 오스트리아 법관법과는 달리 연방과 주의 법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완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연방입법권자도 입법권이 없었으며, 오직 연방법관의 법적지위를 규율할 권한이 있을 뿐이었다. 주의 법관에 대해서는 연방 입법기관은 주에서 직접 효력 있는 개별적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개괄적 규정만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독일법관법은 '연방과 주의 법관직'이라는 제1부에서 비록 법관직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주법에 의해 상세하게 규정될 필요는 있지만, 연방과 주에 복무하는 모든 법관에 대하여 법관관계의 본질적 요소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주의 법관에 대해서는 독일법관법이 이러한 점에서 주법관법에 의해 보충되어야 하는데 3부의 개괄적 규정만을 두고 있다.

통일조약 부속문서 I. 3장 4항A, 3절 8호에서 독일법관법을 편입주에 도입했다. 한편 통일조약 부속문서 II. 제3장 4항A, 제1절 제4호 내지 제9호에는 일련의 구동독법 규정의 효력 유지가 규정되었다. 따라서 독일법관법 또는 다른 연방법에 의해 규율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구동독의 법관법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주입법권의 대상을 규율하는 그 밖의 경우에는 구동독의 법관법은 통일조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연방법과 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법으로서 효력이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독과 서독은 법관의 자격을 각기 다르게 규정했다. 따라서 통일조약은 법관의 자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즉, 동독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의 인정여부, 법관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연한과 전문교육과정의 인정여부 및 수습근무의 실시여부에 관한 문제 등이었다. 독일법

71 편입과 함께, 비록 서독의 협력에 의존하기는 하였으나, 동독의 법관법의 발전은 중단되고, 오직 연방의 법관법이 포괄적으로 동독지역에 적용되게 되었다.

72 독일연방공화국의 법관법에 대해서는 Schmidt Rantsch, Deutsches Richtergesetz, 4 Aufl, 1988.

관법 제5조의b에서 1단계의 법학교육의 종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독일법관법 제109조는 과거 자격의 계속적 유효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통일조약은 이에 근거하여 편입 시에 동독법관법에 따라 법관의 자격을 보유한 자의 법관 자격은 유지된다고 규정했다.[73]

제2절 주입법기관에 대한 권리

법원조직은 기본법 제74조 제1호에 따라 연방입법기관이 그 입법권을 행하지 않으면 주입법기관의 입법 여지가 있는 경합적 입법사항에 속한다.

통일조약은 연방법으로서 실효성 있는 법이다. 구동독 영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원조직에 관한 모든 경과규정은(법원의 설치, 관할, 구성에 관한 규정) 주입법기관에 의해 개정될 수 없다. 주의 입법권은 법원의 조직, 특히 지역적 분산에 한정된다. 주법의 규정은 연방법이 주입법기관에 대하여 권한을 포함하고 있는 한 허용된다.

편입된 지역의 사법부의 구조에 대하여 통일조약에는 그러한 권한이 열거되어 있다. 이에 따른 주입법기관은 아래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74]

- 정돈된 사법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인적, 물적 전제가 존재하는 한 법원조직법에 예정된 법원(지방 주 상급주법원)과 검찰청 및 가능한 한 특별법원 등의 설치, 언제까지 이것이 설치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시간적 한계를 통일조약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 효과적인 권리구제의 요구에 따른 법원의 조직
- 지구법원의 검찰청의 조직
- 독일법관법 제74조에 따른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법관의 법률관계

73 통일조약 부속문서 I. 제3장 사항A 제8호 y.

74 통일조약 부속문서 I. 제3장 사항A 제8호 y 이하.

- 법원조직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1991년 6월 30일까지 검찰의 검사보조관의 임용
- 사법부의 특정업무가 위임될 수 있는 자의 여부.
- 법원의 부(Senate, Kammern)에 할당된 모든 형태의 사건을 법원에 귀속
- 특정 주의 법원에 다른 주의 관할법원과 합의에 의한 업무의 위탁. 일반적 관할집중은 통상적인 사법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특별법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특히, 주법에 의하여 아래 사항은 여러 개의 지구법원이 있는 지역(Bezirk)에 대하여 하나의 지국법원에 귀속될 수 있다.[75]
- 소년사건 또는 조세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 형사사건
- 형집행부에 귀속되는 업무
- 가사사건 및 전부 또는 일부의 후견사건
- 특정한 민사사건, 예를 들면 주식회사법 제98조, 제99조
-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에 따른 상사사건
- 경제사범(경제사범의 사법절차에 관한 법 제8조)
- 독촉절차에 관한 관할
- 법원조직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사건
- 노동법사건

제1심 관할법원으로서 지역법원에는 법원조직법 제74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와 법원조직법 제74조의c 제1항에 열거된 경제범죄부에 할당된 사건이 집중된다. 지금까지 유효한 법에 따르면 관할집중(상사사건, 상업등기 및 협동조합등기, 선박등기, 행정사건, 재정사건 및 사회법사건)은 그대로 유지되나 주입법기관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한편, 법원 구조의 유지에 관한 규정과 통일조약상 법원조직법의 경과규

[75] 통일조약 부속문서 I. 제3장 사항A 제3호 이하.

정은 베를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한 도시에서 병행되는 2개의 법원조직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서 서베를린에 존재하는 법원조직이 동베를린까지 그 관할권을 확대한다(지방법원. 주법원, 주 최고법원, 특별법원 등). 예정된 동베를린 법관의 통합에 의하여 개정된 법원조직의 영역에서 그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 외에는 다른 지역의 구동독의 법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76]

제3절 분야별 동독의 법제정책

1. 재산반환의 문제

동독지역에서는 소련 점령 당시와 독일민주공화국 건립 이후에 사유재산의 국유화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경우 미미한 보상이나 또는 보상 없이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통일독일의 입법기관은 당시 행해졌던 다수의 수용 조치에 수정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되었다. 즉 국유화된 재산을 다시 반환하거나 아니면 기존 상태를 기본적으로 고수하되, 소위 말하는 '불법적인 분배'로 인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이었다. 이 두 가지 대안을 놓고 결정을 내리는 일이야말로 독일통일 문제에 있어서 가장 난해하고도 논란이 많았던 사안 중의 하나였다. 1990년 6월 15일 자로 발표된 동서독 양국 정부의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보상 이전에 반환'이라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였다. 1990년 9월 23일 동독 인민회의는 미확정 재산권 규율법(VermG)을 공포하였고, 이 법은 연방법으로 편입되었으며, 몇 차례 법 개정을 거친 후에 현재도 미확정 재산권 규율법으로서 유효하다.

재산권 규율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반환하여

[76] Stern, Schmidt-Bleibtreu, Einigungsvertrag und Wahlvertrag, S. 209ff.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규정보다 적은 액수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개인의 재산을 수용할 경우
- 경제적인 이유의 불가피한 특정 상황이 발생했던 경우(예: 임대주택을 소유했었으나 동독의 주택 임대료가 낮아서 유지비를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었던 구소유자)
- 권력 남용, 부정부패, 사기 매입, 국가기관 또는 제3자의 공갈 협박(출국 시 강제 매각) 등으로 인한 부당한 방법에 따른 사유재산 취득 시

동독 주민들은 자체 기관과의 합의하에서 그리고 그들이 취득한 재산이 영구적으로 유효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재산권 규율법 조건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수십 년간에 걸쳐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보상 이전에 반환'이라는 기본 원칙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런 이유로 구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을 하지 않았다. 즉, 1945년 5월 8일 이후에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물권적 이용권을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 특히 동독 주민이 국가가 빌려준 이용권에 근거하여 해당 토지에 개인 주택을 짓고, 동독 민법전에 의거하여 건물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게는 보상을 해 주었다. 이와 반대로 단지 사실적인 건물 건립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다음으로 먼저 누가 편입주에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인가의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었다. 구동독에서 소유권은 연방법 질서상의 소유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연방공화국(서독)에서 적용되는 소유권질서를 기준으로 규명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래도 미흡하였다. 서독 연방법 질서상의 사적소유권은 재산권의 영역에서 개인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보장하고 자기 삶의 자기책임적인 형성을 가능케 하는 개인의 기본권으로 파

악되는 반면, 사회주의적 소유권은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및 정치적 권력행사 및 권력분배를 확보하려는 목적에 봉사한다.[77]

통일 이후에 사유화, 즉 인민 소유를 사적 소유로 전환하는 문제를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아가, 편입주 내의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부담,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이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전의 소유권자가 그의 소유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만 하였다.

2. 구동독에서의 재산권질서

동독에서의 소유권 관계는 사회주의적 소유권질서를 반영하고 있었다. 즉,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면 소유권은 시민법적 기능(거래와 투자)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하였다. 부르주아 사회의 통일적이고 추상적인 소유권 개념과는 대조적으로 동독 사회주의법은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에 상응한 소유권의 유형화라는 마르크스주의를 따르고 있었다. '개인적 생존배려관계규율을 위한 법제'로서 구상되어 1976년 발효된 동독민법(ZGB)은 당연히 두 가지 소유권 유형을 표현하고 있었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회주의적 소유권과 항상 기능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개인소유권이 바로 그것이다.[78]

사회주의적 소유권에는 조합소유(LPG, GPG), 사회조직소유(정당, FDGB) 그리고 최고의 소유단계로서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국유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인민소유(Volkseigentum)가 있다.[79] 생산수단은 본질적으

---

77 Götz von Craushaar, Grundstückseigentum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tZ 1991, 10, 359f.

78 법제처, 1992, p.171.

79 동독헌법 제10조 제1항: 사회주의적 소유는 전체 사회적 인민소유, 작업집단의 조합적 공동소유 및 인민이 참여한 사회조직의 소유로 구성된다(ZGB 제17조 내지 제42조).



로 사회주의적 소유에 속하는 반면에 개인적 생필품은 개인적 소유에 속한다. 물론 거주와 요양의 기능에 국한되는 건물 및 토지도 개인적 소유에 속한다.[80] 또한 수공업자 및 자영업자의 개인적 노동에 기초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개인소유권 규정이 준용된다.[81]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 사적 소유권(Privateigentum)이 사실상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1950년대의 동독 교과서에서 사용되었던 사적 소유라는 용어는 최소한 동독민법의 발효 이래로 법률용어상으로는 폐지되었다. 개념상 가까스로 개인소유로 설명되는 시영임대주택(städtische Mietshäusern)에 대한 소유권은 동독민법에 대한 주석을 통하여 거의 사문화되었다. 거래 가능성을 제한하고 매매나 임대차의 경우에 자유로운 가격협정을 계약 당사자의 권한에서 제거함으로써 자본화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는 제반 입법으로 인하여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즉 건물의 유지보존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임대인의 건물 보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이러한 입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증여의 방법으로 자신의 토지를 인민소유로 양도하였다.[82] 본질적으로 농업생산조합(LPG)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었던 농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나아가 1950년대 이래로 빈번히 강제적으로 집단화된 조합농민은 그들이 출자한 토지에 대하여 형식적 소유자였지만, 이용과는 상관없이 사실상 농업생산조합은 결합된 토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다. 농업생산조합은 누가, 어떻게 조합 토지를 이용할 것인가를 정하여, 그 결과 농민 또는 그의 상

80 인민의 개인적 소유와 상속권은 보장된다. 개인적 소유권은 인민의 물질적 및 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있다(동독헌법 제11조 제1항).

81 동독민법 제23조.

82 1989년 동독에는 708만 호의 주택이 있는데 41%가 사적 소유이고, 42%는 자치단체 소유이고, 17%가 조합 소유였다. 이에 비하여 1971년에는 주택의 62%가 사적 소유였다. 1989년 동독통계연감, p.170. (susanne Jung/Milos Vec, Einigungsvertrag und Eigentum in den fünf neuen Bundesländern, JuS 91, p.715.

속인은 농지에 대한 소유자 지위를 더 이상 보유하지 못했으며, 상속의 경우에 권리승계를 포기하였다.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절하 이외에도 수용(Enteignung)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였다. 1945년 소련점령구역(SBZ) 내에서는 이미 봉건적-융커적 대토지 소유 청산을 통한 민주적 토지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83]이 발효되었다. 또한 농장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나치 협력자와 전범자의 소유 토지도 수용되었다. 이러한 수용조치에 대한 법원의 보호는 배제되었다.[84] 인민 소유화된 토지와 농지의 현황[85]은 정확하게 백분율로 보고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인민 소유화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이른바 '개혁토지'로서 영세농, 특히 점령된 동부지역으로부터 소개된 자와 망명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었다. 그 후 일련의 동독법률에 기초하여 수용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 건설법(Aufbaugesetz,[86] Baulandgesetz[87])이 이에 대한 기준적인 입법이었다.

수용은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식적인 절차와 손실보상을 대가로 이루어졌다. 1972년 사유기업과 반국영기업(halbstaatliche Betriebe)을 표적으로 하여 계속적인 수용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에 형식적으로 매매가격 또는 손실보상액이 확정·지급되었다. 토지가 인민 소유로 이전된 이후에 토지대장(Grundakt)은 폐쇄되었다. 그 후 자주 개정된 여러 가지 법률들은 이른바 공화국 탈주자들과 여타 유형의 사람들의 재산의 일부 수용 및 일부 임시 국가 강제관리에 관한 것이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적 관리인의 임명 가능성도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토지의 자유로운 처분 가능성까지는 허용하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동독에서 40년간 계속된 토

83 SMAD-Befehle Nr. 124(1945. 10. 30)/ Nr.126(1945.10.31)

84 BVerfG 1991.4.23.

85 토지개혁의 결과로 320만 ha가 토지공사에 속하게 되었고, 그중에서 260만 ha가 사적 점유자로부터 유래한 것이었다. 현재 개혁토지의 최소 80%가 신탁공사의 처분대상이다.

86 1950. 9. 6. GBL, 1950, p.695.

87 1984. 6. 15. GBL, 1984, p.201.



지 법제의 유일한 목적은 토지소유권의 인민소유화 또는 최소한 조합소유화 그리고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인 통제 등이다.[88]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민소유 토지는 분산원리(Gießkannenprinzip)[89]에 따라 분배된다. 예컨대, 시민의 주택 및 식량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경우에는 주택조합 및 농업조합에게, 기업경영의 경우에는 개인기업 및 인민소유 기업에게, 개인주택 건설과 휴양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각각 인민소유 토지가 분배된다. 조합도 자신에게 할당된 토지뿐만 아니라 아직도 농민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다시 분배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아니라 목적 구속적인 물권적 토지이용권(Nutzungsrecht)이 분배되었다. 동독민법 제286조 이하는 서독 민법상의 지상권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동독 민법상의 이용권 규정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보유할 권리를 상속 및 양도 가능한 것으로 보장하고 있었다. 토지소유권은 이용권에 의하여 법적으로 제한받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설치한 건물의 소유권은 이용권자에게 귀속되고, 그리하여 이용권은 소유권에 준하여 보호된다.

지상권(Erbbaurecht)에 대한 이용권의 차이점은 권리의 설정과 종료 시에 나타난다. 지상권 설정에는 소유권자와 채권계약(schuldrechtlicher Vertrag) 및 서독민법 제873조(토지소유권 취득)의 합의(Einigung) 그리고 등기가 필요하지만, 동독민법 제286조에 따라 인민소유 토지에 대한 이용권은 '대여(Verleihung)'를 통해, 조합이용 토지에 대한 이용권은 '배정(Zuweisung)'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용권자에게 교부할 문서는 국가의 결정(대여) 내지 조합의 결정(배정)을 명시해야 했다. 이용권은 국가의 서면 증명사항이고, 그를 기준으로 등기되었지만, 등기부는 사회주의 토지정책에 있어서 대체로 그다지

88 Susanne Jung/Milos Vec, p.716.

89 일명, 물뿌리개원리로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는 투자와 거래의 목적 때문에 대부분의 부동산이 일정한 거래가치에 따라 평가되고 또한 그에 상응하여 단일 추상적인 소유권 개념이 존재하는데 반해 사회주의 사회는 실질적인 기능에 따라 소유권의 내용 자체가 다원화되고 그 기능에 따라 분산되게 된다.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등기는 창설적인 효력을 갖지 않았다. 자가 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러한 이용권이 시민에게 대여 및 배정되었다(동독민법 제287조 이하, 제291조). 그러나 사회조직적 조합(그의 영조물, 기업)은 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동독민법 제286조의 준용하에 인민소유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대여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요양목적의 토지이용에 관한 경우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서도 이용권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이용권은 상속은 가능하지만, 양도 내지 처분은 불가능하였다.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이용권의 경우에도 토지이용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이다.[90] 토지에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용권자는 건물에 대하여 특수한 소유권을 취득했다.[91] 그리고 이러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토지취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었다. 건물소유등기부(Gebäudeeigentumsblatt)에 이러한 권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약정이용 토지상의 건물에 대해서도 특수한 소유권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건물소유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러한 소유권은 동산과 마찬가지로 양도될 수 있었지만, 반드시 이용권을 수반해야 했다. 인민소유기업(VEB), 국가기관, 국가 영조물이 약정이용 토지 위에 건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한 건물에 특수한 인민소유권이 성립했다. 약정이용 토지상의 기존건물에 대하여 중요한 증축 및 개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치 상승분에 비례하여 인민소유적인(또는 증개축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의) 공동 소유권 지분이 성립했다.[92] 대여 받은 이용권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권 대신에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했으며, 건물은 인민소유로 양도되었다. 배정에 근거한 이용자

90 동독민법 제288조 제3항. 영업적 이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상이고, 주거이용의 경우에는 무상이다.

91 동독민법 제288조 제4항 및 제292조 제3항.

92 동독민법 제459조.

는 권리박탈 시 건물을 양도할 의무가 있었다.[93]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해지통고하는 대여자는 이용권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토지상의 건물 및 입목(Anpflanzung)을 매수해야 했다.[94]

3. 시장경제 통합 법제의 준비방안

1) 사유재산제의 보장

독일통일에 있어 재산권 귀속과 관련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단 전에 동독에 남겨둔 재산의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 및 원상회복, 둘째, 원소유자의 소유권 신고(마감 1992.12.31.) 등에 의해 원상회복 청구가 불가한 경우에 대한 보상, 셋째, 원소유자의 원상회복 원칙이 가져온 소유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투자유치의 곤란을 제거하기 위해 투자우선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기본법상의 재산권 보호에 내포되어 있는 헌법상 과제는 1945년 이후 개인 소유권 또는 집단의 소유권을 부인하였던 사회화·국유화 조치와 통일 이후 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재산권의 보호 간의 법적 괴리를 어떻게 조정하는가 였다.

① 재산법(토지반환 관련)[95]

통일조약에 근거를 둔 재산법은 원칙적으로 과거에 수용 또는 여타의 방법으로 인민소유가 된 재산가치 또는 국가에 의해 관리된 재산가치의 원상회복을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점령당국에 의한 수용조치(1945.05.08.~1949.10.07.)에 대해서만 예외로 취급하고 있다.[96] 이러한 규정은

93 동독민법 제293조, 제294조.

94 동독민법 제314조 제6항.

95 Gesetz zur R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on 3.8.1992.

96 재산법 제1조 제8항 제1호.

양독 정부의 성명을 통하여 국제법적으로 확보되었으며, 통일과정에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서독 정부는 이러한 결론을 양해했다.[97]

토지반환에 관한 재산법의 입법에서는 통일조약에서 선언한 재산권의 반환원칙을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 재사유화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율하고자 하였다.

구동독에 남아 있는 재산은 나치시대 나치 정부에 의해 몰수된 재산, 구소련점령군에 의해 몰수된 재산, 구동독 정부에 의해 몰수된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국공유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반환하는 원칙 그리고 반환이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보상원칙을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였다.

재산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재산권 반환원칙을 선언하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 정의와 상소권 등을 규정하고(제1절),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 반환이 배제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며(제2절), 국가관리의 폐지에 따른 절차 및 책임규정(제3절), 특히 현재 원소유자는 아니지만 토지 혹은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권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 및 우선매입권제도(제4절), 재산권 반환을 실행하는 조직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 및 지원제도를 규정하며(제5절), 소유권 신고 및 신고 마감 기간들의 절차에 관한 규정(제6절) 그리고 권리자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소송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용대상으로 무상으로 몰수 혹은 수용된 재산, 채무초과로 수용되었거나 재산권을 포기한 재산, 부정한 방법(사기, 강박, 권력남용 등)으로 빼앗긴 재산, 청구권 또는 이용권, 나치시대에 몰수된 재산에도 준용하였다.

그러나, 구소련 점령 시에 수용된 재산, 동독이 국가 간 협정을 통해 규율한 청구권은 적용이 배제되었고, 아예 반환이 배제되는 경우는 성질상 재

97 공동성명에 소련과 동독 정부가 점령기간에 행한 수용에 대하여 배상의 가능성이 없다고 표현했다.

산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정당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용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건물의 경우 공동이용, 복합주거 등에 이용되거나, 기업에 편입되어 반환 시 현저한 손실을 야기시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었다.

또한, 반환 배제 시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임차인 등에 제3자의 기존권리 보호 규정도 두었다.

즉, 재산법은 통일조약상 구동독에 남겨져 몰수되었던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법률이었으나, 반환원칙에 대해 일정한 반환배제 규정을 두고 이 경우에는 보상을 하도록 하거나 혹은 신청권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반환만을 고수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일정한 경우 투자우선에 의한 재산권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원상회복 원칙에 따른 부작용의 예방책도 마련하고 있었다.

특히,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원칙과는 관계없이 토지나 주택 등의 이용자 및 임차인에게 기존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점은 향후 남북통일 시 고려할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② 투자우선법(동독지역 투자활성화 관련)[98]

통일조약 및 재산법상 동독지역에 남아 있는 재산을 원소유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동서독통합 시작 후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게 되었다. 즉, 일단 구동독의 원래 등기부상 원소유자의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그 소유권의 반환 및 소유관계의 미해결 상태에서는 그 토지에 대한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동독지역의 경제재건을 위한 투자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반드시 강력한 투자장려 및 유인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98]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vom 14. 7. 1992.

이에 1992년에 이르러서야[99] 반환대상이 되는 재산(토지, 건물, 기업)이 일정한 투자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관계의 미확정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재산법상의 규정을 배제하고 행정명령(행정행위)으로써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고 해당 권리자(반환청구권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보완책으로서 투자우선법이 입법되게 되었다.

투자우선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적용대상 재산은 기존 토지 및 건물(투자우선법 제2조 제1항)에서 기업에까지 확장(동법 제2조 제2항)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투자우선법이 적용되는 재산 대상은 오로지 국가에 의해 몰수된 재산으로서 반환청구권이 신청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며 단지 국가관리하에 있었던 재산은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소유권 주장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에 의한 완전보장을 해 주는 조건으로 소유권의 확정이 되기 전이라도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국가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 주체는 재산의 처분권자로서 연방정부청, 지방자치단체 혹은 신탁관리청이 되었다.

특별한 투자 목적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우로서는,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일자리 보장 또는 창출, 영업소 및 서비스업의 창업 및 유지, 주거용 주택의 건축 또는 재건축과 같은 새로운 거주공간의 창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창출의 경우 등이 해당되며, 기업 혹은 업무용 토지의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보장,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원소유자의 기업의 계속성 혹은 회생을 위한 노력을 보장하지 않는 때 등이 해당된다.

해당 토지나 건물 혹은 기업이 신탁관리청의 소유에 속하든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것이든 또는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이 법

[99] 본법은 1992년 7월 14일에서야 입법되었음.

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동독지역에서 소유관계가 미해결 상태에 있어 투자가 꺼려지던 재산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투자우선순위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매각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 남북경제 통합 시 북한 내 남아 있는 분단 전의 소유권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에 따라 이런 형태의 입법의 효용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구소유권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산권문제를 처리함으로써 북한 내 투자를 통한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시장경제를 위한 회계법제 확립[100]

'독일 마르크로 표시되는 개시 대차대조표법'은 통일조약 부속서 Ⅱ 제3장 제2절의 규정의 시행을 위한 법률로써, 통일 당시 동독의 기업소 등에 대해 서독의 상법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 목록을 마르크화로 작성하게 하고, 또한 독일 마르크로 표시되는 개시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통일된 회계장부를 작성시킬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기업회계 영역에서의 법통일을 목표로 동독지역에서 모든 기업 및 상인에 대하여 독일 상법상의 회계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구동독지역에서 기존의 회계를 종식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회계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구동독 마르크화 표시 결산 대차대조표를 단순히 화폐교환 비율대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계산과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일종의 경제적 인프라의 통합작업의 일환으로 모든 상인 및 기업의 회계제도를 일거에 통일하고, 기존의 다양한 형태의 구동독 기업소의 부

[100] Gesetz über die Eröffungsbilanz in Deutscher Mark und die Kapitalneufeststellung-D-Markbilanzgesetz vom 23.9.1990.

정확한 회계장부 작성과 자산평가를 서독상법상의 회계장부 작성방식과 자산평가 방식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정밀한 회계장부 작성과 정확한 자산평가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형태로의 전환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기존의 구동독 기업소의 회계장부상의 회계를 단순히 교환비율로 환산처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부정확한 회계작성과 자산평가를 정상화한 과정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법은 남북한통일 후 북한의 다양한 경제 주체의 회계처리 및 자산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방향과 원칙의 모델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3) 기업의 문제

구동독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직면한 문제는 통일이 야기하는 법적·정책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구동독지역 기업에 대한 전환 및 구조재편의 문제는 단순한 재산권 재조정의 문제를 뛰어넘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체제전환 및 산업 재편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었다.

동독의 재건과 고용보장 문제의 핵심은 동독지역의 경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적 구조로 전환하는 것(합리화 또는 사유화)이다. 따라서 재산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든 제3자에게 매각하든 아니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든 많은 현금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통일 부담을 엄청난 규모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재산법상 반환 대상인 재산가치 중에 기업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101] 그렇다고 하여 소유권이나 지분권을 박탈당한 자면 누구나 기업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동독 정부 수립 이전(1945년부터 1949년 사

[101] 재산법 제6조 제1항 제1문.

이)에 점령고권에 기한 수용의 경우에는 재산법 제1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반환이 배제된다.[102] 처음부터 원상회복이 배제된 경우(점령고권에 기한 몰수, 동독 수립 후 기업국유화조치 시에 보상이 주어진 경우 및 반환 규정상 기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 반환 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기업에 특별투자 목적을 인정받은 관계인(투자인)이 출현한 경우에는 반환하는 대신에 신탁관리청이 직접 기업을 처분할 수 있다.

① **신탁관리법**[103]

신탁관리법은 통일 직후 동독의 국유재산, 기업소, 기타 경제주체들에 대한 사유화과정이 각기 다른 근거법률에 의해 진행되었던 것을 신탁관리청으로 하여금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7월 1일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사회주의 기업소로부터 시장경제 체제의 회사형태로의 전환을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또한, 시장의 수요에 상응하는 경제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사회주의 국영기업을 사유화하는 동시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조개편하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동 법은 이러한 목적을 신탁관리청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신탁관리법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국유재산의 소유권 양도를 들 수 있다. 이는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각 주, 시, 군 및 공공기관에 양도함에 따라

---

102 신탁관리청이 과거 인민소유 기업과 인민소유 재산을 매각, 사유화하여 동독지역의 경제구조를 개편하려 해도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인수를 기피하는 실정이었고, 또한 원소유자 측은 당해 재산을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단순한 재산증식을 위해 계속 소유권만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통일 직후에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반환보다는 보상'이라는 입장이 대두되었으나, 이에 대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다른 한편으로 사회국가적 요청에 따라 재산의 사회적 구속성을 강조하여 보상을 우선한다는 주장이 대비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반환우선원칙이 입법적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넓은 범위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103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vom 17.6.1990.

각 주 등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국영기업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신탁관리청은 이들 기업의 국유재산을 신탁받아 사유화를 추진하고 재산권을 취득하였다. 둘째, 신탁관리청은 공공기관으로서 각 주에 15개의 지점을 설치하고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추진하고 사유화 후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각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신탁관리청은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매각을 담당하는 중간매개 조직으로서의 신탁주식회사를 통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넷째, 회사형태로의 조직변경을 하였다. 즉, 국영 연합기업소는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을 하였으며, 국영기업은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을 각각 하였다. 또한 조직 변경과 함께 종전 공동신용조합에 속했던 재산과 관리주체(신탁관리청 등)에 속했던 토지는 조직 변경된 회사로 자동적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독일통일 초기 단계에서 신탁관리청에 의해 주도된 이러한 사유화 작업은 국영기업소 등 사회주의 경제 조직들이 신속하고 통일성 있게 시장경제 질서의 경쟁력 있는 회사 형태로 전환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분단 전의 구소유권을 반환한다는 일반원칙과 달리 국영기업 등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구소유자에게의 반환원칙을 배제하고 신규 투자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동독지역에서의 신속한 경제재건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1992년 10월 15일 중간점검 결과 신탁관리청은 8,866개의 자본회사(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소유·관리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회사분할제도를 통해 그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104]

독일통일에 있어 신탁관리청에 의한 산업, 기업 부문의 통합과 정리작업은 가장 성공적이고 핵심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남북경제통합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모델이며, 독일통일 당시 신탁청에 의한 사유화 및

[104] Nobert Horn, Das Zivil- und Wirtschaftstrecht im neuen Bundedgebiet, 2. Aufl.(1993), S.832.

매각작업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유화과정을 거쳐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은 대부분(86%)이 서독의 투자자에게 매각되었는바,[105] 이는 신탁관리청에 의한 사유화 조치가 외부로부터의 자본투자 유치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반면, 동독지역의 자생적 투자의 재창출을 유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기업의 반환문제

독일통일은 기업을 자본주의적 경쟁구조에 맞게 전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경쟁구조라는 용어는 기업을 원소유자에게 재사유화해야 한다는 점을 당연히 전제한다. 따라서 기업문제에 관해서도 여타 재산과 마찬가지로 역시 반환원칙이 채택되었다.[106]

구동독에서 수용된 기업의 반환문제는 1990년 3월 7일 이른바 기업법[107]에서 처음으로 규율되었다. 이러한 기업법은 재산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재산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기업반환규정[108]은 기업반환에 관하여 규정한 재산법 제6조의 불확정 개념을 훨씬 정밀하게 기술하고 있다.[109] 이러한 규정은 기업반환 절차를 관할하는 관청에 우선적으로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반환규정 제1조는 기업을 전체로서 반환하도록 명문화하고, 그럼으로써

105 사유화된 기업 중 90%가 다국적의 투자자에게, 5%만이 동독 출신의 투자자에게 매각되었음(자료: Alexander Fischer,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통일부 2010, p.514.).

106 12,000개의 기업에 대하여 9,000건의 반환신청이 있었다(FAZ 91. 3. 16, p.1). Susanne Jung/Milos Vec, p.719.

107 Unternehmensgesetz 1990. 3. 7(GBL DDR I, 141).

108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gmen(1991.07.13).

109 재산법 제6조에 따르면, 반환대상이 된 현재 기업이 수용 당시의 기업에 비추어 그 당시의 기업과 동일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수용된 기업은 반환된다. 기업반환 규정은 물론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환대상 기업의 확정문제 및 수용 당시 기업과 현재 기업 간의 동일성(Vergleichbarkeit)의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기업 자체의 반환과 개별재산의 반환을 구별하고 있다.[110] 이러한 규정의 핵심은 기업을 반환시점의 상태대로 반환하라는 것이다.[111] 또한 청구권자로부터 수용된 재산이 유기적 결합체로서 최광의의 영업(소상인인 경우라도) 수행에 기여해 왔고, 현재의 척도에 의해서도 경영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반환규정상의 반환대상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수용 당시 기업과 현재 기업 간의 동일성문제에 있어서 기업이 단순히 법적형식을 바꾸었거나, 다른 기업과 결합되었거나, 확장되었거나, 주소만을 바꾼 경우에는 수용 당시 기업과 현재의 기업 간에 동일성이 인정된다.[112]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종전의 재산법 제6조 제1항[113]에 의하면 그다지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이리하여 반환규정 제2조는 "종전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폐지되고,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생산이 기업에게 중대한 변형을 초래했으며, 그렇게 하는 데에 막대한 규모의 신규 자본이 투여되었던 경우에는 동일성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만으로 동일성이라는 불확정 개념이 의문의 여지없이 해명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와 같은 불확정 개념을 통하여 기업 반환에 제동을 걸고 동독지역 재건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110 재산법 제6조, 재산법 제2조.

111 재산 및 수익상태의 현저한 개선 또는 악화(재산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를 이유로 조정금청구권 또는 재산법 제3조 제3항의 위반을 이유로 처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물론 인정된다. 재산법 제6조 제1항 제3문.

112 반환규정 제2조.

113 제1항 제5문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경제적 진보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변화되지 않았거나 과거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당해 기업은 수용된 기업과 동일하다.

4) 시장경제를 위한 집단농장의 개혁법제

① 통일 당시 협동농장 처리의 방식

1960년 농촌지역에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농업생산의 집단농장화와 농업생산조합(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 LPG)으로의 강제통합을 통일 후 동독 농민들이 희망하는 바대로 되돌리고 농업조합, 유한회사, 개인영농의 형태로 되돌리는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였다.

다만, 구동독 체제하의 집단농장 형태를 대규모 영농경영 방식으로 유지하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기로 하였다. 특히 통일 전 동독의 각 주마다 개인영농 방식[114]과 국영/집단농장 운영방식[115]으로 구분되어 개인영농과 조합/회사 형태를 혼용하기로 하였다.

신탁관리청이 인수한 토지는 농업경작지 200만 ha, 산지 140만 ha였다. 이 중 60만 ha는 소비에트군정(1945~1949)이 몰수한 토지로서 반환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원소유자의 반환요구 소송이 제기되어 투자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② 농업구조적응을 위한 법제[116]

'농업조정법'이 입법된 것은 동독 농업 및 영농 체계가 이미 EU 역내에서 완전 개방된 구조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을 타개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영농 체계를 시장경제 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고, 기존의 집단농장 및 생산조합 형태를 새로운 법적 형태의 체계로 변경하는 입법조치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

114 튜링겐주, 작센주 일부, 작센-안할트주에서 전통적으로 개인영농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농업 부분, 통일부, 앞의 책, p.649.).

115 메클렌부르크와 브란덴부르크주가 전통적으로 대규모 경영체나 국영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116 1991년 7월 3일 시행(BGBl. I S.1418). 1991년 12월 20일 제1차 개정, 1992년 7월 14일 제2차 개정이 있었음.

농업조정법은 토지의 개인소유권 및 개인의 경작의 허용, 모든 소유 및 경작 형태에 대한 기회균등 보장을 통한 농업산업의 구조 변경과 농업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하였다.

ㄱ) 영농 체계의 형태 변경

농업생산조합(LPG)을 조합, 개인영농을 포함하는 인적회사, 자본회사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분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분할되는 농업생산조합은 조합, 자본회사 혹은 인적회사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업생산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의 탈퇴, 탈퇴하는 경우 보상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ㄴ) 소유관계의 확정 및 새로운 규율 형태

농업생산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가족농업경영체를 설립하는 경우 이들의 지분에 따라 조합의 토지 및 건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발적인 농지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발적인 교환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경지관리청이 명하는 토지규율 절차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 법률의 시행에 의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동독의 농업운영 체계 및 소유관계의 변경을 이룰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아예 전무한 EU 역내에서의 농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영농 체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요체는 조합 형태나 회사 형태의 영농운영 체계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다. 개인영농을 위해 기존 협동농장/집단농장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그동안의 노동력 제공 및 영농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장 역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농업시장 구조의 적응촉진법[117]

동 법은 농업, 임업, 수산업 영역에서 사회주의적 집단적 생산 체계 및 운영 체계를 통일 후에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개편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가함으로써 전환 및 개편 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개편 후 동독 내의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적절한 부의 축적과 분배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118]

동 법은 농업, 임업, 수산업 경영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담았고, 가족영농 체계의 창설이라는 점이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농업, 임업, 수산업 생산 및 시장구조의 개선과 더불어 농업 등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부조금, 대출, 이자지원 등 재정지원을 포함한 적응 및 전환과정에 대한 보조 및 지원과 함께 생산직의 해고 시 사회적 곤란 예방조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 임업, 수산업의 생산 및 운영 체계를 사유화 및 사적영농으로 개편함에 있어 그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사유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반도 통일 시, 이 법은 북한지역의 농어민 종사자 및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부의 축적과 재분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 시사점이 될 수 있다.

---

117 Gesetz zur Förderung der agrarstruktuellen und agrarsozialen Anpassung der Landwirtschaft der DDR an die soziale Markwirtschaft vom 6.7.1990, GBI. I Nr.42, S.633. 이 법률은 Artikel 2 des Gesetzes vom 16. Oktober 1992(BGBI. I S. 1758)에 의해 개정됨.

118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1권 분야별연구, 통일부 2010, p.697.

4. 형사법 분야

1) 형사법의 통일과 문제점

독일통일은 불가피하게 형사법의 통일적 규율과 통일적인 적용을 요구한다. 상이한 규범질서가 한 순간에 의문 없이 조정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형사법의 조정작업은 민사법의 조정작업보다 비교적 복잡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예상만큼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통일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형법 중 살인죄와 낙태죄의 계속 적용이 예정되었다. 나머지 형법은 통일과 동시에 폐지된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과거 연방헌법상 동독이 외국(Ausland)인가 아니면 내국(Inland)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내국이라면 연방형법이 과거의 동독지역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효의 문제, 복권과 보상의 문제, 정부 차원의 범죄(Regierungskriminalität), 장벽에서의 도망자 사살 행위 등이 문제가 되었다.

2) 희생자 구제

과거 동독형법에 의하여 희생된 자를 구제하는 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즉, 판결취소(Kassation), 복권(Rehabilitierung), 보상(Entschädigung) 등이다. 통일조약 제17조와 제18조가 이 문제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통일조약 제17조[119]는 정치적 동기에 입각한 형벌조치 또는 기타 법치국가 내지 헌법에 반하는 판결의 희생자가 되었던 모든 자에게 복권을 규정했으며, 일단은 과거 동독법원의 판결이 효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

[119] 제17조(정치인복권) 쌍방은 모든 정치범과 반법치국가적, 위헌적 불법재판의 희생자들이 된 사람들이 복권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즉각 마련할 것을 확인한다. SED 불법 정부 치하의 이 희생자들은 복권과 동시에 적절한 보상조치가 행해져야 한다.

발한 통일조약 제18조[120]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판결의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① 판결취소와 복권[121]

통일조약의 부속협정(1990년 9월 18일)은 1990년 9월 6일의 동독복권법을 수용하였고, 과거에 유명무실했던 유죄판결의 취소요건을 확장하고 있다. 먼저 인민각료회의가 복권법을 통하여 취소 절차를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유리하게 개혁하고, 통일조약은 이를 기한부 권리로 수용하였다. 복권과 판결 취소는 유사한 제도이기는 하나 서로 단일한 방향으로 활용될 필요는 없다. 어느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복권문제심사부와 판결취소사건심사부에 사건의 이송이 이루어진다.[122]

동독의 소송절차에서 형사판결의 취소 문제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해서 검찰총장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동안의 법개정을 통하여 취소 문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가능하게 되었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독형사소송법 제311조[123]가 기준이 된다. 이러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취소는 넓은 범위의 유죄판결과 관련되며, 취소 신청은 법률상 및 사실상의 이유가 구비되어

---

120 제18조(법원판결 효력의 지속) ①편입효력 발생 이전에 내려진 동독법원 판결은 제8조에 의거하여 발효된 법률이나 제9조에 의거하여 계속 유효한 법률의 적용에 따라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며 집행될 수 있다. 이 법률은 판결과 그 집행이 법치주의 원리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원용한다. 제17조는 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②동독 형사재판소에서는 판결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조약 부속서 I에 따라 법원의 종국판결의 파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된다.

121 취소와 복권은 Wolfgan Schulze, Die Aufhebung strafgericherlicher in der früheren DDR im Wege der Rehabilitierung und der Kasstion, DtZ 91. 2. 55 이하 참조.

122 복권법 제15조.

123 제311조 ① 취소대상은 형사사건의 기판력 있는 결정이다. ② 취소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취소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1. 판결이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기인하고, 2. 형벌선고 및 행위의 여타 법적 결과에 대한 선고에 있어서의 결정이 대체로 부당하거나 법치국가적 기준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야 한다.[124] 법원은 취소의 대상이 된 결정을 폐지, 변경, 재이송한다.[125] 일정한 경우에는 취소사건심사부가 판단한다.

복권절차는 정치적 문제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복권은 관련자의 도덕적·정치적 은사를 목적으로 한다.[126] 합헌적인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와 관련된 행위 때문에 형법상 처벌을 받은 자, 특히 이러한 요건하에서 국가보호 및 공안에 관한 죄(동독형법 제2장 및 제8장)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법규정에 반하여 동독을 떠났거나 떠나려 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복권된다.[127]

관련자 또는 유족이 이유를 갖추어 복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칙상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고 복권신청을 판단한다.[128]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원은 허용되며, 주정부 소재지 법원은 이러한 소원을 판단한다. 복권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판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아울러 취소된 범위 내에서 법적 효과도 제거된다.[129] 이 경우 지급한 벌금, 변호사 비용,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특별법[130]에 따라 인정되며, 반면에 구금자원호법(Häftlingshilfegesetz)을 준용하여 자유박탈의 불이익에 대한 사회적 조정금이 관련자에게 지급된다.[131]

복권법 제10조와 그와 일치하는 동독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르면, 복권과 판결취소의 신청은 복권법 발효 후 1992년 9월 18일까지 2년간의 기한 동안 동일하게 적용된다.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복권법 제2조 제3항을 언급하지

124 동독형사소송법 제314조.

125 동독형사소송법 제319조 및 제321조.

126 복권법 전문 및 제2조.

127 복권법 제3조.

128 복권법 제12조.

129 복권법 제4조.

130 복권법 제6조.

131 복권법 제7조.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르면, 법치국가에 반하는 처벌조치와 관련하여 관련된 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한 재산의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재산법이 적용된다.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재산법 제2조 제7항[132]에도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우선 종전의 유죄판결을 폐지한 후에 비로소 재산법상의 청구권이 인정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산법상의 규정이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판결 취소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피해보상

이미 앞서 복권과 판결 취소의 문제의 결과로 피해보상이 언급되었다. 1992년 기준으로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동독 주민들이 각각 법원에 복권과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133] 연방법무부는 1991년 7월에 관계법률안인 '불법청산법(Unrechtbereinigunsgesetz)'을 제출하였다. 법안에서의 요체는 보상액인데 구금기간 1월을 기준으로 모든 피해자가 300 DM을 보상받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50 DM 또는 300 DM이 추가된다. 이 보상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단순히 자유박탈이 가져온 피해의 보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배려의 문제까지 안고 들어가는 종합적인 법률이다. 통일부담금의 내역(통일예산) 중에도 구동독 체제의 희생자의 복권 및 보상비용으로 150억 DM이 책정되었다.

3) 시효의 문제

형법이 개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된다. 통일에 의해 동독형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연방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132 이 법은 법치국가에 반한 형벌, 질서벌, 행정법상의 결정의 폐지와 관련하여 다른 법규정에 근거한 반환문제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133 주독대사관, 통독 2주년 각 분야 통합현황('92.10.3), p.13.

물론 새로운 형법이 보다 가벼운 형법이라면 신형법이 적용될 것이다.[134] 동서독통일 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시효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에 관한 원칙조항은 형법시행법 제315조(동독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문제) 제1항 제1문이다. 이에 따르면, 편입 발효 전에 동독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2조가 적용된다. 형법 제2조(시적 적용)는 행위시법주의, 형 변경 시 유리한 형법적용 원칙, 한시법의 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독에서 저지른 범죄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독법에 따라 당연히 처벌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이 추론된다.[135] 그리고 동독법이 정한 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는 서독형법에 따라 판단되게 되는 것이다.[136] 이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형법이 무엇인가의 문제가 당연히 제기되는데 통일 이후 형법적용상 시효의 문제는 오히려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의 문제이다.

과거 나치 불법 치하에서의 일정한 박해조치가 처벌되지 않았던 것을 총통의 의사(총통의 의사는 초법률적 힘을 지님)와 관련시켜 시효정지 사유로 인정했음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동기에서 처벌되지 않았던 범죄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강하다.[137] 그러나 이러한 처벌 주장은 문제가 다분히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의 동독의 법집행과 법질서 형성문제에 있어서 동독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무엇이 보다 사회주의적 헌법에 맞는 법해석인가의 문제를 연방정부가 판단해 준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구체적인 소송에 있어서 총통의 의사와 유사한 당의 의사를 인과관계를 통하여

134 통일 이후 새로 추가된 형법시행법 제315조c는 형량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135 프랑크푸르트 OLG, 1991. 7. 10 결정(DtZ, 91년 p.416).

136 형법시행령 제315조의a.

137 연방법무 장관 킨켈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이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았던 사건과 일반적인 사건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구동독지역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연방법무 장관의 입장. DtZ, 91. 11).

확인하는 일도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138]

4) 정부범죄의 문제

형사법의 적용문제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이른바 정부 차원의 범죄이다. 정부범죄(Regierungskriminalität)라는 죄가 형법상의 범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요는 동독 정부 조직, 슈타지 조직에 관하여 서독형법 제129조(범죄단체조직)를 적용하는 문제이다.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상 동독에서 이러한 단체의 조직은 법적으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과거의 동독 정치인을 처벌할 의향이 확고부동하다면, 법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형법 제129조 또는 제129조의a는 외국에 그 조직의 본부가 있다 하더라도 내국(서독)에 그러한 조직의 방계조직 또는 동맹조직이 있다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면 구동독은 서독에 대하여 외국인가? 연방헌법재판소[139]는 이 문제에 대하여 외국(Ausland)도 내국(Inland)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단 동독이 외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연방헌법상 영토조항과 관련해서 서독 내에 일부조직 또는 동맹조직이 있을 때에만 범죄로서 가능하다.[140] 그러나 이러한 조직이 서독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 우세하였다. 설사 그러한 일부 조직이 서독 내에 있다 하더라도 또한 물론 동독의 정부조직 또는 이른바 슈타지 조직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사정을 전제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조직행위 자체를 범죄행위로 단정한다면 통일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정치적 판단을 전복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138 Chr.Krehl,Die Verjährung der in der ehemaligen DDR begangenen Straftaten, DtZ 92. 1. p.13 이하.

139 BvefGE 36,1(17), NJW 1973.1539.

140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Chr. Krehl 형법 제129조는 구동독에서의 이른바 정부범죄의 처벌요건인가?, DtZ 92.4, p.113 이하; Widmaier,NJW 1990, p.3137; Vorbaum, Str Vert 1991, p.179.

5) 인도에 반한 죄 및 정치범 문제

국경보호법에 의하여 국경수비대에게 장벽 보호에 관한 일정한 수비책무가 주어졌다. 사살 권한이 법정화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안보회의 결정(1974년 5월 3일)에서 사살이 명령되었다. 그리하여 장벽 사살이 정상적인 국경수비 업무로 포함되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총을 발사한 자도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문제는 국가안보회의 결정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살인교사(이른바 연쇄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미 에리히 호네커, 에리히 밀케, 빌리 슈토프, 하인츠 케슬러 등이 장벽사살과 관련하여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장벽 사살이 당시 구동독 형법상의 범죄행위였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호네커와 밀케 일당이 모두 자기 나라 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 형법과 마찬가지로 동독의 형법 역시 월경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고, 외국의 국경수비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국경수비를 위하여 총기 사용도 인정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이러한 국경통제 행위는 과거 동독헌법상 국외이주권이나 유엔 헌장상의 망명권 조항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오로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통제조치를 가했으므로 단순히 장벽살해의 교사자가 아니라 행위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이는 도덕적 책임에 관한 주장일 수는 있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권력의 남용(베를린 장벽에서 있었던 사살)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이 기본법 제103조 2항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본법 제103조 2항에서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 시점에서 충분한 확정성을 가지고 법적 구성 요건상으로 형사처벌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에만 그 처벌을 허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 헌법 규정은 행위시점 당시의 법적



으로 가해지는 처벌보다 더 높은 형량의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상 원칙은 행위 시점에서 입법자가 가벌성과 형량을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행위만을 형사처벌 행위로 국가가 소추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책임하에 행동할 수 있다.

기본법 제103조 2항은 행위의 불법 내용에 대한 평가를 행위자에게 불리하도록 사후에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시에 법적으로 규정된 정당한 사유는 정당화 사유가 형사 소송의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물론 기본법 제103조 제2항은 통상적으로 행위가 기본법을 바탕으로 형성된 독일연방공화국의 실체적 형법의 적용 범위 내에서 행해지며,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권에 구속되는 입법 기관이 제정한 형법은 기본법 제103조 제2항에 의해 보장되는 절대적이고 엄격한 신뢰 보호에 대한 근거가 된다. 구동독에서 행해진 범죄 행위의 판단에 있어서는 동독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통일 후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위의 사실은 더 이상 무제한적으로 유효하지는 않다. 만약 다른 한 국가가 성문화된 규범을 넘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용이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중대한 범죄적 불법행위의 영역에 대해 정당화 사유에 의해서 가벌성을 배제시킨다면 특별한 신뢰의 근거는 사라진다. 그렇다면 기본법 제103조 제2항에 의한 엄격한 신뢰 보호는 철회되어야만 한다. 과거에는 다른 국가의 국민이지만 이제는 독일연방공화국의 형벌권하에 놓여 있는 국민에게는 이러한 정당화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 시점에서 행위자에게 유효한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신뢰는 보장된다.

원칙론으로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동독헌법의 해석과 집행에 관한 권한

을 바로 동독 정부가 아닌 서독 정부가 행사한다는 점이다.

한편, 인도에 반한 범죄의 장이 동독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장벽사살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라드브루흐의 '법률적 불법과 초실정법적 법'이라는 글이 과거 나치 전범자의 처벌근거를 이미 제공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나치 전범자 처벌에 관하여 이러한 원칙을 누차 확인해 주었다. "바로 독일 나치 정권으로부터 입법권자라 할지라도 불법을 감행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즉, 그와 같은 역사적 재고가 필요한 사실적 법률적용을 무방비 상태로 대처할 수 없으며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건처리를 위한 실정법의 적용 시 나타나는 원칙(법적 안정성의 원칙)보다 더 높은 실질적인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141] 그러나 이런 처벌주장에 대하여 당시에도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문제는 현재의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졌던 유대인 집단학살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점이었다.

동독의 각료들이 이른바 장벽사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물론 국가안보회의의 결정과 구체적인 장벽사살과의 인과관계문제의 입증이 용이한 일은 아니었다.

5. 노동법 분야

독일통일 과정에서 동독 노총은 1990년 9월 13일 자진 해산하고 서독 노조와 1990년 11월 1일 통합하였다. 동서독 노조의 통합을 위하여 독일 노총은 서독지역에 국한된 독일노총규약의 적용범위를 변경하여 통합의 법적 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노동통합 방법으로는 조합법에 노조 간 합병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독 노조를 해산하고 노조원들이 서독의 개별 노조에 가입하게

141 1957년도 판결(BVerfG 3, 232).

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동독의 기존 노동관계는 서독 노조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동독지역의 신규 노조가입자들에게는 서독 노조의 규약이 적용되었다.[142]

구동독의 노동법은 헌법에 근거하여 노동의 사회성을 강조함으로써 노동조직 및 그 동원, 효율적 관리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었다.[143] 즉, 노동의 권리에 앞서는 노동 의무의 강조, 엄격한 노동규율의 준수 의무, 계획과업의 달성 의무, 국가표준노동정량의 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서독의 노동법은 사유재산제도를 전제로 한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노동력과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서면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회적 약자로서의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강행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제한하거나, 근로조건의 향상과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과 투쟁을 보장하고 있다.

상호 이질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동·서독이 사회적 경제질서로 통일되자 노동법 분야도 이에 상응하여 법 조정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리를 지향하는 자유로운 국가질서, 경제질서 및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노동법 영역도 자유로운 경제적 활동 및 직업활동과 시장관리와 사회보장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이 조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노동법이 본질적이다. 그래서 이미 화폐, 경제 및 사회동맹의 창설을 위한 국가조약은 동독에서 노동법질서의 원칙으로 단결권, 임금

142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독일의 분야별 실태연구, 1992.5, p.32.

143 구동독헌법 제24조 제1항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인민은 노동할 권리를 갖는다. 각자는 직장과 사회적 요청 및 개인 자질에 적합하게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남자와 여자, 성인과 소년은 동등한 노동량에 대해서는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제24조 제6항에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은 노동 능력이 있는 시민에 대하여 명예로운 의무이다. 노동의 권리와 의무는 동일한 것이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자주 결정권, 노동쟁의권, 노동협약, 해고 보호 등을 규정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서독의 법에 의하여 실현하도록 하여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지향된 노동법 질서의 실현을 도모했다.[144] 국가조약의 규정 체계는 개별 연방노동법의 자동적 집행과 부분적으로 협력하여 양독 간의 노동법 조정을 상당 부분 촉진했다. 그러나 노동법상 본질적으로 중요한 규정이 동독에서 완벽하고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편입의 발효와 함께 원칙적으로 서독의 노동법이 편입지역에 적용되어, 구 동독의 법은 사실상 실효되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조약 부속문서 제8장 4항 A 제3절에서는 편입지역에 대한 연방법 적용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편입지역과 기존 연방지역의 노동법에는 당분간 이중적 구조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통일조약 제30조 제1항은 단순한 지역의 통일을 넘어서 통일독일의 입법기관에게 근로계약법, 근로시간법 및 여성근로자특별보호법을 가능한 한 조속히 새로 통일적으로 제정·편찬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외에도 EC법에 부합하는 공법상의 근로보호법이 새로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법의 새로운 제정이 시도되었다.

이하에서는 예외적 법과 경과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개별적 근로관계법

통일조약은 편입지역에도 민법이 적용된다고 통일조약의 민법시행법에서 규정했다. 민법시행법 제230조 이하는 편입의 날짜에 성립된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시행법 제232조 제5항에서 장래에 대하여 민법의 적용을 예정하는 일시적 충돌법을 두고 있다.

특정 근로자집단에 대해 일반적 근로계약법의 문제를 각기 다르게 규율

144 Thomas Pfeiffer, Arbeitsrecht nach dem Einigungsvertrag, in : DtZ. 1990. 9. S. 325f.

하는 것은 평등협상 원칙의 관점에서 법정책적으로, 부분적으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조약은 법률적인 노동법을 제한하는 데 우호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다.

우선 민법시행법 제230조 제1항은 민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중에서 민법 제622조 근로관계에서 해고통지 기한의 적용을 배제했다. 이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는 근로자에 대한 단기 해고통지 기간을 민법 제622조 제2항에서 규정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법 위반이라고 선언했다.[145]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의 해고통지보호법도 편입지역에 이전되지 않았고, 그 대신에 동독노동법 제55조의 해고통지 기간이 효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도 연방헌법재판소가 설정한 유예기간인 1993년 6월 30일까지는 폐지되어야 했다.[146]

파시즘과 파시즘의 추종자에게 반대한 자에 대한 동독노동법 제58조, 제59조의 특별해고 보호는 무기한 효력을 지속하였다.[147]

특별해고 보호, 출산휴가 및 부모에 대한 근로 장소 보장을 위한 경과규정은 특히 연방법의 사회계약적인 도입의 목적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계속 적용된다.[148] 이 시기 전에 출생한 자에게는 동독법이 부분적으로 계속 적용된다. 개별적으로 특별해고 보호와 근로장소 보장은 1991년 1월 1일부터 아동의 출생이 1990년 12월 31일 후인 경우에는 모성보호법과 연방교육법에 따른다.[149] 그 전에 출생하면 보다 엄격한 동독노동법이 계속 적용된다. 특히, 이러한 점에서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실질부모에 대하여 동독노동법 제246조가 규정하고 있는 3년까지의 근로장소 보장이 기준이 된다.[150] 단독으로 자녀를 교육시키는 근로자에 대한 3년 해고 보

145 BVerfG, NJW 1990, S. 2246f.

146 BVerfG, NJW 1990, S. 2249f.

147 통일조약 부속문서 II, 제8장 사항 A 제3절 제2호와 제1호(a).

148 Thomas Pferffer, a. a. O. S. 326.

149 통일조약 부속문서 I, 제10장 사항 A 제3절 제1호 및 사항 H 제3절 제2호.

150 통일조약 부속문서 II, 제10장 사항 H 제3절 제1호.

호는 그 아동이 1992년 11월 전에 출생했다면 계속 적용된다.[151] 연방법의 발효에 따라 임산부와 수유 중인 자를 위한 동독의 보호규정은 199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152] 출생 시까지 출산휴가에 대한 규정도 1991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의 산모에 대해 적용된다.[153] 이중적 부담을 지는 부인,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보호의 필요가 있는 혼인 중인 부인이 있는 자에 대한 월별 가사 노동일에 관한 규정도 199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154] 자식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야할 때의 임의적 시간을 보장하는 구동독법(동독 노동법 제186조)도 199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이러한 임의적 시간에 대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한 국가적 또는 경제적 지도 기능을 위하여 예정된 특별한 형식의 초빙에 의한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파견의 특별한 종료형식이 적용된다. 선출에 의한 근무관계에 대해서도 이 규정(동독 노동법 제66조)이 적용된다.[155]

연방휴가법은 최소 20일 이상의 근무일수에 주 5일 근무에 기초하여 연례휴가가 부여되는 기준에 따라 편입지역에서도 효력을 갖는다. 1991년 6월 30일까지의 과도기에 대해서는 특정한 근로자 집단(교대제 근로자, 중장애자, 시각 장애인 등)에 대해 다른 동독법령에서 규정된 이를 초과하는 휴가가 계약상 합의된 것으로 계속 효력을 갖는다.

근로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노동법 판결의 예측 불가능성과 연방법관법의 현지 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통일조약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관계 동독법 규정의 계속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위험한 근로에서의 경과실

151 통일조약 부속문서 II, 제8장 사항 A 제3절 제1호(b).

152 통일조약 부속문서 II, 제10장 사항 A 제3절 제1호.

153 통일조약 부속문서 II, 제8장 사항 A 제3절 제4호.

154 통일조약 부속문서 II, 사항 C 제3절 제1호(c).

155 통일조약 부속문서 II, 제8장 사항 A 제3절 제1호(c).

에 대한 책임면제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한에서 연방법보다 엄격하나, 한편 이 규정은 위임된 대상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책임을 1월 내지 3개월 간의 임금에 한정했다. 사용주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효력 유지가 규정되어 있다.[156]

기업연금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편입지역에 발효되었다. 그리고 기업사원보호법 제1조 내지 제18조의 보호규정은 1991년 12월 31일 이후 행해진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체계는 철저히 관철되었다. 왜냐하면, 기업사원보호법 제18조 제6항에 따른 사후보험도 배제되기 때문이다. 서독에 기업기본법의 발효를 위해 예상된 기업사원보험법 제26조 내지 제36조의 경과규정은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157]

2) 집단적 근로관계법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 간의 구별은 1991년 2월 31일까지 편입지역에 대한 기업기본법 제6조에 의해 계속 유지되었다.[158] 이 규정은 국가조약의 결과 편입지역에 기업기본법을 도입할 때 이미 예상되었으며 원칙적으로 편입지역에서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사원보험법 제6조에 상응한다.

경영협의회를 구성할 의무가 있는 기업에서 1990년 10월 30일 이전에 민주적 원칙에 따라 비밀투표로 선출된 경영협의회 회원은 1991년 6월 31일까지 그 직을 보유하며 그때까지 법률상의 경영협의회 업무를 수행한다.

근로자의 공동결정권의 도입에 대해서는 편입지역에서도 1952년 기업기본법, 공동결정법, 공업상의 공동결정법, 광업상 공동결정법 보충법이 적용된다. 과거의 콤비나트나 인민소유 기업에 관련되는 한, 회사법적 차원에서 1990년 6월 30일까지 통일조약 제25조의 기준에 따라 동독의 신탁공사법에 따라

156 통일조약 부속문서 II, 제8장 사항 A 제3절 제1호(g).

157 통일조약 부속문서 II, 제8장 사항 A 제3절 제16호.

158 통일조약 부속문서 II, 제8장 사항 A 제3절 제12호(a).

주식회사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동결정법의 적용영역에 공동결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공동결정법 제23조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통일조약 부속문서 I은 광업상의 공동결정법 제1조에 따른 공동결정의 적용영역에 대해서도 잘 알려진 연방법에 대한 예외규정을 규정하고 있다.[159]

임금계약법의 발효에 대해서는 국가조약에 따라 동독에 의한 임금계약법의 도입의 영역에서 이미 예상된 1990년 7월 1일 전부터 구동독법에 따른 개괄적 집단계약에 대한 경과규정에 이것이 존재해 왔다. 이들 개괄적 집단계약은 과거 동독노동법 제54조에 따라 등록되고 새로 체결된 임금계약에 의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이에 대하여 1990년 7월 1일 전에 체결된 합리화 보호협정은 후급효 없이 1990년 12월 31일부터 실효한다. 다만, 이때까지 당해 전제를 충족함으로써 획득된 권리와 청구는 계속 유지된다.

3) 공법상의 근로보호

사회적 근로보호의 영역에서의 규정은 주로 노동시간법과 관련된다. 임금계약적인 근로시간 규칙이 없기 때문에 연방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경색될 수 있기 때문에 편입지역에서는 법규정에 의해 예정된 주간근로 시간의 제한이 1991년 6월 30일까지 계약상 합의된 근로시간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편입을 계기로 하여 계약에 의해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배제되어 있다.[160] 1993년 1월 1일부터 편입지역에서도 일요일과 휴일의 근로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이 시기까지 일요일 및 휴일의 근로를 규정하고 있는 동독 노동법의 일반조항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161] 또 통일조약은 경제정책적 및 고용정책적 근거에서 부녀자에 대한 엄격한 근로시간 제한을 편입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 원

159 통일조약 부속문서 I, 제8장 사항 A 제3절 제11호.

160 통일조약 부속문서 I, 제8장 사항 A 제3절 제7호(c) (d).

161 통일조약 부속문서 II, 제8장 사항 C 제3절.



칙을 따르고 있다.

기술적 근로보호의 영역에 대하여는 일면 필요한 행정적 구조의 결핍과 타면 양독 간의 기술적 기준의 차이에 근거하는 경과규정이 있다. 이 경과규정에는 예컨대 통일독일의 기준이 발효할 때까지의 경과기간에 관한 규정과 감독업무 또는 검사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이 있다.[162]

[162] 통일조약 부속문서 II, 제8장 사항 B.

제5장

결론

법적으로 본다면 독일의 통일방법은 서독 기본법 제23조와 제146조에 따른 합병 형식의 통일이었다. 즉, 독일은 구체적인 법조문에 따라 통일을 이루었다. 서독 기본법 제23조는 '기본법의 효력범위(Geltungsbereich des Grundgesetzes)'를 정하고 있었다. 즉, 서독 기본법의 적용범위로 당시 서독의 주를 나열하고, "독일의 다른 부분에는 그들의 편입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in anderen Teilen Deutschlands ist es nach deren Beitritt in Kraft zu setzen)"라고 명시하고 있다.[163]

그리고 서독 기본법 제146조 '기본법의 효력정지(Ende der Gueltigkeit des Grundgesetzes)' 조항에는 "독일 민족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새로운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날, 이 기본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164] 즉, 서독 기본법 제23조와 제146조에 근거한 동독의 서독연방 귀속방식이란 동독의 집권당이 적당한 시기에 개헌 또는 의회의 결의를 통하여 서독연방에 귀속하는 결정을 내리고, 양 독일 국민들의 총선에 의해서 새 정부가 구성되고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면 독일은 통일이 된다는 것이었다.[165]

---

163 Verwaltungs Handbuch, 6. Auflage, DGB Landesbezirk Baden-Wurttemberg, 1975, p.11.

164 Ibid., p.52.

165 정용길,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동서독 관계와 남북 관계에의 시사점, 『저스티스』 통권 제134-2호



또한 독일통일은 조약과 협정에 의한 통일이었다. 1990년 초부터 동서독 간에 통일논의가 본격화되어, 1990년 5월 국가조약을 시작으로 선거조약(Wahlvertrag)과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그리고 이어서 2+4 협정이 체결되었다.

독일이 국가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구한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한 법규범적, 제도적 장치들과 통일 이후 상호 이질적인 법체계를 통합시키는 법제도적 장치들을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독일의 통일법제를 고찰하여 향후 남북이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법제와 통일을 이룩하였을 때 두 체제를 법적으로 결합시켜 통일국가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통합법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관계정상화 및 교류·협력의 개시·확대를 위한 법제도를 말하고, 후자는 두 국가의 이질적인 법제도를 한 국가의 동질적인 법제도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과도적 법규정들을 총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당면한 법적과제에 통일독일의 법적 경험을 원용할 때에도 독일 분단의 내외적 근거와 우리의 그것이 아주 다르므로 그 원용의 적합성을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서독이 끊임없이 상호 정치적 환경이나 이념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관계를 설정하고 운용하였다는 사실은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며 궁극적으로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과 단결을 성취하려는 우리에게 중요한 법적 교훈이 될 수 있다.

독일통일의 정당성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일련의 조정을 통하여 해방과 통합의 공간에서 새로운 법치주의를 확립해 가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국가조약 및 통일조약을 통하여 통합법제의 대강을 제시하였다. 국가조약은 정치적·사실적 계기에서 판단하면 양 체계를 결합시키는 합

(2013.2), p.473.

의문건에 불과하지만, 규범적 측면에서 평가하면 종래의 문제해결 방식이었던 전쟁 등의 비평화적 수단을 기각하고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국가조약이 단순히 동·서독 간의 통일의 정치적 담판을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반적 국제법 원칙으로 자리 잡은 평화적 변경의 원칙을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인류의 규범의식의 발전이 바로 오늘날 유혈사태를 야기하지 않고서도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원천인 것이다.

이 두 개의 조약은 하나의 국가·제도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본적으로는 법제를 동화시키고 동서독의 법체계상 이질적인 것이나 동화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유예기간을 두거나 아니면 통합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입법적 조정작업 등을 담고 있다. 이 두 개의 국가조약은 본문의 조문은 고작 100여 개에 달하지만 각 조약에 첨부된 방대한 양의 부속서를 통하여 구체적 사항까지 입법적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독일통일 과정에서 서독은 분단 직후부터 한 번도 교류가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동독의 법제연구를 계속해 와 통합 당시 동독법제를 분석하여 통일독일의 법령을 정비한 분량이 법조문만으로도 무려 1,000페이지 이상에 달하는 대법전을 만들어 냈다.

현실적으로 법제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질적인 양 법제의 조화점을 발견하는 것 못지않게 양 법제의 이질적인 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차이점을 명백하게 확인하는 것이 법제통일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법제 일반에 대한 연구와 동독 법제, 북한 법제의 심도 있는 비교·분석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남북한의 통합 법제 연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통합 법제의 연구는 많은 시간적 노력이 수반되는 작업인 동시에 방대한 양의 분야별 법제통합 작업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남북한 법제통일을 위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축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독일통일 총서 27

동독의 통일대비 입법 분야 관련 정책문서



정책문서를 통해 본 과도기 동독 개혁정부의 통일/가입 준비

(1989년 11월 9일~1990년 10월 2일 사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입법 개혁)

이은정, 베르너 페니히
(독일 베를린 자유대)



들어가며

1980년대 동독 사회는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개혁을 원했던 그룹은 동독의 지배세력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었다고 주장했다. 해외 부채가 증가했고, 생산성이 감소했으며, 5월에 실시된 지방선거 이후에는 선거 조작에 대한 비난도 거세졌다. 선거 결과의 조작은 동독의 지배세력이 개혁 의지가 없다는 분명한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요소들은 1989년 여름 이후 많은 수의 동독 주민들이 국경이 개방된 동유럽 이웃국가를 통해 동독을 떠나도록 만든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그와 함께 동독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것은 동독을 새로운 사회로 변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적지 않은 수의 동독 주민들은 급격한 체제 개혁이 가져올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9년 가을까지도 개혁을 거부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고집하는 지배세력인 사회주의통일당(SED: 이하 사통당) 당 지도부를 그들이 실제로 지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에리히 호네커에서 에곤 크렌츠로 지도부를 교체함으로써 사통당은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였지만, 그를 통해서 총체적인 난국에 부딪힌 동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1989년 가을, 사통당이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라이프치히에서 월요일 촛불행진으로 시작된 대규모 시위를 통해서 동독 시민들은 그동안 두려워했던 사통당의 통제기구와 억압기구가 힘을 잃었음을 체감했다. 그 결과 동독을 떠날 의사를 가지고 있던 주민들은

국경을 폐쇄한다는 사통당 지도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로 향했다. 체코스로바키아의 수도 프라하에 있는 서독대사관 건물에 들어간 동독 주민들을 서독으로 이동시키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동독 정부가 1989년 11월 9일 여행자유화조치를 결정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여행자유화조치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동독 정부의 대변인 귄터 샤보브스키가 이 조치는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해 버렸다. 그 결과 동독의 국경수비대 요원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베를린의 국경통과소에 모여든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이 과정에서 국경수비대가 모여든 시민들을 해산하기 위해 발포하지 않았던 이유는 1989년 10월 초 동독 인민군이 시위하는 시민대중을 향해 발포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인민의 군대'가 인민을 향해 발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현장 지휘관들 또한 1989년 동독의 평화혁명을 만든 주인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상징되는 평화혁명과 함께 시작된 동독의 개혁정책의 진행과정은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에 의한 새로운 법률의 도입과정을 통해 잘 살펴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동독 과도개혁 1기라고 할 수 있는 한스 모드로우 정부와 과도개혁 2기인 로타 드 메지에르 정부하에서 도입된 법률을 통해 1989년 가을부터 1990년 가을까지 동독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한스 모드로우 정부와 로타 드 메지에르 정부의 기본적인 구성과 정책결정을 위한 조건을 설명한 후에 두 정부의 개혁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동독의 법률관보와 법률관보 별쇄본을 통해 발표된 모든 법률, 법령, 시행령을 바탕으로 최고인민회의 입법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1990년 3월 18일에 있었던 자유총선거에서 신속한 통일을 약속한 로타 드 메지에르가 이끄는 '민주주의 지금' 선거연합이 승리한 이후 동독의 최고인민회의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고, 기존의 법률을 조정하거나 서독의 법률을 그대로 수용해서, 동독 영토에 새로 구성된 '주'

단위의 5개의 행정구역이 서독, 즉 독일연방공국의 일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법적인 준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성격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과도개혁 정부의 개혁 입법을 위한 정치적 기본 조건

1989년 가을부터 1990년 가을 사이 11개월 동안은 동독에서는 내적, 외적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연속해서 발생한 시기였다. 빠른 속도로 발생하는 사건들 중에 많은 것들은 동독뿐만 아니라 독일 전체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의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운신의 폭이 커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소련이 독일통일에 동의한 것, 또는 2+4 회담을 통해 독일국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연합국에 의해 박탈당했던 완전한 주권을 회복한 것도 그런 사건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과 서독의 정책 결정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지극히 제한하고, 다른 대안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정책 결정의 방향과 템포를 규정해 놓는 사건들도 있었다. 동독이 주 단위의 새로운 행정구역을 구축해서 서독의 기본법 23조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가입한다는 결정과 화폐통합과 같은 결정이 바로 그런 사례이다. 나아가 동독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대거 동독을 떠나는 문제와 신속한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많은 기대로 인해 동서독의 정책 결정자들은 그에 부응하기 위해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는 “장벽이 무너진 후 매일 이삼천 명이 동독을 떠

낫다"[1]고 회상한다. 1989년에 동독을 떠난 주민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동독을 떠난 사람의 규모가 10만 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2]

표 2-1〉 1989년도 동독 주민의 서독 이주

인원	이전 유형	1989년
46,343	동독 주민들의 합법적인 서독 이주	1월-6월
25,000	동독 주민들의 헝가리를 경유한 서독 이주	1월-9월
40,000	동독 주민들의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을 경유한 서독 이주	1월-10월
15,000	바이에른주로 도주	11월

1989년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작성.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 후에 동독을 떠난 사람들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 그리고 이주 동기에 관한 경험적인 조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이 대부분 비판적 시민세력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동독의 반체제 세력은 동독 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본질적인 개혁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서구 자본주의는 그들이 추구하는 해결책이 아니었다. 사실 장벽 개방 직후 동독 사회에는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동독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개혁그룹과 통일을 통해 서독과 같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룹 그리고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그룹 등 다양한 집단이 존재했다. 1989년 9월 이후 매주 월요일에 열

1 참고: de Maizière, Lothar: Ich will, dass meine Kinder nicht mehr lügen müssen. Meine Geschichte der deutschen Einheit. Freiburg, Basel, Wien 2010: Herder Verlag, S. 246.

2 1989년 여름을 기점으로 10월에 절정에 달했던 동독 주민들의 대규모 이탈 및 이주는 드 메지에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에도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몇 명이 서독으로 이주했는지 정확한 통계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90년 7월 1일 화폐통합이 실시된 이후에도 이주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독 주민들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한 것 그 자체가 동독 체제의 존립 자체를 직접 위협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1988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았던 국가 중 하나였던 동독에게 근로 가능 인구 중 10%가 훨씬 넘는 인원이 1년 또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히 감속하는 것은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였다. 과도개혁기 동독 정부도 이 문제로 인해 추가적으로 압박을 받았다.

린 체제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행진을 하던 시민들이 외친 "우리가 국민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슬로건이 11월 9일 장벽 붕괴 이후 "우리는 한 민족이다(Wir sind ein Volk)"라는 슬로건으로 전환된 이유는 시위에 참가한 시민집단이 변했기 때문이었다. 장벽 붕괴 이전에 체제 개혁을 요구하던 시민들은 사통당의 지배세력과 비밀경찰이 무력을 사용해 시위를 진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거리로 나가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우리라고 외친 용기있는 사람들이었다. 11월 9일 이후에는 국가적 폭력이 강압적으로 시위대를 공격할 위협은 없었다. 11월 18일에는 사통당의 지도부 자체가 개혁 성향을 가진 한스 모드로우를 중심으로 완전히 개편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거리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고 외치며 통일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동독에서 진행된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48%만이 통일에 찬성했다고 한다. 그런데 1990년 2월에 진행된 여론조사에 응답한 동독 주민의 80%가 통일을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월 사이에 동독의 여론이 그만큼 급격하게 변한 것이다.

과도개혁 정부는 이런 급격한 여론의 변화를 감안해야만 했다. 변혁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감은 개혁정책에 대한 압박이면서 동시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정부는 개혁입법 작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개혁입법 작업을 통한 새로운 법률의 도입 과정을 분석해 보면 1989년 가을부터 1990년 여름 사이 동독 체제의 변혁을 규정한 정치적 변혁 절차를 알 수 있다. 통일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기 이전에 도입된 법률과 1990년 3월 18일 자유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새로운 최고인민회의가 통과시킨 법률들이 모두 체제 개혁이 그 목표이지만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총선거 이전에 원탁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혁입법 작업을 통해 우리는 동독의 반체제 인사들이 어떤 이상사회를 꿈꾸었는지 볼 수 있다. 반면에 3월 18일 자유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최고인민회의는 통일준비를 위한 구체적

인 작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대내외 정치적으로 제한된 결정권만 행사할 수 있었다.

제1절 1990년 초 소련 지도부의 독일정책 기본 입장 확립

대외 정치적으로 볼 때 동독 정부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소련의 독일정책이었다. 1989년 장벽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우방국가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혁이 시작된 동독 사회에서 독일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제기되었지만 소련이 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1990년 1월 25일에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그의 외교정책 자문들은 독일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소련의 대독일정책의 기본입장을 정리했다. 동독의 한스 모드로우 총리(1월 30일), 베이커 미국 외무 장관(2월 7일),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2월 10/11일) 등의 소련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독일정책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점검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다. 1월 25일의 회의에서 소련 정부의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동독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며, 소련은 동독의 누구와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
- 동독은 여러 영역에서 더 이상 행위 능력이 없음
- 사회주의통일당이 더 이상 존속될 수 없음
- 한스 모드로우는 과도기적 인물일 뿐임
-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과 사민당이 중요 행위자임

당시 소련 지도부는 이전만큼 동독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의지가 없었으며, 또한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것이다. 소련 지도부는 발전은 우선적으로 독일 내부 사안이라고 간주했다. 동독의 내부문제라고 규정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소련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 독일통일, 즉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더 이상 불가피함
- 독일 민족이 통일을 원하고 있으므로 소련은 이를 저지해선 안 됨
- 그러나 독일의 통일과정에는 영향력을 행사해야 함
- 통일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기본법 제23조를 따르지 않음)
- 통일된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국이 되어서는 안 됨
- 연합군 승전국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함
- 독일의 항복(1945년 5월)과 동독의 설립(1949년 10월 7일) 사이에 소련이 내린 결정은 취소되어선 안 됨
- 소련군의 동독 주둔은 압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소련이 1990년 연초에 정한 대독일정책 기본 입장을 모두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특히 통일된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의 회원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통일된 독일은 나토 회원국으로 남았다.

제2절 동독의 정치지형 변화 및 독일정책에 관한 서독 정부의 기본 원칙

과도개혁기 동안 동독의 정치세력은 서독의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기존의 위성정당을 비롯해 급속하게 새로운 정당이 창당되고 여러 정당이 서로 동맹하기도 했다. 특히 1990년 3월 18일에 자유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정치세력 간의 이합집산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향후 독일의 정치적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독일을 위한 동맹(Allianz für Deutschland)'이 1990년 2월 5일에 설립되었다. 이 동맹은 동독의 위성정당 중의 하나였던 기민당(CDU)과 새로 만들어진 독일사회연합(DSU), 민주혁신당(DA)이 함께 만든 것이다. 이 동맹의 설립 행사에 서독 기



민당의 대표인 헬무트 콜 수상이 직접 참석했다. 이 동맹이 내세운 모토는 서독의 기본법 23조에 기반한 신속한 통일의 실현이었다. 그들은 동시에 통일된 독일이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반대했다.

헬무트 콜 수상은 '독일을 위한 동맹'의 설립 하루 뒤인 2월 6일에 화폐통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1990년 2월 7일에는 연방정부 내각의 결정에 따라 헬무트 콜 수상이 의장직을 맡게 된 '독일통일 내각위원회'의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를 통해 동독과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계획을 설명했다. 2월 12일에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가 서독의 수도 본을 방문했을 때 화폐통합과 관련된 공식적인 협상원칙에 관해 합의했다.

콜 수상이 바로 이 시기에 화폐통합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이유는 물론 동독의 선거전에서 자신과 서독의 기민당이 지지하는 '독일을 위한 동맹'을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통일 과정이 선거전략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헬무트 콜 수상과 서독 기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독일을 위한 동맹'이 3월 18일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향후 동독의 정치발전의 방향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준비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것은 동독 정부와 최고인민회의가 체제의 정치적 민주화 작업 외에, 서독식 시장경제 체제 수용을 위한 준비 및 서독법으로의 조정 또는 완전한 수용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래 〈표 2-2〉는 동독의 과도개혁기에 정치발전의 방향을 제한한 대내외 정치적 기본 조건의 변화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2–2〉 변화된 기본조건

날짜	영향 요소	주요 행위자
1990.01.09	공산권의 경제기구인 코메콘, 즉 경제상호원조회의(RGW)가 자유롭게 태환할 수 있는 통화의 거래와 동독에 상당한 타격을 준 세계시장 가격 합의. 소련 에너지 기업의 공급량 축소 및 공급가격 인상	경제상호원조회의 구성원–특히 소련(자국의 내수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행동함)
1990.01.25	소련 지도부는 독일통일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통일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만, 통일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음	마하일 고르바초프 및 고문
1990.02.05	'독일을 위한 동맹': 독일의 통일을 추구했던 동독 정당의 선거동맹	동독 및 서독 당 지도부, 콜 연방총리
1990.02.06	화폐통합 제안, 즉 동독의 서독 마르크화 도입	콜 연방총리
1990.02.07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콜 연방총리
1990.02	'2+4 조약' 제안(포괄적인 평화조약을 위한 대체 조약)	승전 4개국, 동독 정부, 서독 정부
1990.03.18	동독 선거	동독 유권자
1990.07.01	화폐 · 경제 · 사회통합 발효. 화폐통합으로 인해 동독 생산품의 가격이 갑자기 두 배로 상승함으로써 수출 붕괴가 나타남 소비자들이 서독 재화를 선호하면서 내수시장에서 특정 재화의 부족이 나타나고 부분적 과잉생산이 나타남 민주화 가속화, 서독 체제에 맞춘 체제 이전이 시작됨	동독 정부, 서독 정부 경제상호원조회의(RGW/–COMECON) 동독 시민, 즉 시민들의 소비행태, 신속한 통일과 생활수준 개선에 대한 바람

제2장

동독 과도개혁기 입법 행위자: 정부와 최고인민회의

과도개혁기 동독 정부와 최고인민회의의 과제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1990년 3월 18일 자유총선거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그에 따라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동독의 대표가 서독의 대표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 파트너로서 독일통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동독의 대표는 독일통일에 대한 동서독 간의 협상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서독과 함께 '2+4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대 승전연합국을 상대했다. 국내적으로는 독일통일을 위해 서독의 체제와 호환이 가능했거나 일치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해야만 했다. 과도개혁기 동독 정부와 최고인민회의는 전례가 없는 조건 속에서 입법업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제1절 개혁정부 1기와 2기

1989년 11월 18일부터 1990년 4월 12일까지 집권했던 한스 모드로우 정부에는 모드로우 총리 외에 24명의 장관 및 계획위원회 위원장 1명, 경제위원회 위원장 1명(장관급)이 내각을 구성했다. 이 중 16명이 사통당/민사당 당

원이었다. 1990년 2월 5일에 모드로우 총리는 야당 당원 및 협회 구성원 8명을 맡은 업무 분야가 없는 무임소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정부를 확장했고, 이 정부를 '민족적 책임을 지는 정부(Regierung der nationalen Verantwortung)'라고 칭했다.

한스 모드로우는 재임 중 지속적으로 동독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했다. 그는 동독 주민들이 그의 노력을 이해해 주고 서독 또한 그를 지원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가 추구한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물론 가능한 사회주의 업적을 보존하고, 동서독 간의 통일이 아니라 두 국가 간의 연합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계약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런 모든 개혁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서독으로부터 대규모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었다. 1990년 2월 12~13일 서독의 수도 본을 방문한 한스 모드로우 총리가 헬무트 콜 수상과의 만남에서 원탁회의 결정을 기반으로 100~150억 마르크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청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모드로우 총리는 이 지원금이 일종의 '연대분담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용 목적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이 지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 3월 18일의 최고인민회의 자유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던 헬무트 콜 수상은 이런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3월 18일 선거에서 로타 드 메지에르가 이끄는 '독일을 위한 동맹'이 승리함으로써 향후 동독 정부의 방향은 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어 구성된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정부(1990년 4월 12일~10월 2일)에는 총 32명의 장관이 포함되었다. 장관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이유는 연정을 구성했던 자유민주연합(BFD, Die Liberalen)과 사민당(SPD)이 각각 7월 24일 및 8월 20일부로 연정에서 탈퇴함으로써 일부 부처의 공석이 임시로 채워져야 했기 때문이다. 드 메지에르 정부에는 64명의 차관이 있었다. 그중에는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총리실 정무 차관 귄터 크라우제도 포함되었다. 그는 총리실 독일 정치국(Abteilung Deutschland

Politik)을 담당하면서, 통일조약 협상에 참가한 동독대표단 단장으로 서독 측 대표 볼프강 쇼이블레와 함께 통일조약 협상을 이끌었다.

로타 드 메지에르 정부의 정책 목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최초의 자유총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얻은 새로운 국가구조의 구축이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고 주 단위의 행정구역을 도입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둘째는 신속한 시일 내에 민주화를 실현하고 법치국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셋째는 서독의 기본법 23조에 따라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과 준비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었다.

표 2-3〉 동독 과도개혁 내각 1기, 2기 구성

한스 모드로우 정부 (1989년 11월 18일 – 1990년 4월 12일)		부처명/ 개혁 이후 명칭	로타 드 메지에르 정부 (1990년 4월 12일 – 1990년 10월 2일)		
이름	소속정당		이름	소속정당	차관
Hans Modrow	SED/PDS	총리실	Lothar de Maizière	CDU	Günther Krause
Christa Luft, Peter Moreth, Lothar de Maizière	SED/PDS, LDPD, CDU	부총리실	Peter-Michael Diestel	DSU 1990년 6월 30일 이후 무소속 1990년 8월 3일 이후: CDU	Peter Müller Eberhard Stief
Oskar Fischer	SED/PDS	외무부	Markus Meckel 1990년 8월 20일 사퇴 Lothar de Maizière 1990년 8월 20일 이후	SPD CDU	Hans-Jürgen Misselwitz
Lothar Ahrendt	SED/PDS	내무부	Peter-Michael Diestel	DSU 1990년 6월 30일 이후 무소속 1990년 8월 3일 이후: CDU	–
Peter Moreth	LDPD	지방질서부/ 지방자치 행정부	Manfred Preiß	BFD	–
Theodor Hoffmann	SED/PDS	국방부/ 군축국방부	Rainer Eppelmann	DA	Bertram Wieczorek Frank Marczinek
Uta Nickel	SED/PDS	재무부	Walter Romberg 1990년 8월 16일 해임 Werner Skowron 1990년 8월 16일 이후 권한대행	SPD CDU	Dieter Rudorf 1990년 8월 20일까지 Martin Maaßen Walter Siegert

Hans–Heinz Emons	SED/PDS	교육청소년부/ 청소년체육교육 학술부	Cordula Schubert Hans–Joachim Meyer	CDU 무소속s	Rainer Jork
Dietmar Keller	SED/PDS	문화부	Herbert Schirmer	CDU	–
Gerhard Schürer	SED/PDS	계획위원회	–	–	–
Karl Grünheid	SED/PDS	경제위원회 위원장	–	–	–
Christa Luft	SED/PDS	경제부/ 경제협력부	Gerhard Pohl 1990년 8월 16일 해임 Gunter Halm 1990년 8월 16일 이후 권한대행 Hans–Wilhelm Ebeling	CDU BFD DSU 1990년 7월 2일 이후 무소속	Stefan Körber 1990년 8월 20일까지 Martin Dube Gunter Halm Oswald Wutzke
Kurt Singhuber	SED/PDS	중공업부	–	–	–
Karl Grünheid 1990년 1월 20일 Hans–Joachim Lauck	SED/PDS	기계부	–	–	–
Gunter Halm	NDPD	경공업부	–	–	–
Peter–Klaus Budig	LDPD	연구기술부/ 학술기술부	Frank Terpe 1990년 8월 20일 사퇴 Hans–Joachim Meyer 1990년 8월 22일부터 권한대행	SPD 무소속	Ernst–Hinrich Weber
Manfred Flegel	NDPD	무역공급부	–	–	
Gerhard Baumgärtel	CDU	건설주택경제부/ 건축 도시건설 주택경제부	Axel Viehweger 1990년 8월 20일 사퇴	BFD	Franz–Joseph Glotzbach
Gerhard Beil	SED/PDS	무역부			
Bruno Benthien	LDPD	관광부/ 무역관광부	Sybille Reider 1990년 8월 20일 사퇴 Lothar Engel 1990년 8월 20일 이후 권한대행	SPD 무소속	Werner Jurich
Klaus Thielmann	SED/PDS	보건부	Jürgen Kleditzsch	CDU	Thomas Schmidt
Hans–Joachim Heusinger 1990년 1월 12일까지 Kurt Wünsche	LDPD BFD	법무부	Kurt Wünsche 1990년 8월 20일 사퇴 Manfred Walther 1990년 8월 16일 이후 권한대행	BFD 1990년 7월 3일 이후 무소속 CDU	Rolf Schwanitz 1990년 7월 23일 –1990년 8월 20일 Reinhard Nissel Manfred Walther



Klaus Wolf	CDU	우편통신부	Emil Schnell 1990년 8월 20일 사퇴 Hans–Jürgen Niehof 1990년 8월 20일 이후 권한대행	SPD 무소속	Hans–Jürgen Niehof
Heinrich Scholz 1990년 2월까지 Herbert Keddi	SED/PDS	교통부	Horst Gibtner	CDU	Manfred Jakob Dott
Hans Reichelt 1990년 1월 11일까지 Peter Diederich	DBD	환경수자원부/ 환경자연보호 및 원자력안전부	Karl–Hermann Steinberg	CDU	Gerhard Behrendt Uwe Pautz Winfried Pickart
Hans Watzek	DBD	농림식품부/ 식품농림부	Peter Pollack 1990년 8월 16일 해임 Peter Kauffold 1990년 8월 16일–20일 사이 권한대행 Gottfried Haschke 1990년 8월 20일 이후 권한대행	무소속 SPD CDU	Peter Kauffold 1990년 8월 20일 사퇴 Gottfried Haschke 1990년 8월 20일 이후
Hannelore Mensch	SED/PDS	노동임금부/ 노동사회부	Regine Hildebrandt 1990년 8월 20일 사퇴 Jürgen Kleditzsch 1990년 8월 20일 이후 권한대행	SPD CDU	Alwin Ziel 1990년 8월 20일 사퇴 Horst Kinitz
Lothar de Maizière	CDU	교회문제	–	–	
–	–	여성가족부	Christa Schmidt	CDU	Hans Geisler
–	–	언론정책	Gottfried Müller	CDU	Horst Schulz
Tatjana Böhm, Rainer Eppelmann, Sebastian Pflugbeil, Gerd Poppe, Walter Romberg, Klaus Schlüter, Wolfgang Ullmann, Matthias Platzeck	UFV DA NF IFM SDP GP DJ GL	무임소 장관 1990년 2월 5일 이후	–	–	–

제2절 서독에서 온 자문관들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최초로 실시된 자유총선거 직후에 다수의 서독 관료, 전문가들이 동독의 여러 분야에서 자문 역할을 했다.[3] 선거에서 승리한 로타 드 메지에르가 정부를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때부터 그는 서독에서 온 다수의 자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다. 당시 서독 연방정부의 수상청에 근무했던 한스 레커스는 본인이 3월 18일부터 동독의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작업에 관여하게 된 최초의 서독 공무원이라고 회상한다.[4] 그러나 3월 18일 이전에 이미 동독의 정치인이 선거전을 위해 서독의 정치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경우도 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사례가 1989년 11월 10일에 동독 기민당의 새로운 당수로 선출된 로타 드 메지에르가 선거전 중에 자신의 사촌동생이며 서베를린 기민당의 언론담당관이었던 토마스 드 메지에르를 자문으로 임명한 것이다. 토마스 드 메지에르는 통일 이후에 앙겔라 메르켈 정부에서 국방 장관, 내무 장관을 역임했다. 1990년 총선거 이후 동독의 과도개혁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로타 드 메지에르의 자문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그의 정치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다.

드 메지에르 정부가 구성되었을 때 서독에서 온 자문들은 공식적으로는 주요한 직책을 맡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서독 시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한스 레커스는 로타 드 메지에르가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 이미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을 비롯한 서독 연방정부가 직접 관여했다고 회상한다. 3월 18일 총선거 이후 매주

[3] 동독지역의 행정제도 구축을 위해 파견된 약 35,000명의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독일통일 총서 2권 참조.

[4] Hans Reckers, Beratung der DDR-Regierung in Ost-Berlin durch westdeutsche Spitzenbeamte, Friedrich Thiessen (편), Die Wessis: westdeutsche Fuehrungskraefte beim Aufbau Ost. Koeln: Boehlau 2009, pp.37-44.



화요일 저녁에 서독의 수도 본에 있는 연방수상 관저에서 헬무트 콜 수상과 로타 드 메지에르가 만나서 기본적인 정치적 방향과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이 회의에는 루돌프 자이터스 수상청장과 볼프강 쇼이블레 내무 장관, 수상청의 카벨 국장과 레커스 국장 본인이 참석했다고 한다.[5] 서독 연방정부의 수상이 동독의 새로운 정부구성 과정에서 총리가 될 로타 드 메지에르와 매주 만나서 정부구성을 비롯한 기본적인 정치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1990년 3월 18일 이후 동독의 정치개혁 과정에 서독 연방정부가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드 메지에르 정부의 장관과 차관은 모두 동독 시민들이었다. 그러나 드 메지에르 정부의 모든 부처에는 서독의 정부, 행정, 세부적인 법적 지식에 관한 경험이 있는 다수의 서독과 서베를린 출신 인사들이 자문으로 포진하고 있었다. 이들은 서독 정당의 추천을 받았거나 또는 정부 부처가 서독 측에 업무 공조를 요청해서 파견되었다. 그 외에 서독의 관료, 전문가들 중에 동독에서 활동하겠다고 직접 지원하는 이들도 있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독의 다수 퇴직 공무원들이 동독에서 자문으로 다시 활동하게 되었고, 현역에서 은퇴한 변호사와 공증인들 또한 동독에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다. 서독에서 온 다수의 자문들에게 동독에서의 근무는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이었지만, 동독에서 새로운 민주적인 정부 체제의 구축과정에 참여한 것이 이들에게 중요한 경력이 되었다.

서독에서 동독의 개혁을 도와주기 위해 파견되거나,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의 전문 지식, 특히 법률 전문 지식은 1990년 3월 18일 이후 실질적으로 시작된 개혁입법을 통한 통일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고인민회의와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거나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항상 서독의 기본법 및 다른 법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5] 위의 글 p.37.

서독의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동독의 개혁작업을 돕기 위해 서독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자문의 활동기간은 일정한 시기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동독에서 계속 머물기로 결정한 이들도 있었다. 통일 이후에 신연방주의 정부에는 그런 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혁 정부는 1990년 여름에 서독의 변호사들이 동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률도 제정했다.[6]

제3절 최고인민회의

동독의 최고인민회의는 1989년 11월 9일 이후 1990년 10월 2일까지 문서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900개가 넘는 법률과 관련된 결정을 내렸다. 광대한 입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과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인민회의는 약 11개월 동안 끊임없이 입법활동을 한 것이다.

물론 1990년 3월 18일의 자유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최고인민회의와 그 이전의 최고인민회의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기관이었다. 자유총선거 이전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통당이 총 의석 500석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봐야 한다. 공식적으로 사통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127석이었지만, 독일자유노조연맹이 61석, 자유독일청년단이 37석, 문화연맹이 21석을 보유했고, 이들은 모두 사통당의 의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3월 18일 선거 이후 사통당의 의석수는 총 37석으로 줄었다. 나아가 3월 18일 이전에는 동독의 위성정당들이 '국민전선'을 통해 사통당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투표 결과가 나올 염려가 없었다. 그러나 3월 18일의 선거를 통해 기민당의 의석 수가 사통당의 3배가 되었고, 새롭게 조직된 사민당도 88석을 확보했다.

[6] 서독 면허 변호사의 동독에서의 영업활동에 대한 법령(문서번호 417).



사통당과 위성정당들 간의 국민전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새롭게 구성된 최고인민회의는 새로운 선거법을 통해 선출된 민주적인 대의기관이었다. 3월 18일의 자유총선거는 새로 제정된 선거법에 따라 비례투표제로 실시되었다. 이 법에는 서독에서와 같은 5% 저지조항과 같이 소수그룹의 의회진출을 제약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모든 정당, 정치단체 및 정치그룹은 입후보자를 세울 수 있으며 선거동맹을 결성할 수 있었다. 새롭게 구성된 최고인민회의는 그러나 '해체 날짜'가 정해져 있는 대의기구였다. 1990년 10월 3일 통일과 함께 이 기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이 되게 될 신연방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그대로 존속하기에는 400명의 구성원을 가진 최고인민회의의 규모가 너무 컸다. 결과적으로 1990년 10월 3일부터 12월 2일에 있을 전 독일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연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신연방주를 대표할 인물을 선출하는 것이 최고인민회의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최고인민회의는 전체 구성원 400명 중에서 자체적인 투표를 통해 3개월간 연방의회에서 신연방지역을 대표해서 의원으로 활동하게 될 144명을 선출했다(기민당 65명, 사민당 32명, 민주사회당 24명, 독일사회연합 8명, 자민당 8명, 동맹 90/녹색당 7명). 이 방법은 통일조약 제42조를 통해 만들어진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동독이 서독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구성방식을 토대로 제11대 연방의회에 파견될 144명의 의원과 충분한 수의 후보의원을 선출한다. 이와 관련된 제안은 최고인민회의 내의 원내 교섭 단체 및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1990년 3월 18일의 자유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 중에는 간호사, 의사, 교사, 다양한 분야의 학자, 노동자, 영농인, 수공업자, 기술자, 수의사와 같은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포함되었지만, 특히 목사들이 아주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과도개혁기 동독의 최고인민회의를 아마추어들의 집합소라고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러나 실제로 이들은 1990년 4월부터 10월 2일까지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수많은 입법활동을 통해 형식적인 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했다.

표 2-4〉 1990년 3월 18일 선거 전후 최고인민회의 원내 정당세력

정당	9대 최고인민회의	10대 최고인민회의 (1990년 3월 18일 자유총선거)
기민당	52	163
민주혁신당	–	4
독일민주농민당/독일민주여성연맹	52/32	10
민주주의 지금당	–	3
독일포럼당	–	7
독일사회연합	–	25
독일자유노조연맹	61	–
자유독일청년단	37	–
자민당		4
동독 녹색당/ 자주여성연맹	–	8
평화인권연대	–	2
문화연맹	21	–
독일자유민주당	52	10
사민당	–	88
신포럼당	–	7
독일국가민주당	582	2
사통당/민사당	127	66
농민상호부조연맹	14	–
무소속	–	1
합계	500	400

최고인민회의 구성 인원을 분석하면 9대 최고인민회의 의원 500명 중 10대 최고인민회의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은 겨우 8명에 불과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기존 의원 500명 중에서 겨우 8명만이 재선에 성공했다는 것이 정상적인 조건하에서라면 충분히 놀라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1989~1990년 동독에서와 같이 급격한 체제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의원들 중에 많은 수가 선거를 통해 새로운 민

주적 최고인민회의에 선출되었더라면, 어떤 형태의 체제개혁이 가능했을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9대 최고인민회의 의원 중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 입후보했었는지, 입후보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지명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한 경험적인 조사자료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구체적인 동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

표 2-5〉 9대·10대 회기 동안 연이어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의원

이름	정당	선거구	직책
케르스틴 베트나르스키	민사당 (전: 독일민주여성연맹)	코트부스	9대 최고인민회의 헌법위원회 및 법사위원회 구성원
귄터 말로이다	독일민주농민당	슈베린	9대 최고인민회의 의장
베르너 마루쉬	독일민주농민당, 1990.09.01. – 사민당	코트부스	
한스 모드로우	민사당(전: 사통당)	노이브란덴부르크	1973–1989 드레스덴 사통당 주지도부 제1 서기관, 1989–1990 동독 총리
게어하르트 폴	기민당	코트부스	1989년 기민당 지도부
부르크하르트 슈네바이스	기민당	베를린	소아과학 교수
구스타프–아돌프 (‘테베’) 슈르	민사당(전: 사통당)	막데부르크	유명한 동독 사이클리스트
게르트 슈테그만	독일국가민주당	드레스덴	그라이프스발트대학 치의학 교수

제3장

과도개혁기의 입법 업무

일반적으로 법률은 법률관보를 통해 공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동독에도 법률관보가 존재했다. 동독의 법률관보는 상당히 포괄적인 분배기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관청, 기업, 콤비나트, 집무실, 대학 등에 분배 체계가 존재했다. 최고인민회의가 제정한 법률 외에도 내각평의회가 도입한 많은 내부 규정이 있었다. 내부 규정은 비공개였지만 매우 중요한 규정이었으며, 부분적으로는 1990년 10월 3일까지 적용되기도 했다. 내부 규정은 법의 해석과 시행을 규정했으며, 부분적으로는 1940년대에 도입된 법률과 관련된 것도 있었다. 거기에는 나치독일이 항복한 1945년 5월 8일 이후 동독이 건국되기까지 (1945~1949) 동독지역을 점령통치했던 소련군정청의 법령이 재해석된 것도 있었다.

1989~1990년 과도개혁기 동안에는 다수의 시행령, 규정안 및 법률안이 최고인민회의뿐만 아니라 '중앙원탁회의'에서 협의되고 결정되었다. 최고인민회의는 원탁회의가 입법기관처럼 활동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체제운동의 주도세력이었던 시민대표들이 가지는 도덕적 정당성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 놓고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사실 새로운 선거법 도입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장벽 붕괴 후 1990년 3월 18일까지 '중앙원탁회의' 실무그룹이 법안의 내용을 거의 완성하고, 최고인민회의



가 그 내용을 수용한 후 법으로 가결하는 방식으로 입법작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원탁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개혁을 통해 동독을 인간적이고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원탁회의'가 제안한 정책과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개혁기 동독에서 원탁회의는 대체 입법기구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민주주의를 위한 학교'였다. 로타 드 메지에르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동독을 혼란으로부터 보호한 것이 원탁회의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라고 썼다.[7]

모든 것이 급변하던 과도개혁기에 입법기구는 변혁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도 있고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1989년에 3월 18일 자유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동독 최고인민회의는 급격한 변화에 뒤늦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 1월 15일, 시민운동가들이 비밀경찰이 문서를 소각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비밀경찰 본부를 점령한 후에야 정부와 최고인민회의가 비밀경찰 문서고 취급에 관한 해결책을 도입한 것이 그런 사례이다.[8]

한스 모드로우 정부의 개혁 작업에는 사통당 독재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비판적 조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로타 드 메지에르 정부는 동독의 민주화와 함께 독일연방공화국으로의 가입을 준비하기 위한 구조적, 행정기술적 작업을 진행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서독법과 법령이 받아들여졌다. 기존의 서독법을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일부는 이미 30년 이전에 도입된 법률이 그대로 수용된 것도 있었다. 서독에서도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

7 de Maizière, Lothar: Ich will, dass meine Kinder nicht mehr lügen müssen. Meine Geschichte der deutschen Einheit. Freiburg, Basel, Wien: Herder Verlag, 2010, S. 119.

8 한스 모드로우 총리는 1990년 1월 15일에 시민단체들이 비밀경찰 본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총리가 시민단체들과 함께 행동하는 과정에서 동독 경찰이 아닌 시민단체 사람들이 자신의 경호를 맡았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1990년 초반 동독의 국가기구가 얼마나 혼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 있다는 논의가 제기된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법률전문가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제안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시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법들은 동독인들에게 생소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 많았다. 특히 1990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한 화폐통합을 위해 많은 수의 서독법과 기타 법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동독에 관련법 및 규정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그 형태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폐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서독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사례도 있다.[9] 과도개혁기 동독 정부와 최고인민회의 입법 활동의 목표는 먼저 개혁 입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고, 체제 개혁 과정의 투명성 및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경제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보장하고,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동독의 과도개혁 입법 과정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은 새로운 헌법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최고인민회의는 개혁정책의 필요에 따라 기존의 헌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했다. 한스 모드로우 정부뿐만 아니라 로타 드 메지에르 정부 또한 사통당 독재 체제하에서 사용되었던 기구와 제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취임 선서 양식도 그대로 사용했다. 반면, 드 메지에르 정부의 총리와 장관이 취임할 때 종교적인 선서를 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맹세하건대…"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10]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의 재임 기간 동안(1990년 4월 5일에서 1990년 10월 2일까지) 164개의 법률이 의결되었고, 143개의 법령이 공포되었으며, 759개의 내각안이 완성되었고, 3개의 국가조약과 국제조약에 관한 논의와 비준이 있었

[9] 연방은행법(문서번호 823-833), 채권법, 주택은행법, 자본회사법, 예탁법(유가증권의 구입과 보존-문서번호 834-843), 보험회사감독법(문서번호 844-854), 경쟁제한법 및 관련 규정(문서번호 858-860), 상법관보 발췌내용(문서번호 864-866), 서독 주식법(문서번호 874).

[10] 동독헌법 개정 및 보충 관련 법(문서번호 267).

다. 동독의 바르샤바조약 탈퇴, 화폐·경제·사회통합[11], 통일조약, 2+4 조약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스 모드로우와 로타 드 메지에르 정부하에서 도입된 법률을 모두 소개하기 위해서는 지면이 부족할 것이다. 대부분의 법률과 규정은 그 제목만으로도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고인민회의 입법활동의 목적을 잘 보여 주는 일부 문서들만 분류 소개할 것이다. 문서 요약 또한 선별된 일부 문서만 작성되었다.

제1절 국민으로부터 신뢰 획득

1989년 가을 동독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신호는 다양하게 드러났다. 이어지는 반체제 시위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동독을 이탈하는 주민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도 그런 증거였다. 1989년 여름 이후 프라하, 부다페스트, 폴란드 등과 같이 동독 주민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동구 유럽의 우방국 수도에 있는 서독대사관으로 동독 이탈주민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프라하의 서독대사관 건물에 수천 명의 동독 주민이 들어가서 발디딜 틈도 없게 되면서 위생문제로 인해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등장했고, 그로 인해 동독 정부는 1989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신속한 해결책을 찾아 달라는 압력을 받았다. 동독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결과적으로 동독 주민들에게 여행의 자유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11월 9일 장벽이 개방되기 이전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1989년 11월 9일 저녁 동독 정부의 지도부가 여행을 자유화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귄터 샤보브스키가 이 결정이 '즉각적으로 유효'하다고 전달하는 바

[11] 1990년 5월 18일 자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통합 실시에 관한 법(헌법률)(문서번호 329).

람에 11월 9일 저녁에 동독의 장벽이 개방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 결정은 동독 정부의 지도부가 내린 것이지, 최고인민회의가 의결한 것이 아니었다. 동독 정부는 여행자유화 조치를 도입하기 전 1989년 10월 27일에 실시한 '사면' 결정을 통해 '불법 국경침입죄'로 인해 처벌받았던 사람들도 사면해 주었다. 그때까지 불법 국경침입 행위는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도주'라는 범죄로 분류되어 엄중하게 처벌되었다. 10월 27일에 실시된 사면 조치는 분명한 정치적 성격을 띤 것으로, 그 후에 이어진 여행자유화 및 장벽 개방까지 포함하는 개혁정책의 서막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12]

형식적으로는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는 1990년 1월에 동독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관한 새로운 법을 의결했다. 이 법에는 "동독 시민은 누구나 해외여행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목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다. 동독 시민은 언제든지 동독으로 입국할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2조의 한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다.[13] 이러한 내용은 민주국가의 주민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허가증이 있어야 여행을 할 수 있었던 동독인들에게는 상당히 급진적인 변화였다. 그 이전까지는 허가 없이 출국한 동독 시민의 경우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했으며, 입국을 거부당했다.[14] 1990년 1월에 개정된 '동독 국적법'에 의해 국적은 국적 포기를 통해서만 상실되고, 더 이상 예전처럼 강제적 박탈을 통해 실행될 수 없게 되었다.[15]

동독을 여행하려는 외국인, 특히 서독인을 위한 여행규정도 1989년 12월 말에 개정되었다. 그에 따라 동독과 서독,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간의 국경검문소가 새롭게 설치되었다.[16] 1990년 7월 1일부터는 동독과 서독 간의 국경검

12 사면에 관한 동독 국가평의회 결의안(문서번호 1).

13 동독 시민들의 해외여행에 관한 법-여행법(문서번호 57).

14 동독 시민들의 해외여행법에 대한 1차 시행규정-여행법(문서번호 64).

15 동독 국적법 개정에 관한 법(문서번호 90).

16 서독과 서베를린 거주 주민의 동독 여행에 관한 규정(문서번호 35), 서독 시민 및 서베를린 상주인들의 동독여행 및 여행경유 관련 법령(문서번호 282).

문소에서 이루어지던 신분증 검사가 아예 폐지되었다. 그 외에 제3국에서 온 외국인들은 비자 없이 여권이나 다른 통행증을 가지고 동독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17] 나아가 동독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언론인들이 취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대되었다.[18]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치국가로서의 기본틀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모든 법률과 규정의 실행 과정이 투명해서 예측 및 검증 가능하고 사법기구와 제도의 독립성이 보장될 때 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과도개혁기 동독의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위해 법관법[19], 변호사법, 경찰업무와 권한에 관한 법, 지방자치 행정기구 중재소에 관한 법률을 도입했다.[20] '지역별 인민대표기관에 설치된 1989년 10월 7/8일 사건 규명을 위한 임시규명위원회와 부패, 직권남용 및 부당이득 심의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결정 또한 과도개혁기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21] 1989년 10월 7/8일의 사건은 동독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대를 진압한 것이다.

1990년 9월에는 1989년 10월 27일의 '사면' 조치보다 훨씬 포괄적인 '사면 및 복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22] 복권법의 전문에서 개정의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과 인권에 반하여 형법상 처벌 및 차별을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심각하게 권리를 제한받은 사람들의 권리

17 동서독 국경에서의 신분증 검사 폐지에 관한 법령(문서번호 421).

18 외국 보도기관 및 동독 특파원 활동에 관한 법령(문서번호 49).

19 법관법(문서번호 410).

20 경찰의 임무 및 권한에 관한 법(문서번호 705), 변호사법(문서번호 706), 지자체 중재소에 관한 법(문서번호 707).

21 지역별 인민대표기관에서 설립된 1989년 10월 7/8일 사건에 대한 임시 규명위원회와 부패, 직권남용, 부당이득 심의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결의안(문서번호 92).

22 복권법(문서번호 690).

를 복권하는 것은 동독의 사회, 국가, 법을 민주화하기 위한 정책의 핵심 요소이다. 특히 입법이나 사법적 판결을 통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 정치활동을 범죄로 규정한 것은 시민들의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 및 인권과는 모순되는 행위이다. 복권은 과거에 기본원칙에 반해 처벌되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형법상 판결을 통해 행해진 차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법치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 중대사이다."

그에 앞서 1990년 7월 18일에는 사면 및 복권 절차와 관련해 국가안전부, 즉 비밀경찰의 데이터 자료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 본인을 비롯해서 학자와 언론인들이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슈타지문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23] 비밀경찰은 동독의 엄격한 감시 및 억압 체제 내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동독 국가안전부 개인자료 확보 및 활용에 관한 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민주화, 법치주의 발전, 새로운 규정의 마련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던 동독의 과도개혁 정부가 특별문서보관소에 있는 자료정보의 분류정리를 비롯해 정보공개 및 자료보존과 같은 문제를 규정한 것이다. 슈타지문서특별법 전문에는 이 법의 목표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1. 비밀경찰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사법적 청산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2. 비밀경찰이 수집한 개인정보로 인해 개인의 인격과 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3 피해자의 복권을 위해 비밀경찰이 수집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 비밀경찰 활동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상의 증거물을 제공한다. 5. 비밀경찰이 수집한 개인정보 자료의 확보와 이용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통제를 보장한다."

과도개혁기 새로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여러 조치 중에는 환경자료에 관한 주민의 열람을 허용하는 규정[24]

[23] 과거 국가안전부/국가공안국의 개인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문서번호 660).

[24] 환경 데이터 관련 법령(문서번호 4).

과 외환보유고 및 자동차 수출입 규정에 관한 분명한 지침도 포함되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와 관련해 환경기본법을 제정했다.[25] 환경문제는 동독 시민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된 것이다. 동독의 변혁을 이끌어 낸 반체제 시민운동의 핵심세력 중에 환경운동단체도 포함될 정도로 동독에서도 환경오염 문제가 장래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과도개혁기에 최고인민회의가 환경기본법을 제정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드 메지에르 정부가 구성된 직후인 1990년 4월 12일에는 새롭게 구성된 최고인민회가 '독일민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내부 전체 원내 교섭 단체의 공동 선언안'을 가결했다. 선언안에는 대내외적 역사적 책임에 대한 해명과 이웃국가인 폴란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유대인에 대한 독일의 책임, "우리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인들에게 가한 끔찍한 고통을 잊지 않았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68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프라하의 봄'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바르샤바조약기구 군대에 동독 인민군이 동참해서 시위를 진압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것 외에, 유럽통합 과정에 관한 언급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 간에 만들어진 국경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는 독일이 동유럽 민족들과 역사적으로 쌓아온 관계를 유럽의 통합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특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중략)...특히 폴란드의 경우 국경이 침범받지 않는 안전한 국토 내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러한 권리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우리 독일이 절대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도 좋을 것이다."[26]

[25] 환경기본법(문서번호 412), 환경문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독일통일 총서 23권 환경 분야 참조.

[26] 로타 드 메지에르, "나의 자식들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 p.161.

제2절 정치권력 구조와 체제 개혁

과도개혁기 동독의 체제 개혁의 핵심은 수십 년간 지배통치 세력이었던 사회주의통일당(사통당)의 역할 축소와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시민 사회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전반적인 국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던 지배세력으로서 사통당의 역할을 축소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서로 구분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국가기구와 정당인 사통당 간의 관계를 분리·개혁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통당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그 첫 번째 조치는 1989년 12월에 이루어진 헌법 개정이었다.[27]

사통당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통당과 함께 국민전선을 구축했던 동독의 위성정당들도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정당들이 보유한 재산 관리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가 확립되었다.[28]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독립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정당의 자금이 불법적으로 외국으로 이전된 것까지 조사·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정당법의 개정을 통해 문서화되었다. 정당법에는 "정당과 정당에 속한 조직, 법조인, 대중조직은 1항에 따라 발족된 위원회의 의무와는 상관없이 1945년 5월 8일 이후 어떤 재산을 어떤 방법(획득, 몰수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서 인도받았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29]

---

27 동독헌법 개정법(문서번호 25), 사회주의통일당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독일통일 총서 6권 정당 분야 참조.

28 독일통일 총서 6권 정당 분야 참조.

29 1990년 2월 21일 자 동독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 관련 법(정당법)의 개정에 관한 법(GBl. I. Nr. 9 S. 66)(문서번호 300), 정당과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법(정당법)-동독(문서번호 123), 정당 및 기

동독의 과도기 개혁을 통해 사통당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축소된 반면,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다수결 원칙을 통해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정치적 참여는 강화되었다. 동독에서는 장벽 붕괴 이후 시민들의 정치활동이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특히 원탁회의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은 최고인민회의의 결의안을 통해 보장되었다.[30] 1990년 2월에 공포된 사상·정보·언론의 자유보장에 관한 결정도 시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정책의 일환이었다. 같은 달에 선거법[31]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법[32]이 도입되었다. 1990년 3월에는 시민위원회와 시민단체 활동에 관한 법이 도입되었다.[33]

과도개혁기 동독 정부는 사통당 일당독재 체제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완화, 변화, 해체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의기구를 구축해야만 했다. 특히 3월 18일 자유총선거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으로 가입하는 것이 확실해진 후에는 모든 영역에서 서독의 체제에 부합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의기구를 도입해야만 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위해 동독의 행정구조와 권력구조 재편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 단위의 행정조직을 도입하고(연방주 도입법과 주의회 선거법[34]) 게마인데, 란트크라이스로 불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도입했다. 지방자치단체법 제1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주의 국가의 토대이고 이음새다"라고 명시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치행정 구조의 근간임을 밝혔다.[35]

타 정치단체에 관한 법개정과 보충을 위한 법-정당법(문서번호 492).

30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지역별 인민대표기관이나 의회의 원탁회의 정치단체 대표자들의 활동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결의안(문서번호 91).

31 1990년 3월 18일 동독 인민의회 총선에 관한 법(문서번호 122).

32 결사에 관한 법-결사법(문서번호 129).

33 시민위원회 및 시민단체 활동에 관한 법령(문서번호 156).

34 독일민주공화국 내 주 설립에 관한 헌법(주도입법)(문서번호 502), 동독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주선거법)(문서번호 503).

35 동독의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의 자치행정에 관한 법(기초단체법)(문서번호 289).

권력구조의 새로운 가치 체계는 개정된 헌법의 기본원칙에도 반영되었다. 개정된 헌법은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의 가치관을 분명히 보여 주며, 독립적인 사법권[36]을 보장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신속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주권 문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1989년 가을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혁명과, 즉각적인 독일통일에 대한 기대 속에 과도기 동독의 헌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보강하게 되었다. … 동독은 자유민주와, 연방주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친환경적 법치국가이다. 연방주의 질서는 새로이 도입될 법규정과 보강될 헌법의 기준에 의거 적용될 것이다. 동독 국가는 기초단체의 자치행정을 보장한다." 나아가 헌법 8조에는 "동독은 헌법을 통해 주권을 국제기관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주권의 제한을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37]

서독의 연방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동독의 모든 체계를 전환하는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다. 연방주의에 입각한 법률들은 서독의 공간운용법처럼 동독에 그대로 적용[38]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연방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서독의 직업교육법을 동독에서 발효시키기 위한 법'[39]처럼 서독법을 그대로 수용하려고 시도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동독에서 이미 직업교육 과정에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과도기적 규정을 도입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법학교육과 관련, '1990년 9월 이전에 동독 대학교의 법학과에 등록되어 있던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법'이 도입된 것이 그런 사례이다.[40] 이 법의 궁

36 형법전, 형사소송법, 형법전 및 형사소송법 도입법, 위법성퇴치법, 형사기록부법, 행형법, 여권법 관련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6차 형법개정법)(문서번호 371).

37 제4조 임금협상단체 및 제7조 노동권 보호 조항 관련 동독 헌법 개정안(문서번호 320).

38 동독에서의 서독공간운용법 발효에 관한 법(문서번호 406).

39 서독의 직업교육법이 동독에서도 유효함을 규정하는 법(문서번호 495).

40 1990년 9월 1일 이전 동독 대학교 법학부 등록 학생들에 대한 교육 법령(문서번호 671).



극적인 목표는 동독의 법학교육 과정을 서독의 법학과정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1990년 당시 동독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던 학생들을 위해서는 과도기적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우지 않은 내용에 관해 시험을 보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41] 교육제도의 개혁 외에도 미디어를 비롯한 다른 영역에서도 연방제도에 기반한 서독의 제도를 이전하는 절차가 이루어졌다. 미디어의 경우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주 단위의 지방행정단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구조전환을 실행하기 위한 방송이전법이 도입되었다.[42]

과도개혁기 동독 정부는 병역의무제도의 개정도 단행했다. 동독에는 1962년부터 일반적인 병역의무가 적용되었으며,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정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국으로서 할당된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에도 다양한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고, 동독 정부는 일종의 타협안으로 1964년 이후 인민군 내에 공병대 교육에 관한 국방부령을 공포했다.[43] 이 법에 따라 무기 들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18개월 동안 공병대에 복무했다. 공병대의 건설사병으로 복무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964년에서 1990년까지 약 1만 2천에서 1만 5천 명이 건설사병으로 복무했다. 1980년 이후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공병대의 건설사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서, 전체 병역의무를 가진 사병 중에 1%를 넘어섰다. 동독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이들이 산업현장에 투입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자, 동독 지도부는

41 교육 체제의 전환에 관해서는 독일통일 총서 17권 교육통합 분야 참조.

42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연방주의 입법권 영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방송과도규정(문서번호 724), 독일통일 총서 22권 언론 분야 참조.

43 동독 법률관보 1964년 9월 16일, I장, 11번, p.129.

1989년 2월 8일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징병검사 및 군복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새로 도입된 규정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하는 병역 의무자는 건설사병으로 소집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과도개혁 정부에 의해 동독에서도 공익근무제도가 도입되었다.[44]

과도개혁기에 이루어진 체제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물론 최고인민회의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체제를 동독지역에도 수용하는 법을 도입한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동독은 1990년 10월 3일 자로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23조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편입되었다.[45] 동독지역이 1990년 10월 3일 자로 독일연방공화국에 편입하는 근거는 우선 통일조약에 관한 논의가 10월 3일까지 종료될 예정이고, 2+4 조약을 위한 협상을 통해 독일통일의 대외 안보정책적 틀을 규정하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동독지역에서 주 단위의 행정구조가 이미 구축되어서 1990년 10월 14일에 주의회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은 1990년 8월 23일에 제30차 최고인민회의 대회에서 통과되었고, 1990년 10월 3일에 동독과 서독은 형식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다.[46]

제3절 경제제도의 개혁

동독의 계획경제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낀 것은 소비재가 풍족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동독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물물교환을 통해 소비재와 물자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다. 국영기업 간에는 물론 개인들 간에도 물물교환이 이루어졌다. 과도기 개혁을 시작한 동독 정부

44 동독헌법 개정법(문서번호 121), 동독 공익근무에 관한 법령(문서번호 130), 외환계정 관리 관련 법령(문서번호 217).

45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회의의 결정(문서번호 627).

46 동서독 간 통일시행에 관한 조약법-통일조약법-1990년 8월 31일 자(헌법률)(문서번호 742).



가 가장 먼저 취한 경제정책은 경제 체제의 변혁을 위한 조치로써, 당시 동독 사회 전역에서 이루어지던 이런 물물교환 경제와 관련된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1989년 12월에 최고인민회의가 공포한 부업활동과 즉석판매에 관한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47]

무역활동과 관련해 1990년 6월에 새로운 관세법[48]과 대외 경제교역, 자본유통, 지급유통에 관한 법[49]이 도입되었다. 이런 법의 시행과 관련해 1990년 7월 초에 관세규정이 공포되었다.[50]

동독에서 개혁이 시작되자 이미 1990년 초에 많은 수의 외국, 특히 서독 투자자들이 동독에서 투자처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1990년 1월 말에 공포된 동독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본회사로 전환하는 동독 기업에 외국자본을 받아들이는 경우 외국자본 비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만 했다. 동독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규정에는 외국자본의 비율의 하한선을 자본금 또는 기본자본의 20%, 상한선은 49%로 규정했다. 외국자본의 비율이 49%를 넘을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는 조항도 도입했다.[51]

한스 모드로우가 이끄는 1기 과도개혁 정부는 1990년 초반에 동독 경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민영화'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계획경제 체제에서 국가 소유였던 기업을 민영화하는 작업을 담당할 기관으로 신탁관리청을 설립하였다.[52] 대규모 콤비나트와 같은 국영기업의 민영화작업을 담당할 신탁관리청에 주어진 과제는 가능하면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 민영화를

47 행상 관련 법령(문서번호 28).

48 관세법(문서번호 349).

49 무역과 자본 및 금융거래에 관한 규정(문서번호 369), 외국 무역을 위한 자본과 지불 교류에 관한 규정(문서번호 392).

50 일반관세령(문서번호 424).

51 동독에서의 외국자본 참여 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관한 법령(문서번호 72).

52 인민 소유 재산 신탁관리 기관의 신설에 대한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문서번호 152).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가능하면 인민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동독 경제의 기본적인 자산을 보존하기를 원했다. 많은 사람들이 신탁청이 동독 과도개혁 1기에 한스 모드로우 총리의 주도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53] 신탁청을 설립한 원래 목적은 1990년 여름 이후 신탁관리청이 시행한 정책결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54] 인민 소유 기업의 민영화 결정과 함께 동독 경제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집단화된 농업생산 구조를 해체하기로 한 것이다.[55] 이와 관련하여 인민 소유 재산의 매각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도입되었다.[56]

기존의 동독 체제를 개혁하되 동독 체제의 장점을 가능하면 많이 살리고자 했던 한스 모드로우 정부의 개혁정책은 경제영역에서도 볼 수 있다. 한스 모드로우 총리의 개혁정책의 목표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동독 체제가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는 '사회주의 체제의 업적'을 가능한 한 최대로 보존하면서, 변화된 국내, 국제적 상황과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는 현대적 국가 체제를 탄생시키려고 했다. 그를 위해서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한스 모드로우 정부는 실제 물가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서 기존 도매가와 현재 도매가 및 과거 원가와 현재 원가의 비교, 실제 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사례의 하나가 1989년 12월 11일 자 자동차 수리 및 배터리 서비스 관련 협동조합과 민간기업의 생산품 재고 재평가에 관한 법이다.[57] 재고조사와 비용산출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확립하는 것은 동독 경제

53 인민 소유 재산의 사유화와 재조직에 관한 법(신탁관리법)(문서번호 321).

54 신탁관리청의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은 독일통일 총서 11권 신탁관리청 분야 참조.

55 농업생산협동조합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보충하기 위한 법-농업생산협동조합법(문서번호 176).

56 인민 소유 건물의 판매 관련법(문서번호 189), 인민 소유 건물의 판매 관련법에 대한 시행법령(문서번호 190).

57 협동조합 및 개인운영 배터리 서비스와 자동차 수리 영업소 재고품 재평가에 관한 1989년 12월 11일자 법령(문서번호 821).

의 개혁을 위해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소프트웨어 가격 형성에 관한 법'[58]에서 우리는 한스 모드로우 정부가 이 문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볼 수 있다. 이 법은 실제비용에 대한 기준, 세분화된 비용 및 이윤 산출절차, R&D 비용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법의 부록에 포함된 서식을 통해 어떤 내용들이 산출에 감안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

1990년 3월 18일 자유총선거 이후 구성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동독의 행정구조를 개편해서 지방자치기구를 부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민 소유 재산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최하위 단위인 기초자치단체와 최상위 단위인 주로 이전해 주어야 할 필요가 발생했다. 이를 위해 '인민 소유 재화, 국유 임업기업, 기타 인민 소유 농림업 기업의 연방주 및 지자체로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법'[59]이 도입되었다. 이 법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 및 지자체(게마인데, 크라이스) 재산에 관한 법 시행규정', '인민 소유 재산의 도시 및 지자체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를 통해 알 수 있다.[60]

1990년 7월 1일 동독과 서독 간의 화폐통합으로 두 국가는 서독 마르크화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서독의 연방은행이 자동적으로 동독의 통화화폐를 감시하고 통화사안을 관할하는 기구가 되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와 관련하여 연방은행법, 은행법 등 서독의 금융 관련 법을 그대로 수용했다.[61]

동독과 서독 간의 협력이 긴밀해지면서 다양한 규정이 도입되어야만 할 필요가 발생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동서독 간의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 관

58 소프트웨어 가격 형성에 관한 1989년 12월 29일 자 법령 no. PR 592(문서번호 822).

59 국유재산, 국유산림 및 농업과 임업의 다른 국유기업의 소유권을 주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법(문서번호 487).

60 인민 소유 재산을 도시 및 지자체(게마인데, 크라이스) 소유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 관련 법에 대한 시행법령(소유권이전절차규정)(문서번호 440).

61 모기지은행법(문서번호 833).

한 규정,[62] '동독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의 동독에서의 영업활동이나 자영업 개시에 관한 법', 즉 개업법[63] 등이 그런 사례이다. 화폐통합이 실시된 이후에는 동독에 주둔하던 소련군 서부군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법률도 도입되었다.[64]

62 동서독 간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 관한 법령(문서번호 475), 동서독 간 물자 및 서비스 교통에 대한 1차 시행령(문서번호 476).

63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원들의 법률 관계에 대한 1990년 5월 31일 자 법개정에 관한 법(문서번호 485).

64 소련 부대 서부그룹에 대한 공급에 관한 법(문서번호 530), 학교 및 직업학교 관련 원칙과 규정에 대한 명령-임시 학교령(문서번호 732).

나가며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 직후 시작된 동독의 개혁과정에서 제1기 정부를 구성했던 한스 모드로우 총리는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동독 국민들이 체제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동독 국가를 존속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모드로우 정부는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정치학적 시각에서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스 모드로우가 이끄는 동독의 과도개혁 1기 정부는 구성되었을 때부터 두 가지 대안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 하나는 개혁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권위와 함께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개혁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권위와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 이 두 가지 대안 중에 한쪽을 모드로우 총리는 선택해야만 했다. 한스 모드로우는 개혁을 선택했고, 그 결과 우리는 정치 사상가 알렉시스 토끄빌이 프랑스 혁명기 프랑스에서 관찰한 유사한 현상을 동독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 토끄빌은 '구체제와 혁명'이라는 글에서 혁명기 프랑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혁명에 의해 파괴된 정부는 항상 혁명 직전의 전임 정부보다는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나쁜 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스러운 순간이 바로 정부가 스스로를 개혁하기 시작할 때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65] 토끄빌은 나쁜 정

[65] «Le régime qu'une révolution détruit vaut presque toujours mieux que celui qui l'avait immédiatement précédé, et l'experience apprend que le moment le plus dangereux pour un mauvais gouvernement est d'ordinaire celui où il commence à se réformer.» Tocqueville, Alexis de: Oeuvres complètes / cette éd. a été enterprise sous la dir. De J. P. Mayer et sous le contrôle de la Comm. Nat. pour la Publ. des Oeuvres d'Alexis de Tocqueville. – Éd.

부가 해체된 후 새로운 정부가 개혁을 위해 노력하지만, 시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개혁을 통해 더 많은 자율적인 결정권을 갖게 된 시민들은 자율적인 결정을 통해 정부까지 교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국민과 정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점점 더 큰 행복을 추구하고, 정부는 새롭게 부각되는 국민들의 열망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또 진정시키고, 열망을 고무시켰다가, 절망에 빠트리기도 하며, 그로 인해 국민과 정부가 서로를 멸망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66] 장벽 붕괴 이후 동독의 과도개혁 정부가 직면한 상황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80년대 말 동독 시민의 대다수는 더 많은 복지와 행복, 기회와 자유를 원했다. 그러나 빌리 슈토프 정부와 에곤 크렌츠가 이끄는 사통당 지도부(1989)는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용의가 없었다. 장벽 붕괴 후 정부를 구성할 책임을 위임받은 한스 모드로우는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요구를 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게 보면 장벽 붕괴 이전 동독 정부는 토끄빌이 언급한 바와 같이 '나쁜 정부'였으며, 1989~1990년 평화혁명 이후에 전임 정부보다 더 나은 모드로우 정부가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모드로우의 개혁은 동독 체제를 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에게 좀 더 확대된 정치적 참여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국민과 정부는 서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한스 모드로우 정부는 1990년 3월 18일 선거에서 패했지만, 이 정부는 당시 동독의 전환기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장벽 붕괴 직후 동독에서 진행된 폭력 없는 변화를 실현한 중요한 시기였다.

définitive, Paris 1952. L'Ancien Régime et la Révolution. 1.1 éd., p. 223.

[66] "D'un côté, une nation dans le sein de laquelle le désir de faire fortune va se répandant tous les jours; de l'autre, un gouvernement qui exite sans cesse cette passion nouvelle et la trouble sans cesse, l'enflamme et la désespère, poussant ainsi des deux parts vers sa propre ruine." Ebd. Seite 225.

한스 모드로우 총리는 집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압력을 받았다. 당시 다수의 동독 주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보고 꿈꾸어 온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만 같은 서독인들과 동일한 삶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것이 사회주의 체제의 성과를 가능하면 많이 존속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스 모드로우 정부의 개혁정책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반면에 조속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한 드 메지에르 정부에게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독일연방공화국으로의 가입이 이미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드 메지에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개혁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것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동독의 모든 제도를 서독의 제도에 부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실제로 드 메지에르 정부하에서 최고인민회의는 서독 체제를 완전히 수용하기 위한 개혁입법 업무를 담당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동독이라는 역사의 한 장을 종결하는 작업이었다.

독일통일 총서 27

동독의 통일대비 입법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동독의 통일대비 입법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 통일연구팀



문서 목록

본 총서에 수록되지 않은 기타 정책문서는 첨부 CD 참조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5	서독과 서베를린 거주 주민의 동독 여행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동독 내각위원회	Gesetzblatt der DDR, 1989, Teil I, Nr. 26, S. 271–272
37	동독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관한 내각위원회의 결정	1989년 12월 21일	동독 내각위원회,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26; Ausgabetag 29. Dezember 1989
44	동독 주민의 개별 여행을 위해 1990년에 제공될 외환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동독 재무 장관 우타 니켈, 동독 중앙은행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86–277, Ausgabetag 29.12.1989
45	동독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1990년에 동독에 체류하면서 동독 마르크를 구입하는 것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동독 재무 장관 우타 니켈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77, Ausgabetag 29.12.1989
95	동독 지방조직, 기관을 위한 융자 시행령	1990년 1월 15일	동독 중앙은행장 호스트 카민스키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6, S. 35–36, Ausgabetag 08.02.1990
106	직업알선 기간 동안 제공되는 국가보조와 기업에 의한 지원금에 대한 시행령	1990년 2월 8일	동독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노동임금부 장관 하넬로레 멘쉬, 교육부 장관 한스-하인츠 에몬스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7 – Ausgabetag: 12. Februar 1990
107	조기정년연금의 보장에 관한 시행령	1990년 2월 8일	동독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노동임금부 장관 하넬로레 멘쉬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7 – Ausgabetag: 12. Februar 1990
122	1990년 3월 18일 동독 인민의회 총선에 관한 법	1990년 2월 20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Gesetzblatt der DDR, 1990 Teil I, Nr. 9, S. 60.
123	정당과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법(정당법)–동독	1990년 2월 21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Gesetzblatt der DDR, 1990 Teil I Nr. 9, S. 66., in der Version mit markierten Änderungen aus: http://www.verfassungen.de/de/ddr/parteiengesetz90.htm (Stand: 11.05.2018)
133	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교육 시행령	1990년 2월 8일	동독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노동임금부 장관 하넬로레 멘쉬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1 – Ausgabetag: 2. März 199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34	인사기록 서류 처리에 관한 시행령	1990년 2월 22일	동독 내각위원회,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1 – Ausgabetag: 2. März 1990
142–143	직업알선 기간 동안 제공되는 국가보조와 기업에 의한 지원금에 대한 시행령의 1차 및 2차 시행지침	1990년 2월 16일, 22일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지게어트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2 – Ausgabetag: 6. März 1990
144–145	조기정년연금의 보장에 관한 시행령의 1, 2차 집행지침	1990년 2월 16일, 3월 1일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지게어트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2 – Ausgabetag: 6. März 1990
152	인민 소유 재산 신탁관리 기관의 신설에 대한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3월 1일	동독 내각위원회,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90 Teil I, Nr. 14, S. 107
154	동독 헌법 중 노동조합 관련 개정안	1990년 3월 6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만프레드 게어라흐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5 – Ausgabetag: 12. März 1990; (Vorherige Fassung Art. 44 u. 45: www.verfassungen.de/de/ddr/ddr74-i.htm (Stand 11.08.2014))
155	동독 노동조합의 권리에 관한 법	1990년 3월 6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만프레드 게어라흐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5 – Ausgabetag: 12. März 1990
159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은행 감독과 대출에 관한 4차 규정	1990년 3월 2일	동독 내각위원회,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15, S. 114, Ausgabetag 12.03.1990
172	동독 국가은행 개정법	1990년 3월 6일	현직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만프레드 게어라흐, 동독 국립은행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16, S. 125–126, Ausgabetag 12.03.1990
173	문화예술 지원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동독 최고인민회의 결정	1990년 3월 7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말로이다	Gesetzblatt der DDR, Nr. 1990 I/16, Seite 126
177	토지개혁을 통해 획득한 소유권에 관한 법	1990년 3월 6일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만프레드 게어라흐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7, S. 134 – Ausgabetag: 16.03.199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78	국유 농지의 소유권을 협동농장에 이전하는 법	1990년 3월 6일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만프레드 게어라흐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7, S. 135 – Ausgabetag: 16.03.1990
179	국가규정으로 인해 많은 채무를 지게 된 협동농장의 지원에 관한 법-협동농장지원법	1990년 3월 6일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만프레드 게어라흐, 농림부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7, S. 135 – Ausgabetag: 16.03.1990
180	동독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개정안	1990년 3월 6일	현직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만프레드 게어라흐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17, S. 136–137, Ausgabetag 16.03.1990
187	동독 수공업조직에 관한 규정	1990년 2월 22일	동독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경공업부 장관 군타 할름	Gesetzblatt Teil I Nr. 17 – Ausgabetag: 16. März 1990
193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기업과 노동청의 의무, 권리 그리고 과제에 관한 시행령	1990년 3월 8일	동독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노동임금부 장관 하넬로레 멘쉬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8 – Ausgabetag: 19. März 1990
195	사회보조 혜택에 관한 4차 시행령	1990년 3월 8일	동독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보건부 장관 클라우스 틸만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8 – Ausgabetag: 19. März 1990
236	동독 조세법 개정안	1990년 3월 16일	현직 재무부 장관 발터 지게어트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21, S. 195–197, Ausgabetag 30.03.1990
251	1990년 외환기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	1990년 3월 15일	동독 외부부 장관 게어하르트 바일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22, S. 213–215, Ausgabetag 07.04.1990
270	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 규정	1990년 3월 20일	동독 중앙은행장 호스트 카민스키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24, S. 233–236, Ausgabetag 25.04.1990
286	직업알선 기간 동안 제공되는 국가보조와 기업에 의한 지원금 시행령의 3차 규정	1990년 4월 27일	노동사회부 장관 레기네 힐데브란트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27 – Ausgabetag: 22. Mai 1990
289	동독의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의 자치행정에 관한 법(기초단체법)	1990년 5월 17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Gesetzblatt der DDR 1990 I/28, S. 255ff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95	국가규정으로 인해 많은 채무부담을 안고 있는 협동농장의 지원 보장에 관한 명령	1990년 5월 4일	동독 농림부 장관 페터 폴락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29, S. 271 f. – Ausgabetag: 01.06.1990
317	학교 내 공동운영위원회 및 교장단 구조에 대한 명령	1990년 5월 30일	동독 내각위원회,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 · 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Gesetzblatt Teil I Nr. 32 – Ausgabetag: 19. Juni 1990
318	임시 학교감독청 설립령	1990년 5월 30일	동독 내각위원회,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 · 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2 – Ausgabetag: 19. Juni 1990
319	사업체에 소속된 유치원 및 종합기술교육학교, 직업학교의 유지에 관한 명령	1990년 6월 6일	동독 내각위원회, 로타르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 · 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2 – Ausgabetag: 19. Juni 1990
320	제4조 임금협상단체 및 제7조 노동권 보호 조항 관련 동독 헌법 개정안	1990년 6월 17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3 – Ausgabetag: 22. Juni 1990
321	인민 소유 재산의 사유화와 재조직에 관한 법(신탁관리법)	1990년 6월 17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3, S. 300–303, Ausgabetag 22.06.1990
338	사회보조법	1990년 6월 21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5 – Ausgabetag: 27. Juni 1990
343	외국어 수업 강화 학급 신설에 관한 지침	1990년 5월 28일	동독 교육 · 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5 – Ausgabetag: 27. Juni 1990
345	동독의 노동지원법	1990년 6월 22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6 – Ausgabetag: 28. Juni 1990
355	동독 주택건축예금 도입규정	1990년 6월 21일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건설부 장관 악셀 피베거,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7, S. 478–479, Ausgabetag 30.06.1990
360	사회보험법	1990년 6월 28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8 – Ausgabetag: 4. Juli 1990
363	동서독 화폐통합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법	1990년 6월 29일	동독 재무부, 동독 중앙은행, 동독 최고인민회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1–502, Ausgabetag 04.07.199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64	전환예금액 획득의 적법성 증명에 관한 법	1990년 6월 29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3, Ausgabetag 04.07.1990
366	베를린 국가은행법	1990년 6월 29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동독 재무부 장관, 동독 총리, 서독 재무부 장관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4–505, Ausgabetag 04.07.1990
367	노동권 분쟁의 조정관 절차 도입법	1990년 6월 29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8 – Ausgabetag: 4. Juli 1990
369	무역과 자본 및 금융거래에 관한 규정	1990년 6월 28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이하 동독) 내각위원회, 경제부 장관, 외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무역부 장관, 식량 · 농지 · 산림부 장관, 교통부 장관, 환경 · 자연보호 · 에너지 · 핵안전부 장관, 미디어정책부 장관, 문화부 장관, 재무정책 조정관, 관세청 (이하 서독) 독일연방은행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9, S. 515–524, Ausgabetag 09.07.1990
392	외국 무역을 위한 자본과 지불 교류에 관한 규정	1990년 6월 28일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경제부 장관 게어하르트 폴, 동독 관세청, 동독 재무정책 조정관, 독일 대외무역은행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41, S. 600–616, Ausgabetag 17.07.1990
393	사회보험납입금과 세금의 산정방식 및 기타 기관에 관한 규정–자율적인 계산 규정	1990년 6월 27일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41, S. 616–618, Ausgabetag 17.07.1990
394	국유 콤비나트에서 자본회사로 전환된 기업의 1990년 후반기 세금 납부에 관한 규정	1990년 6월 27일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41, S. 618–619, Ausgabetag 17.07.1990
396	사립 탁아시설 운영 규정	1990년 6월 27일	동독 내각위원회,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41
402–404	사회보조법 1차–3차 시행령	1990년 6월 21일	가족여성부 장관 크리스타 슈미트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41 – Ausgabetag: 17. Juli 199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07	사회적 시장경제에 동독의 농업의 적응을 지원하는 법–지원법	1990년 7월 6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42, 20.07.1990, S. 633–634
413	농업식품산업의 생산물을 위한 시장조직의 구축과 실현법–시장조직법	1990년 7월 6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42, S. 657–659 – Ausgabetag: 20.07.1990
414	기초자치단체, 도시, 광역자치단체 재산법(지방자치단체 재산법)	1990년 7월 6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동독 기초자치단체, 동독 광역자치단체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lin, den 20. Juli 1990, Teil I, Nr. 42, Seiten 660–661.
415	탁아시설의 유지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4일	동독 내각위원회,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42
416	서방국가와 서독의 파트너와 체결한 계약의 채무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4일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동독 경제부 장관 게어하르트 폴, 동독 경제부 대외무역국, 동독 재무부, 독일 대외무역은행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42, S. 662–664, Ausgabetag 20.07.1990
418	동독 중소기업의 토지구입 지원 규정	1990년 7월 11일	쿠어트 뷰쉐 동독 법무 장관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42, 20.07.1990, S. 665–666
427	서독의 수공업 분야 규정(수공업령)이 동독에서도 유효함을 규정하는 법	1990년 7월 12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44 – Ausgabetag: 27. Juli 1990
429	의사, 수의사, 약사, 치과의사의 직능단체에 관한 법–협회법	1990년 7월 13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44 – Ausgabetag: 27. Juli 1990
435	재산권 요구의 신고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11일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동독 내무부 장관 페터–미하엘 디스텔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44, S. 718–719, Ausgabetag 27.07.1990
452	양육비 채무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4일	동독 내각위원회,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46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74	관세법	1990년 7월 4일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47, S. 849–852, Ausgabetag 06.08.1990
476	동서독 간 물자 및 서비스 교통에 대한 1차 시행령	1990년 7월 9일	게어하르트 폴 동독 경제부 장관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48, 08.08.1990, S. 860–861
483	새로운 아동청소년지원법과 청소년지원조직법의 도입에 관한 법	1990년 7월 20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49
487	국유재산, 국유산림 및 농업과 임업의 다른 국유기업의 소유권을 주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법	1990년 7월 22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49, S. 897–899 – Ausgabetag: 09.08.1990
488	경작 중인 국유지의 소유권과 소작권을 협동농장, 협동농장의 구성원 및 다른 시민에게 이전하는 것에 관한 법	1990년 7월 22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49, S. 899 f. – Ausgabetag: 09.08.1990
495	서독의 직업교육법이 동독에서도 유효함을 규정하는 법	1990년 7월 19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0 – Ausgabetag: 13. August 1990
496	직업학교법(동독)	1990년 7월 19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0 – Ausgabetag: 13. August 1990
502	독일민주공화국 내 주 설립에 관한 헌법(주도입법)	1990년 7월 22일	동독 인민회의, 제10차 임기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0. Wahlperiode, Drucksache Nr. 84 a
506	1990–1991년 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금 신청에 관한 규정	1990년 8월 8일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경제부 차관 군타 할름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1, S. 999–1000, Ausgabetag 14.08.1990
508	동독 세무서 설립에 관한 지침	1990년 7월 20일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S. 1000–1002, Ausgabetag 14.08.1990
514	동독 가족법 개정에 관한 법(1차 가족법개정법)	1990년 7월 20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52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16	국립 보건제도와 수의과 약국제도의 구조개편법	1990년 7월 22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2 – Ausgabetag: 17. August 1990
522	동독 근로자의 1991 근로소득세카드 발급	1990년 7월 31일	동독 내무부 장관 페터–미하엘 디스텔,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2, S. 1063f., Ausgabetag 17. August 1990
529	군, 읍 단위 행정지역에서 보건소의 과제와 공공의료 서비스에 관한 법	1990년 8월 8일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보건부 장관 위르겐 클레디취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3 – Ausgabetag: 22. August 1990
541–555	동독의 노동지원법에 대한 다양한 조치	1990년 7월 1일	노동사회부 장관 레기네 힐데브란트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3 – Ausgabetag: 22. August 1990
591	약국제도에 관한 시행령	1990년 8월 1일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보건부 차관 호르스트 숀펠더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5 – Ausgabetag: 27. August 1990
617	저축금고의 영업에 관한 지침–저축금고지침	1990년 7월 26일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5–1279, Ausgabetag 30.08.1990
618	어음에 대한 이중과세 제한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31일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9, Ausgabetag 30.08.1990
627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1990년 8월 23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7, S. 1324
635	신탁관리법 3차 시행령–국유농장, 국유산림사업장, 국유사육장 재산의 이전	1990년 8월 29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신탁관리청, 동독 농림식품부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7 – Ausgabetag 4. September 1990
636	사회보험법 시행 지침–주보험청의 구축	1990년 8월 20일	동독 노동사회부 차관 코한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7 – Ausgabentag: 4. September 1990
656	직업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미고용 상태인 청소년들의 일반학교 교육 재개에 대한 지시	1990년 8월 14일	동독 교육 · 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7 – Ausgabetag: 4. September 1990
657	직업학교 내 청소년 대상 1년 기간 교육과정 설치에 대한 지시–동독 교육 · 학술부	1990년 8월 14일	동독 교육 · 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7 – Ausgabetag: 4. September 199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65	베를린 협동조합은행의 회칙에 관한 지침 2	1990년 8월 23일	동독 재무부 장관대리 마센 차관, 동독 재무부, 동독 경제부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8, S. 1426, Ausgabetag 07.09.1990
666	동독의 병원재정법	1990년 8월 30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9 – Ausgabetag: 14. September 1990
670	국영기업의 부채탕감 조치에 관한 규정-탕감규정	1990년 9월 5일	동독 내각위원회,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재무부 차관 베르너 슈코프론, 신탁관리청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9, S. 1435–1436, Ausgabetag 14.09.1990
702	화폐전환에 따른 차액보전을 위한 기금 설치에 관한 법	1990년 9월 13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베를린 국가은행, 동독 재무부 장관, 서독 연방 재무부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61, S. 1487–1488, Ausgabetag 19.09.1990
708	보험 혜택에 관한 의료보험회사와의 계약관계에 대한 법-의료보험계약법	1990년 9월 13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61 – Ausgabetag: 19. September 1990
710	의료보험회사 설립법	1990년 9월 13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61 – Ausgabetag: 19. September 1990
715	퇴직 내각위원회 구성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과도기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8월 8일	총리실 장관 라이헨바흐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62 – Ausgabetag: 21. September 1990
724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연방주의 입법권 영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방송과도규정	1990년 9월 14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자비네 베르그만-폴 의장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63, vom 26.09.1990, S. 1563 ff
732	학교 및 직업학교 관련 원칙과 규정에 대한 명령-임시 학교령	1990년 9월 18일	동독 내각위원회,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 · 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63 – Ausgabetag: 26. September 1990
733	교원양성에 관한 명령(동독)	1990년 9월 18일	동독 내각위원회,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 · 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63 – Ausgabetag: 26. September 1990
734	대학교에 대한 법령(임시 대학교령)	1990년 9월 18일	동독 내각위원회,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 · 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Gesetzblatt Teil I Nr. 63 – Ausgabetag 26. September 1990
1011	홍보처의 구조개혁과 정부 대변인의 기능과 업무에 관한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	1989년 11월 30일	동독 내각위원회, 홍보처, 동독 언론홍보국	Bundesarchiv, BArch/DC 20-I/3/2874; 3. Sitzung des MR vom 30. Nov. 1989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012	동독 주재 외국 기자의 활동 규정에 대한 내각위원회의 새로운 결정	1989년 11월 30일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외무부, 홍보처 정부 대변인	Bundesarchiv, BArch/DC 20-I/3/2874; 3. Sitzung des MR vom 30. Nov. 1989 (geänderte Blattreihenfolge)
1013	의견, 정보, 언론의 자유 보장에 관한 동독 최고인민회의 결정을 위한 입법위원회의 미디어법 초안(발췌)	1990년 1월 9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http://www.ddr89.de/ddr89/texte/medien.html vom 08.06.2010
1014	농업, 임업, 식료품 분야의 경제 개혁의 준비와 실현을 위한 방안-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2월 15일	동독 내각위원회, 농림부 장관 한스 바첵	Bundesarchiv, BArch/DC 20-I/3/2913, fol. 86-130
1015	동독 정부 보도 및 정보서비스 규정-내각위원회 결정	1990년 2월 22일	동독 내각위원회, 홍보처 정부 대변인	Bundesarchiv, Barch/DC 20-I/3/2919; 15. Sitzung des MR vom 22. Febr. 1990
1016	동독 방송 임시 정관	1990년 3월 15일	동독 방송, 동독 내각위원회	Funkhaus Berlin (Hg.). Radio im Umbruch – Oktober 1989 bis Oktober 1990 im Rundfunk der DDR, Darstellungen, Chronik, Dokumentation, Presseresonanz, Berlin 1990, S. 373-377. Zitierweise: "Internet: JournalisMus" (www.journalis-mus.de; Stand 26. April 2016)
1017	주 재편을 포함한 동독 내 주 신설에 관한 법 제안을 위한 결의문	1990년 5월 2일	동독 내각위원회	Bundesarchiv, DC 20-I/3/2947, 4. Sitzung des MR vom 2. Mai 1990
1018	독일우편의 요금 체계의 개혁에 관한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6월 6일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체신부 장관 에밀 슈넬, 동독 총리실 장관 라이헨바흐	Bundesarchiv, DC 20-I/3/2980
1019	독일우편의 새로운 요금 체계 도입에 대한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6월 13일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체신부 장관 에밀 슈넬, 동독 총리실 장관 라이헨바흐	Bundesarchiv, DC 20-I/3/2990
1020	환경기초법에 대한 피카르트 차관의 최고인민회의 발언	1990년 6월 15일	동독 환경부 차관 피카르트, 동독 최고인민회의	Bundesarchiv, Barch/N 267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021	환경기본법–최고인민회의 1차 심의	1990년 6월 15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환경부 차관 피카르트, 최고인민회의 의원들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14. Tagung, S. 518–527
1022	동독과 서독의 화폐 · 경제 · 사회연합 설립 조약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의회 독일통일위원회의 입장 및 권고	1990년 6월 18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독일통일위원회	Drucksache Nr. 24 a der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1023	환경기초법–동독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을 위한 동독 내각위원회의 제안 및 초안	1990년 7월 1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Drucksache Nr. 65
1024	동독 민법(ZGB) 개정과 보완에 관한 법(민법개정법)	1990년 7월 20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0. Wahlperiode. Drucksache Nr. 72a. 22.07.1990.
1025	동독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관한 과도규정–내각위원회가 제출한 발의안에 대한 최고인민회의의 1차 심의	1990년 7월 20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각위원회, 언론정책부 장관 뮬러, 최고인민회의 의원들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26. Tagung (Stenografische Niederschrift)
1026	'국유재산, 산림 및 농림산업 기업의 소유권을 주와 기초단체로 이전하는 법'과 '경작 중인 국유지의 소유권과 소작권을 협동농장, 협동농장의 구성원 및 다른 시민에게 이전하는 것에 관한 법'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토론	1990년 7월 20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농림식품부 장관 폴락, 최고인민회의 의원들	Bundesarchiv, BArch/DA 1 / 00 C 277; Volkskammer der DDR, Plenarprotkoll der 26. Tagung, 10. Wahlperiode, 20.07.1990
1027	동독 문화유산 보호법 시행령–문화유산보호법	1990년 8월 15일	동독 내각위원회, 내무 장관대리 페터–미하엘 디스텔	Bundesarchiv, BArch/DC 20–I/3/3046
1028	방송 시청료 인상–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의	1990년 8월 15일	동독 내각위원회, 미디어정책부 차관 베커	BArch, DC 20–I/3/3047, 25. Sitzung des MR vom 15. Aug. 199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029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연방주의 입법권 영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안– 최고인민회의 2차 심의	1990년 9월 13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슈바르츠 의원, 언론미디어상임위원회 대변인, 사민당 힐스베르그 의원, 민사당 비스키 의원, 녹색당 바이스 의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회프너, 동독 내무부 디스텔 장관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35. Tagung, S. 1713–1716.

문서 요약

문서 요약(문서번호 35~1029)

본 총서에 수록되지 않은 기타 정책문서는 첨부 CD 참조

문서 번호 35

서독과 서베를린 거주 주민의 동독 여행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서독과 서베를린 주민의 동독 여행을 새롭게 규정한 시행령이다. 이 법을 통해 서독 주민은 비자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동독지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그들에게 치외법권적인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1989, Teil I, Nr. 26, S. 271-272

문서 번호 37

동독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관한 내각위원회의 결정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라디오, 텔레비전 조직에 대한 내각위원회의 새로운 결정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각위원회는 1989년 12월 21일에 기존의 '텔레비전 라디오 국가위원회'가 내각위원회 산하기관이며 그 명칭을 '동독 텔레비전'과 '동독 라디오'로 개칭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기구의 책임자는 내각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으며, 이 기구 자체는 국가위원회의 후속기관으로서 법인화된다. 내각위원회가 1968년에 텔레비전 라디오 국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도입하였던 결정은 1989년 12월 31일 자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26; Ausgabetag 29. Dezember 1989

문서 번호 44

동독 주민의 개별 여행을 위해 1990년에 제공될 외환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 장관 우타 니켈, 동독 중앙은행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말에 한스 모드로우 총리가 이끌던 동독 개혁 정부의 재무 장관이 동독 주민의 사적 외국여행을 위해 필요한 외환에 관해 내린 조치이다. 이 조치는 동독에 거주하는 동독 주민뿐만 아니라 업무상 외국에 거주하는 동독 국민 그리고 동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상호경제협력조약을 체결한 코메콘의 회원국들의 화폐는 헝가리만 제외하고 모두 무제한으로 구입 가능하다. 그를 위한 수수료는 구입액의 2%이며 동독 중앙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환전할 수 있는 외화는 200 서독 마르크까지이다. 100 서독 마르크까지는 동독 마르크와 1:1의 비율로 구매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금액은 400%, 즉 1:5의 비율로 계산해서 서독 마르크를 구입할 수 있다. 14세 이하의 아동은 50 서독 마르크까지 구입할 수 있다.

여행 경비는 동독 중앙은행과 중앙은행이 위임한 기관 그리고 서독과 서베를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여행 경비를 위한 외환 구입 사실은 동독 주민은 신분증, 외국인은 체류허가 또는 사회보장번호 또는 어린이 예방접종증명서에 기록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86-277, Ausgabetag 29.12.1989

문서 번호 45

동독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1990년에 동독에 체류하면서 동독 마르크를 구입하는 것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 장관 우타 니켈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말에 한스 모드로우 수상이 이끌던 동독 개혁정부의 재무 장관이 외국에 영주하는 주민이 1990년에 동독에 체류하면서 동독 마르크를 구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동독의 관청에 관한 규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3:1의 비율로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를 교환할 수 있다(동독 마르크 3: 서독 마르크 1). 이들이 구입한 금액은 은행이 확인서를 발부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위의 기관에서 은행확인서를 제출하고 다시 환전하거나 예치해 둘 수 있다. 동독을 떠나면서 사용하지 않은 동독의 화폐를 다시 동독으로 가지고 들어올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한다. 동독 마르크의 판매와 구입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77, Ausgabetag 29.12.1989

문서 번호 95

동독 지방조직, 기관을 위한 융자 시행령

1990년 1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중앙은행장 호스트 카민스키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한스 모드로우 정부가 지방의 행정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지방조직을 위해 농업은행과 저축은행 협동조합을 통해 융자를 보장해 주기로 하는 시행령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융자금은 한편으로 지역 주민의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역의 경제 시설과 서비스 시설을 현대화, 합리화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지역의 난방을 위한 발전소 등을 위해서도 투자될 수 있다. 융자금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투자사업에도 사용될 수 있다. 융자금과 관련된 기록에는 목적, 액수, 상환 방식 그리고 융자가 필요한 이유 등을 정리해 둔다. 융자계약에는 목적, 금액, 상환일, 이자율, 상환방식 및 담보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6, S. 35-36, Ausgabetag 08.02.1990

문서 번호 106

직업알선 기간 동안 제공되는 국가보조와 기업에 의한 지원금에 대한 시행령

1990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노동임금부 장관 하넬로레 멘쉬, 교육부 장관 한스-하인츠 에몬스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과도개혁 정부가 동독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주민 중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 규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2개월 이상 사회보장비를 포함한 세금을 납부한 근로자는 실직을 신고할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일자리를 알선받을 권리가 있다. 실업급여는 매달 500 동독 마르크이며, 파트타임 근로를 통해 수입이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감액된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고용관계의 변화에 관해 즉각적으로 노동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 시행령은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며,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재무 장관이 결정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7 – Ausgabetag: 12. Februar 1990

문서 번호 107

조기정년연금의 보장에 관한 시행령

1990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노동임금부 장관 하넬로레 멘쉬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주민과 동독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조기정년연금제도의 시행령이다. 조기정년연금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근로자는 정년을 5년 남긴 연령에 있는 사람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사람들로 적어도 25년간(여성의 경우 20년간) 실업보험을 납입한 사람이다. 조기정년퇴직은 각 기업에서 결정하며 마지막 순 급여의 70% 또는 적어도 500 DM을 받게 된다.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가 그 비용의 50%를 공공예산에서 지원한다. 생산협동조합은 총회를 통해 이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관해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집행지침은 동독의 노동임금부 장관이 그리고 재정과 관련된 것은 재무 장관이 지침을 내리도록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7 – Ausgabetag: 12. Februar 1990

문서 번호 122

1990년 3월 18일 동독 인민의회 총선에 관한 법

1990년 2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치러진 최초의 자유총선거에 관한 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회의는 400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진다. 의원들은 자유와 평등의 기반 위에서 비밀선거를 통해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에 따라 선거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선거위원회는 1990년 2월 2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선거위원회는 각 정당과 정치단체가 선거구의 선거위원으로 제안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선거위원 중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된다. 선거위원회의 구성은 공식적으로 공표된다.

선거지역은 15개의 선거구로 구분된다. 선거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구성되며 1990년 2월 22일에 최고인민회의가 결정한 바에 따라 1990년 2월 24일까지 투표소를 결정하도록 한다. 각 정당과 정치단체들은 1990년 2월 20일까지 선거명부를 제출하고, 선거위원회는 이것을 3일 내에 검토하도록 한다. 선거에 참여할 정당과 단체의 명단은 1990년 3월 9일까지 확정하도록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1990 Teil I, Nr. 9, S. 60.

문서 번호 123

정당과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법(정당법)-동독

1990년 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새로운 정당법이다. 이 법은 1990년 3월에 있을 최고인민회의 자유총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에 따라 정당활동이 규정되며 독립적인 정당들이 민주적인 기본원칙과 의무를 지키며, 서독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만 한다.

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모든 정당은 동일하게 대우받고, 동일한 기회를 보장받는다.

모든 정당은 정관을 만들고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게 활동해야만 한다. 정당의 수입과 지출은 재정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어야만 한다.

이 법은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이 발효되면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1990 Teil I Nr. 9, S. 66., in der Version mit markierten Änderungen aus: http://www.verfassungen.de/de/ddr/parteiengesetz90.htm (Stand: 11.05.2018)

문서 번호 133

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교육 시행령

1990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노동임금부 장관 하넬로레 멘쉬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주민과 동독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직업 재교육 실시에 관한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에는 노동임금부는 재교육의 수요와 규모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교육부와 산하기구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해당 노동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재교육 기간에는 실업연금이 지급되며 사업장과 교육시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1 – Ausgabetag: 2. März 1990

문서 번호 134

인사기록 서류 처리에 관한 시행령

1990년 2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 정부가 인사기록카드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도입한 시행령이다. 인사기록카드에는 개인의 이력과 경력, 건강 상태 그리고 간부의 경우에는 정치적 성향까지도 기록되어 있다. 이 서류를 본인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본인이 허용할 때에만 제삼자가 열람하는 것을 허용한다. 벌칙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기록카드에서 삭제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1 – Ausgabetag: 2. März 1990

문서 번호 142-143

직업알선 기간 동안 제공되는 국가보조와 기업에 의한 지원금에 대한 시행령의 1차 및 2차 시행지침

1990년 2월 16일, 22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지게어트

내용_

이 문서는 국가가 실업자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은행구좌 또는 우편은행 구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지시하는 1차, 2차 시행지침이다.

1차 지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보조금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매월 지급된다. 이들 기업들은 해당 수령자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조금과 기업보조금의 액수를 포함한 모든 서류와 정보를 노동청에 제출해야만 한다. 국영기업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임금기금에서 지출된다.

2차 지침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또한 국가지원금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 실업자 또한 국가지원금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청에 의해 알선된 새로운 직장의 업무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개별적인 조건들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구직자가 받은 교육 및 직업훈련에 상응하는 수준의 업무가 보장될 경우 새로운 일자리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구직기간이 6개월을 넘은 경우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100% 근무를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2 – Ausgabetag: 6. März 1990

문서 번호 144-145

조기정년연금의 보장에 관한 시행령의 1, 2차 집행지침

1990년 2월 16일, 3월 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지게어트

내용_

이 지침은 1990년 2월 8일에 발효된 조기정년퇴직금을 보완하는 집행지침이다.
1차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기정년연금은 국가기관, 기업, 협동조합 등에 의해 모든 근로자와 종업원 그리고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전액 제공된다. 국영기업이 지급할 조기정년연금은 기업과 국가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2차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기정년연금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상실하였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이유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이다. 새로운 일자리의 적절성은 건강상태와 자격 정도 그리고 주거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2 – Ausgabetag: 6. März 1990

문서 번호 152

인민 소유 재산 신탁관리 기관의 신설에 대한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3월 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내용_

이 문서는 한스 모드로우 총리가 이끄는 동독의 개혁 내각이 인민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신탁관리청을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탁관리청은 정부 산하 기관으로 각 지역에 지부를 두게 된다. 신탁관리청은 1990년 3월 1일 자로 국가경제등기부에 인민 소유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신탁관리청은 자본회사의 설립자로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신탁관리청은 나아가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다. 도시와 지역 단위의 기초단체에 속한 기업, 시설, 우편철도 등 국영기업과 협동농장이 이용하고 있는 인민재산은 신탁관리청의 관리대상이 아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90 Teil I, Nr. 14, S. 107

문서 번호 154

동독 헌법 중 노동조합 관련 개정안

1990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만프레드 게어라흐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의 최고인민회의가 헌법 중에 노동조합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44조 개정: 1.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초당적이며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단체이다. 2. 노동조합의 활동은 제한되거나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3. 파업권은 보장되며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5조 2항: 1.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법률 규정을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5 – Ausgabetag: 12. März 1990; (Vorherige Fassung Art. 44 u. 45: www.verfassungen.de/de/ddr/ddr74-i.htm (Stand 11.08.2014))

문서 번호 155

동독 노동조합의 권리에 관한 법

1990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만프레드 게어라흐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에 도입된 노동조합법이다. 그에 따르면 동독의 모든 주민은 노조에 가입할 자유와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노조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으로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며 구조도 스스로 결정한다. 노조는 다양한 형태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노조는 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수입을 확보할 수도 있다. 자체적인 미디어를 보유할 수도 있다. 노조는 회원비, 기부금 그리고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된다.

노조와 지도부의 업무는 제한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며 노조 대표에게는 사업장과 관련된 서류와 당사자의 동의하에 인사카드를 보는 것이 허용되어야만 한다. 노조는 근로자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법안을 발의할 권리를 갖는다. 나아가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 노조는 나아가 회원 개인의 법률적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각 법률보호(Rechtsschutz) 조항을 유지하며, 임금협상에서 조정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노동조합은 파업할 수 있다. 이 법은 나아가 사업장 노조 대표들이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과의 관계에서도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쓰도록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5 – Ausgabetag: 12. März 1990

문서 번호 159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은행 감독과 대출에 관한 4차 규정

1990년 3월 2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한스 모드로우 수상이 이끄는 과도개혁 정부가 결정한 대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다. 이 규정은 1982년 1월 28일에 도입된 대출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이 개정을 통해 대출계약 체결 시 담보에 관해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담보로 제공된 것을 경매할 수 있고 보증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었다. 담보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문서를 작성하며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은 토지대장에 기록하도록 한다. 이미 제공된 대출의 경우 은행이 기존의 대출계약에 추가사항을 서면으로 기입하기를 요구할 수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15, S. 114, Ausgabetag 12.03.1990

문서 번호 172

동독 국가은행 개정법

1990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_ 현직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만프레드 게어라흐, 동독 국립은행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국가은행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을 통해 1974년 12월 19일에 도입된 국가은행법이 개정된 것이다. 새로운 법에 따라 동독의 국가은행은 동독 발권은행의 기능과 함께 신용은행의 역할을 함께 하게 된다. 국가은행은 화폐의 안정성을 감시하며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으로 법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시중은행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역할도 담당한다. 다른 국가들이 동독 영토에서 은행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국가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16, S. 125-126, Ausgabetag 12.03.1990

문서 번호 173

문화예술 지원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동독 최고인민회의 결정

1990년 3월 7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말로이다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개혁기 동독의 최고인민회의가 장관회의에 동독의 문화예술이 독일의 민족문화에 기여할 성과를 보존하기 위한 법안을 작성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한 법안을 통해 국가가 문화와 예술을 지원·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자 했다. 동독은 문화 국가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독의 문화와 예술은 독일, 유럽, 나아가 세계문화의 일부이며, 그로써 보존되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으로 보장해 주어야만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과 시설을 갖추고,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 주민이 보유한 문화재의 이용은 국가가 장려해 주고 재산세와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Nr. 1990 I/16, Seite 126

문서 번호 177

토지개혁을 통해 획득한 소유권에 관한 법

1990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만프레드 게어라흐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 국가위원회가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의 소유권, 이용권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1975년 6월 17일에 도입된 민사법의 규정이 유효하다고 확정한 법이다. 이 법을 통해 해당 토지의 이용권에 대한 제약이 제거되고, 토지개혁 대상이었던 토지 소유권자의 변경에 관한 1차, 2차 규정도 해제되었다. 농지의 이용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1981년 2월 26일 도입된 토지이용 규정이 적용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7, S. 134 – Ausgabetag: 16.03.1990

문서 번호 178

국유 농지의 소유권을 협동농장에 이전하는 법

1990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만프레드 게어라흐

내용_

이 문서는 협동농장이 현재 경작, 이용하고 있는 국가 소유의 농지의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법이다. 그를 위한 조건과 절차는 장관의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다. 그러나 국유동산, 주말농장으로 이용되는 토지, 개인주택의 대지, 국가기관, 사업체 및 다른 시설에 이용권이 양도된 토지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7, S. 135 – Ausgabetag: 16.03.1990

문서 번호 179

국가규정으로 인해 많은 채무를 지게 된 협동농장의 지원에 관한 법-협동농장지원법

1990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만프레드 게어라흐, 농림부

내용_

이 문서는 국가의 규정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된 협동농장과 부속 기관들에게 국가예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협동농장들이 동등한 발전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에는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협동농장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언급되어 있다. 정확한 조건과 절차는 별도로 정해지게 된다. 이 법의 집행은 농림부가 재무부와 합의하에 책임지게 된다.

지원된 금액은 채무의 변제 및 이자 납부를 위해 사용되어야만 한다. 협동농장은 이런 지원을 통해 증가하게 될 자기자본을 생산시설과 생산구조의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농림부가 국가예산계획의 틀에서 신청하고 최고인민회의에 그 사용처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7, S. 135 – Ausgabetag: 16.03.1990

문서 번호 180

동독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개정안

1990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_ 현직 동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만프레드 게어라흐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1990년 3월에 발표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의 개정안이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17, S. 136-137, Ausgabetag 16.03.1990

문서 번호 187

동독 수공업조직에 관한 규정

1990년 2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경공업부 장관 군타 할름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수공업협회를 새로이 조직하는 것에 관한 시행령이다. 동독에서 수공업자는 법적으로 등록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이 시행령은 모든 수공업자와 수공업사업체의 이익단체인 수공업자협회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협회의 각 직종과 전문그룹의 협력을 지원하게 된다. 수공업협회의 회장단은 5년마다 선출되게 되었다.

출처_ Gesetzblatt Teil I Nr. 17 – Ausgabetag: 16. März 1990

문서 번호 193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기업과 노동청의 의무, 권리 그리고 과제에 관한 시행령

1990년 3월 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노동임금부 장관 하넬로레 멘쉬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노동청의 업무와 노동권 보호에 관련된 시행령이다. 노동청은 국가기관으로 정부의 노동임금부 산하 중앙노동행정청에 소속된다. 노동청의 과제는 국민이 자신의 노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원하며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과 기초단체의 노동청 지소는 명예직 자문을 초빙하여 소장을 도와주도록 한다. 지역의 노동청 지소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을 위한 노동허가를 심사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8 – Ausgabetag: 19. März 1990

문서 번호 195

사회보조 혜택에 관한 4차 시행령

1990년 3월 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보건부 장관 클라우스 틸만

내용_

이 문서는 1979년 11월 23일에 도입된 사회보조에 관한 시행령을 네 번째 개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을 통해 구동독지역에서 처음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이 사회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게 되었다. 사회보조금으로 매달 독신에게 300마르크, 부부에게는 500마르크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양육비가 지급된다. 나아가 연금생활자를 위한 월세보조금도 지급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8 – Ausgabetag: 19. März 1990

문서 번호 236

동독 조세법 개정안

1990년 3월 16일

담당자 / 기관_ 현직 재무부 장관 발터 지게어트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1990년 3월에 발표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의 개정안 시행령이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21, S. 195-197, Ausgabetag 30.03.1990

문서 번호 251

1990년 외환기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

1990년 3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부 장관 게어하르트 바일

내용_

이 문서는 한스 모드로우 수상이 이끄는 동독 과도개혁 정부의 대외교역부 장관 바일이 1990년 3월 15일에 발표한 1990년도 무역거래와 관련된 외환기금을 보장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 규정은 나아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진 수출에도 적용된다. 동시에 1989년 8월 23일에 수출진흥을 위해 도입되었던 외환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규정은 동독 기업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기금의 통제 이용에 관해 결정한다. 이 기금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위한 비용도 지출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이 규정의 제1조에 명기되었다. 각 사업체는 수출한 금액만큼 이 기금에서 지급받는다. 소련을 제외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로 수출한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가치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기금을 통해 지급받는다. 다른 규정들은 NSW지역으로의 수출에 관해 규정하며 그 액수는 시장가치의 3% 또는 5%이다. 1989년과 비교하여 NSW지역으로의 수출량이 증가한 기업은 증가분의 50%를 이 기금을 통해 지급받는다. 이 기금은 생산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물자의 수입과 노동조건 및 삶의 조건의 향상, 출장여행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기금은 상업은행의 외환구좌를 통해 운용된다. 각 사업체와 콤비나트에 의해 동독 마르크로 환원되는 이 기금의 재정은 순이익과 수출특별지원금에 의해 충당될 수 있다. 수입은 대외거래회사가 전적으로 담당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22, S. 213-215, Ausgabetag 07.04.1990

문서 번호 270

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 규정

1990년 3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중앙은행장 호스트 카민스키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중앙은행장 호스트 카민스키가 동독의 저축금고협회의 회칙을 승인하기 위해 내린 지침이다. 이 지침의 부록에서는 저축금고협회의 회칙이 포함되어 있다. 회칙은 저축금고협회의 법적 지위와 협회의 소재지, 업무와 권한, 조직, 이사회, 총회와 자문위원회, 협회 지도부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24, S. 233-236, Ausgabetag 25.04.1990

문서 번호 286

직업알선 기간 동안 제공되는 국가보조와 기업에 의한 지원금 시행령의 3차 규정

1990년 4월 27일

담당자 / 기관_ 노동사회부 장관 레기네 힐데브란트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2월 8일에 도입된 시행령을 보완하는 규정이다. 1조와 2조는 지난 3년 사이에 퇴직하거나 1989년 12월 8일 이후 정년퇴직한 사람의 연금문제, 5조에서는 군대복무 기간의 연금계산 문제 그리고 6조에서는 지원금 지급 중단에 관한 보완책이 도입되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27 – Ausgabetag: 22. Mai 1990

문서 번호 289

동독의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의 자치행정에 관한 법(기초단체법)

1990년 5월 17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1990년 5월 17일에 도입한 기초단체법이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부: 기초단체로서의 게마인데 규정

– 게마인데는 지역단체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게마인데는 주변지역인 크라이스를 갖고 있는 소규모의 시(Stadt)와 군(Gemeinde) 그리고 크라이스가 없는 대규모 시(Stadt)를 의미한다.
– 자치행정: 게마인데는 지역 공동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자치적으로 규정하고 그와 관련된 법을 결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재정자원의 확보
– 공동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주민제안, 주민결정 그리고 주민투표
– 게마인데의 평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이며 게마인데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게마인데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책임진다.
– 지역 단체장(주민대표-기초단체장): 게마인데 평의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겸 게마인데 행정의 수장
– 예산권
– 직접적인 경제활동과 경제활동에 참여
– 감사

- 2부: 지역단체 란트크라이스 규정

– 란트크라이스는 지방자치행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적인 문제를 관장한다. 란트크라이스는 법률의 틀 내에서 자체적인 책임하에 게마인데의 영역을 넘어서는 과제를 담당한다.
– 란트크라이스의 조직으로는 크라이스 의회(Kriestag)와 란트라트(Landrat)가 있다.
– 크라이스 의회: 주민 대표기관으로 란트크라이스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 위원회: 크라이스 의회는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상설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의사결정권을 갖기도 하며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 란트라트: 크라이스 행정의 수장으로 크라이스위원회의 위원장이다.
– 크라이스의 경제
– 감사

- 3부: 과도기 규정과 최종규정

– 장관회의는 이 법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인민회의는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의 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한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1990 I/28. S. 255ff

문서 번호 295

국가규정으로 인해 많은 채무부담을 안고 있는 협동농장의 지원 보장에 관한 명령

1990년 5월 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농림부 장관 페터 폴락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 개혁정부의 농림부 장관이 사회주의 국가경제의 특이한 운영방식으로 인해 은행장부상에 많은 채무를 안고 있는 협동농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1990년 3월 6일의 법률의 시행과 직결된 것이다. 이 명령은 협동농장의 채무를 탕감해 주기 위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기준을 정해 주었다. 그것은 생산조건과 1989년의 연말정산을 통해 드러난 협동농장의 재정상태와 관련된 것이다.

이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협동농장은 1989년 연말정산에 기록된 채무의 30%까지, 예외적인 경우 +P17에는 최대 5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신청서는 지역위원회의 전문 부처를 통해 제출하며, 협동농장은 필요한 기준을 준수한 것을 증명하고 정비계획을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29, S. 271 f. – Ausgabetag: 01.06.1990

문서 번호 317

학교 내 공동운영위원회 및 교장단 구조에 대한 명령

1990년 5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_

이 문서는 드 메지에르 정부가 발표한 학교 운영에 관한 명령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기구 내에서 교육자와 학부모 및 학생들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임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동운영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는 정보, 청문, 자문 그리고 권고의 권한을 지닌다. 학교 내에는 학교회의, 교사회의, 학급회의 및 학생대표단과 학부모대표단이 있어야 한다. 이 위원회의 과제는 (교과 관련해서나 학교 및 학과회의에서와 같은)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규율하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지역단체의 차원에서는 지자체 학교회의, 주 단위의 학교회의 및 이에 상응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특히 주 단위 학교회의는 주교육청에 대해 학교 부문의 발전과 관련한 기본적인 문제들에 자문을 해주고, 법적 혹은 행정적 규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경험을 공유하며,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 등을 통해 학교제도가 계획적으로 발전하도록 기여한다. 이 명령은 나아가 학교공동위원회의 정확한 구성 및 그 구성원의 선출 그리고 위원회 내 활동을 위한 구성원의 자격조건 등을 규정한다.

출처_ Gesetzblatt Teil I Nr. 32 – Ausgabetag: 19. Juni 1990

문서 번호 318

임시 학교감독청 설립령

1990년 5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_

이 문서는 로타 드 메지에르 수상이 이끄는 과도기 개혁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학교감독청의 설립령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서 주 단위의 새로운 지역행정 기구들이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주법을 바탕으로 교육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 때까지, 교육학술부의 감독하에 임시로 주교육청들과 행정구역(Kreis) 교육청들로 구성된 학교감독청을 설립한다. 이 기간 중에는 교육학술부가 최상위의 학교감독청의 역할을 맡는다.

학교감독청은 교사들의 노동계약의 체결, 변경 및 종료, 이들에 대한 감독 외에, 수업업무의 조정 및 통제 그리고 교과 관련 업무 및 그와 관련해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업무의 감독 등을 주관한다. 학교감독청장은 전문성과 풍부한 교육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사회적 법치국가의 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2 – Ausgabetag: 19. Juni 1990

문서 번호 319

사업체에 소속된 유치원 및 종합기술교육학교, 직업학교의 유지에 관한 명령

1990년 6월 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_

이 문서는 로타 드 메지에르가 이끄는 동독의 개혁정부가 발표한 직장 내 교육기관과 탁아시설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조치이다. 드 메지에르 정부는 1990년 3월 18일 자유총선거를 통해 입각한 이후 개혁을 위해 수많은 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했다. 이 명령도 직업교육이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 안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여러 조치 중의 하나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체들은 탁아시설 및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의 종합기술고등학교 교육 그리고 견습생의 직업교육과 관련해 합의된 모든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사업체의 운영 주체가 변경될 경우 법적으로 그 변동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유 관계의 변동과 무관하게 사업체가 자신의 의무와 유치원, 직업교육기관 등의 시설들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운영 주체에게 그 의무를 위임하도록 한다. 후자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체에서 부담한다. 사업체들은 교육시설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적 자금 지원이나 세금 감면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나아가 현재 직업교육 중인 견습생은 직업교육을 주관하는 사업장이 다른 법인에 흡수되거나 없어지는 경우에도 직업교육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사업장이 해체될 경우 기업은 견습생이 다른 사업체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한다.

이 명령에는 사업체가 보유한 부동산과 다른 시설 설비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2 – Ausgabetag: 19. Juni 1990

문서 번호 320

제4조 임금협상단체 및 제7조 노동권 보호 조항 관련 동독 헌법 개정안

1990년 6월 17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내용_

본 동독 헌법 개정안은 한편으로는 임금협상단체 규정 관련 제4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 및 경제적 조건에 대한 규율을 협의할 자유가 분명하게 규정되었다. 임금협상권이 있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또한 본 개정안은 제7조에서 노동권 보호 조항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 노동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된다.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사회적으로는 정의롭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인간 존엄성을 누리며 삶을 영위할 개인의 권리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3 – Ausgabetag: 22. Juni 1990

문서 번호 321

인민 소유 재산의 사유화와 재조직에 관한 법(신탁관리법)

1990년 6월 17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과도개혁 1기 한스 모드로우 정부가 1990년 3월 1일에 신탁관리청을 설립하면서 도입한 인민 소유 재산, 즉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법제도로 정착시킨 것이다. 신탁관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민영화를 통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동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한 것이다.

국유재산 또한 사유화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지역단체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도 있다. 신탁관리청이 우선 국영기업과 시설전환 작업을 담당할 자본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3, S. 300-303, Ausgabetag 22.06.1990

문서 번호 338

사회보조법

1990년 6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내용_

과도기 동독의 최고인민회의는 필요한 경우 국가에 지원을 신청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보조법을 도입하였다. 자력으로 생활비를 벌어들일 수 없는 경우 현금과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은 사회복지정책을 담당할 부서를 갖추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근로 프로그램도 도입되어야만 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5 - Ausgabetag: 27. Juni 1990

문서 번호 343

외국어 수업 강화 학급 신설에 관한 지침

1990년 5월 2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_

이 문서는 드 메지에르 수상이 이끄는 동독 개혁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외국어 수업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내린 지침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1991학년도부터 각 학교는 외국어 수업을 강화한 학급을 신설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결정은 교육학자 및 학부모의 자문하에 교장이 내린다. 물적이나 인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교육위원회가 그런 학급의 신설을 금지할 수 있다. 학생의 능력이 그에 합당하다고 보일 경우,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학생을 외국어 수업 강화 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그에 대한 결정은 교장이 내린다. 외국어 수업은 3학년부터 영어, 러시아어 또는 프랑스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고, 5학년부터는 제2외국어 수업을 시작한다. 학교에 인적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 7학년부터 학생이 제3외국어 수업도 시행할 수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5 - Ausgabetag: 27. Juni 1990

문서 번호 345

동독의 노동지원법

1990년 6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과도기 최고인민회의가 도입한 노동지원법이다. 이 법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경제적 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조를 보면 이 법을 통해 도입되는 조치들이 실업이나 노동력 부족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법을 통해 주어진 과제는 내각위원회의 사회경제정책의 틀 내에서 노동행정청에 의해 실행된다. 여기에는 노동알선, 직업자문, 직업연수, 실업연금 보장 및 노동시장 연구 등이 포함된다. 직업자문과 알선은 노동행정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6 – Ausgabetag: 28. Juni 1990

문서 번호 355

동독 주택건축예금 도입규정

1990년 6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건설부 장관 악셀 피베거,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내용_

이 규정을 통해 동독에서 주택건축예금이 도입되었다. 주택건축을 위한 세금 혜택 및 융자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7, S. 478-479, Ausgabetag 30.06.1990

문서 번호 360

사회보험법

1990년 6월 2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도입을 선포한 사회보험법이다. 이 법의 도입으로 동독의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연금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으로 분리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험납입금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은 1990년 7월 1일 자로 1,400 DM으로 정해졌다. 보험납입금을 현실에 부합하게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노동부가 담당하기로 했다. 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사회보장보험이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의 수준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보험납입금에 따라 결정된다.

이 법의 3부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및 산재보험의 혜택이 명시되어 있다.

사회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와 고용주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공적인 법인체이다. 기존에 있었던 동독의 사회보험은 동독의 의료, 연금, 산재보험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단으로 통합된다. 개별적인 보험공단의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1990년 7월 1일부터는 예산을 분리해서 운영한다. 국가지원금은 제공되지 않는다.

건강의료보험을 위한 재원은 보험납입금으로 충당하며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험납입금 비율은 소득의 12.8%이다. 연금보험은 소득의 18.7%로 정해진 보험납입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며 부족한 재원을 위해 국가지원금이 제공된다. 1990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적자는 국가가 부담한다. 1991년 1월 1일부터 제공되는 국가지원금은 연금지출의 18.8%이다. 산재보험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고용주들이 위험도에 따라 부담하는 납입금으로 충당한다.

8부는 과도규정을 설명한다. 1990년 7월 1일 자로 사회보험과 국가예산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해지된다. 해당업무는 기존의 기구로부터 사회보험공단으로 이전된다.

근로자는 1990년 7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연금보험납입금을 보조받는다.

그 외에도 이 문서를 통해 예산과 납입금 산정 방식을 알 수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8 - Ausgabetag: 4. Juli 1990

문서 번호 363

동서독 화폐통합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법

1990년 6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부, 동독 중앙은행,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경제화폐통합 직전에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통과시킨 법안으로 경제화폐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정부 재무부에 한시적으로 '화폐전환 감사국'을 설치한다. 이 기구는 화폐전환 과정에서 위법행위의 발생여부를 검토한다. 동독의 중앙은행은 동독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누가 10만 마르크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개인구좌에 보유하고 있는지 1990년 7월 6일까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사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감사국은 나아가 동독의 법인체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이 개설한 구좌 중에 보유금액이 25만 마르크를 초과한 구좌를 검토한다. 금융기관의 정보를 검토·정리하는 작업을 서비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감사국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는 경우 해당 형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물을 제출한다. 모든 금융기관은 동독의 법인체 중에서 1990년 6월 30일 현재 보유금액이 25만 동독 마르크 이상이며, 1989년 12월 31일과 1990년 6월 30일 사이에 보유금액이 20만 동독 마르크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필히 감사국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동독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 화폐전환 신청을 제출한 경우 1990년 6월 30일에 보유금액이 5만 동독 마르크를 초과하고, 1989년 12월 31일과 1990년 6월 30일 사이에 3만 동독 마르크 이상 상승한 경우에도 감사국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되는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감사업무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동독 정부 재무부에서 보상해 준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1-502, Ausgabetag 04.07.1990

문서 번호 364

전환예금액 획득의 적법성 증명에 관한 법

1990년 6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화폐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도입한 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화폐전환의 실시에 있어서 신고된 보유예금액의 합법적 취득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그를 위해 최고인민회의 의원 21명으로 구성된 임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가 화폐전환을 위해 신고된 보유금액의 합법적 취득 여부에 의심을 제기할 경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1990년 7월 8일까지 그와 관련된 요구를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검토하고 1990년 10월 1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그와 관련하여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의심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다.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주 내에 항의서를 제출하여 결정사항의 실행을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항의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2주 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별위원회에서 그 항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단이 2주 내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3, Ausgabetag 04.07.1990

문서 번호 366

베를린 국가은행법

1990년 6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동독 재무부 장관, 동독 총리, 서독 재무부 장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중앙은행의 후속기관으로 설립된 베를린 국가은행에 관한 법이다. 이 은행의 지주는 동독 국가이다. 동독 국가는 이 은행의 부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며 이 은행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이 법을 통해 은행 대출의 인수자와 인수 시기가 규정되었다. 이 은행은 특히 화폐경제공동체의 도입 이후 동독과 서독 간의 화폐안정 문제, 신탁청을 포함한 법인체와 공공기관의 은행거래 문제, 공공사업의 재정과 동독의 경제 인프라, 주택환경 역량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공지원 사업의 재정 조달 그리고 국제 무역과 금융거래, 국제금융기구 참여, 은행 간의 거래 등을 관할한다. 베를린 국가은행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화폐 대출시장을 통해 리파이낸스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하고 융자를 얻을 수도 있고 다른 금융기관 또는 사업체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 은행 업무의 주목적은 이윤을 내는 것이다. 은행의 기구로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동독 총리에 의해 임명되며 회칙의 변경은 총리에 의해 승인되어야만 한다. 연간 수입을 통해 조성되는 예비금에 대해서는 동독 정부의 재무 장관이 결정한다. 재무 장관은 나아가 은행에 대한 국가의 감독기능도 수행한다. 통일 이후에는 베를린 국가은행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연방정부의 재무 장관에게 넘겨진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4-505, Ausgabetag 04.07.1990

문서 번호 367

노동권 분쟁의 조정관 절차 도입법

1990년 6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과도기 최고인민회의가 노동법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조정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법이다. 그에 따라 5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조정관직이 설치되었다. 조정관과 부조정관은 고용주와 사업장평의회가 균등하게 초빙한다. 조정 절차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개적으로 조정에 착수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8 - Ausgabetag: 4. Juli 1990

문서 번호 369

무역과 자본 및 금융거래에 관한 규정

1990년 6월 2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이하 동독) 내각위원회, 경제부 장관, 외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무역부 장관, 식량·농지·산림부 장관, 교통부 장관, 환경·자연보호·에너지·핵안전부 장관, 미디어정책부 장관, 문화부 장관, 재무정책 조정관, 관세청 (이하 서독) 독일연방은행

내용_

이 법안은 화폐통합 과정에서 자본과 금융거래를 규정하는 것으로 총 네 파트로 구성되었다: 1. 법률 규정과 실천, 2. 보충조항, 3. 형사처벌과 감독에 관한 규정, 4. 결론과 과도기 규정. 제1부에서는 일반적인 조항을 다루고 있으며 물자거래, 서비스거래, 자본거래 그리고 금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과 거래 제한 가능성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을 포함한다. 이 법은 나아가 거래 제한과 거래 허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범법 행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9, S. 515-524, Ausgabetag 09.07.1990

문서 번호 392

외국 무역을 위한 자본과 지불 교류에 관한 규정

1990년 6월 2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경제부 장관 게어하르트 폴, 동독 관세청, 동독 재무정책 조정관, 독일 대외무역은행

내용_

이 규정을 통해 동독의 무역을 위한 자본 및 지불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41, S. 600-616, Ausgabetag 17.07.1990

문서 번호 393

사회보험납입금과 세금의 산정방식 및 기타 기관에 관한 규정-자율적인 계산 규정

1990년 6월 27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 정부가 발행한 시행령으로 세금과 사회보험납입금 그리고 다른 공과금의 계산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조.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재산세 그리고 사회보험, 산재보험을 납부하는 사람은 세금정산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언급된 세금과 사회보험납입금, 산재보험금 등을 스스로 계산하여 연말 세금정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연간 2,000마르크를 초과하는 부수입이 있는 경우 연말 세금정산에 보고하도록 한다.

2조. 납입해야 할 세금은 스스로 계산하여 해당 세무서에 납입한다. 연간 납입해야 할 세금이 2,000마르크를 초과할 경우 4분기로 분할해서 납입할 수 있다.

3조. 세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연간 세금의 액수를 결정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41, S. 616-618, Ausgabetag 17.07.1990

문서 번호 394

국유 콤비나트에서 자본회사로 전환된 기업의 1990년 후반기 세금 납부에 관한 규정

1990년 6월 27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과도정부가 자본회사로 전환된 국영 콤비나트가 1990년 후반기에 납부할 세금에 관한 규정으로 여기에는 법인세, 영업세, 재산세 그리고 세금정산 문제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그전까지 존재하던 법과 규정들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설명하였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41, S. 618-619, Ausgabetag 17.07.1990

문서 번호 396

사립 탁아시설 운영 규정

1990년 6월 27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민주정부 내각이 발표한 사립 유치원과 탁아시설의 과제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아동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다양한 과제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 시설은 교육적, 조직적으로 아동과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사립 시설은 국가관청과 협조해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 먼저 탁아시설 운영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탁아시설은 기초단체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탁아시설이 아동 복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닐 경우 국가관청에 의해 운영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출처_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41

문서 번호 402-404

사회보조법 1차-3차 시행령

1990년 6월 21일

담당자 / 기관_ 가족여성부 장관 크리스타 슈미트

내용_

동독 과도정부의 가족여성부 장관 크리스타 슈미트는 1990년 6월 21일 사회보조법의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1차 시행령에서 가정의 가장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조금이 월 400마르크로 규정되었고, 2차 시행령에서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액수가 결정되었다. 3차 시행령에서는 요양원,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보조금의 액수가 결정되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41 – Ausgabetag: 17. Juli 1990

문서 번호 407

사회적 시장경제에 동독의 농업의 적응을 지원하는 법-지원법

1990년 7월 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내용_

이 법은 농업기업, 농업 분야에서 가족기업의 창업, 생산과 시장구조의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해고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법은 이후에 통일조약에 수용되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42, 20.07.1990, S. 633-634

문서 번호 413

농업식품산업의 생산물을 위한 시장조직의 구축과 실현법-시장조직법

1990년 7월 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내용_

이 문서는 유럽공동체의 시장 체계에 따라 동독의 농식품산업 생산품을 위한 시장조직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법이다. 이 법에는 가격지원과 농산물시장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장질서 조치의 목적은 이 법의 2조에 언급되어 있다.

3조는 시장질서를 위한 조치와 투자, 특히 우대 조치, 가격결정과 생산량을 다룬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은 우대받은 것을 반환하도록 한다(4조). 5조에서는 특별우대에 대한 이자를 규정한다.

6조에서 8조까지는 시장조직의 구축에 관한 규정의 관할기관에 대한 내용이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42, S. 657-659 - Ausgabetag: 20.07.1990

문서 번호 414

기초자치단체, 도시, 광역자치단체 재산법(지방자치단체 재산법)

1990년 7월 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동독 기초자치단체, 동독 광역자치단체

내용_

- 동독에는 개인 소유물이 거의 없었다. 민주화 이후 지방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무엇이 기초자치단체의 소유이고, 광역자치단체의 소유인지, 혹은 개인 소유인지 규정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명확히 하는 소유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 이러한 측면에서 법에는 공공 업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 시, 광역자치단체 기관에 인민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공공교육기관의 기숙사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었다.
- 법은 특별히, 어떤 재산이 이전될 수 있는가에 대해 규정하는데, 예를 들어 기업, 토지, 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구분되었다. 그들은 교통기관, 전기, 수도와 같은 기초기관, 극장, 박물관, 병원 등과 같은 지방기업, 지방기관의 소유주가 되었다(§6).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이전 절차는 명문화되었고 시장과 주의회의 이의제기가 고려된다(§8).
- 지방재산의 종류와 이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는데, 즉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수익목적의 이용, 효과적인 공공 영향, 재정관리 등이 보장되었고 공공 목적이 강조되었다(§5).
- 법은 민간회사, 민간인, 그들의 유족이 공공재산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와 관련된 특별규정을 포함하고 있다(§4).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lin, den 20. Juli 1990, Teil I, Nr. 42, Seiten 660-661.

문서 번호 415

탁아시설의 유지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민주정부의 내각이 동독의 각종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탁아시설의 운영방침을 규정한 것이다. 동독의 모든 기업, 협동농장, 지방관청 그리고 산업협회와 기술자협회는 자체적으로 탁아시설을 운영하였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운영권이 변경되면서 사업장에서 제공하던 각종 복지 서비스의 존속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탁아시설의 경우 지역의 기초단체로 그 운영권이 이전되었다. 이 규정은 사업체 운영권의 양도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의 기초단체 또는 다른 기관이 탁아시설의 운영을 담당하게 될 경우 탁아시설의 보모, 즉 직원은 기초단체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으며 직급은 새로이 규정된다.

탁아시설의 재정은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서독의 조세규정에 따라 시설의 운영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출처_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42

문서 번호 416

서방국가와 서독의 파트너와 체결한 계약의 채무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동독 경제부 장관 게어하르트 폴, 동독 경제부 대외무역국, 동독 재무부, 독일 대외무역은행

내용_

이 문서는 경제 및 화폐 사회공동체의 실현 이후 동독의 국영 대외무역업체들이 외국 또는 서독의 계약파트너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채무 또는 채권 관계에 대한 규정이다. 동독의 국영 대외무역업체들의 채무,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동독 경제부에 정리특임관실을 설치한다. 대외무역업체들이 자본회사를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자본회사가 대외무역업체의 후계자가 된다. 자본회사의 창설을 위해서는 대외무역업체가 보유한 채권과 채무 관계를 청산하고 난 후에 남는 만큼의 재산을 자본금으로 넘겨받을 수 있다. 재산의 가치는 1990년 7월 1일 자로 회계정산한 대차대조표에 의해 결정된다.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외무역업체들에 대한 회계정산을 마치고 그때까지 남은 채무와 채권 관계는 신탁청에 의해 설립될 자본회사에 위임하도록 한다. 이러한 청산작업은 1991년 3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한다. 청산절차를 통해 채권이 더 많아서 얻게 되는 재원은 신탁청으로 이전한다. 대외무역업체의 은행구좌는 독일 대외무역은행을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한다(이 은행은 동독에서 국가 간의 차관제공, 재정거래 그리고 채권과 채무관계를 처리하던 특수은행이다). 대외무역업체의 정리특임관실에 의해서 작성된 인력계획서는 경제부 대외무역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달 소요되는 재정 또한 경제부 대외무역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리특임관은 1990년부터 매월 정리 현황에 관하여 경제부 대외무역국에 보고한다. 이미 자본회사로 전환된 대외무역업체 또한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42, S. 662-664, Ausgabetag 20.07.1990

문서 번호 418

동독 중소기업의 토지구입 지원 규정

1990년 7월 11일

담당자 / 기관_ 쿠어트 분쉐 동독 법무 장관

내용_

시장경제적 조건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보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국유 상업용지의 매각에 있어 500인 이하의 고용자가 근무하는 동독의 중소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기초단체는 자체적인 소유지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통해 도시 중심 상업지역에 상가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대지는 일정한 이용목적을 규정한 상태로 중소기업에 매각할 수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42, 20.07.1990, S. 665-666

문서 번호 427

서독의 수공업 분야 규정(수공업령)이 동독에서도 유효함을 규정하는 법

1990년 7월 12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7월 1일 동서독 간의 화폐통합조약이 발효되기 시작한 이후에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의결한 것으로 서독의 수공업령이 동독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지역에 주 단위의 담당 관청이 설립될 때까지는 동독의 구역행정기관이 동독지역에서 이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서독 수공업령이 동독에서는 규율되지 않았던 부분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서독 연방정부 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동독에 다른 유사한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그 외에, 기존의 수공업 사업체 운영 자격 및 마이스터 자격증 사용 그리고 견습생의 직업교육 및 그와 유사한 다른 권리는 보호받으며, 기존의 견습관계는 견습이 종료될 때까지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44 - Ausgabetag: 27. Juli 1990

문서 번호 429

의사, 수의사, 약사, 치과의사의 직능단체에 관한 법-협회법

1990년 7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 최고인민회의에서 의결된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협회 구성에 관한 법이다. 이 법에는 이들 협회의 과제는 회원들이 직업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감독하고 공중보건 및 수의학 체계를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의사와 수의사, 약사는 이들 협회의 회원이 될 의무가 있다. 이 법에는 나아가 협회의 조직, 회칙 및 회원비 등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되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44 – Ausgabetag: 27. Juli 1990

문서 번호 435

재산권 요구의 신고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동독 내무부 장관 페터-미하엘 디스텔

내용_

이 문서는 소유권을 몰수당했거나 국유재산으로 이전 관리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안들이 법률규정에 따라 적용되었다. 이 규정은 부당한 방식으로 획득한 이용권을 포함한 모든 가치가 있는 재산에 적용된다. 재산권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지역 관청 또는 시 행정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산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법에 따라 내려진다. 요구가 기각되거나 거부될 때는 그 이유를 제시한다.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법원을 통해 항소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44, S. 718-719, Ausgabetag 27.07.1990

문서 번호 452

양육비 채무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7월 1일 이전, 즉 화폐통합 이전에 지불되었어야만 했던 양육비 채무에 관한 규정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1990년 7월 1일 이전에 채무 된 양육비는 화폐교환 비율 1:1로 산정하여 전액 지불하도록 한다.

출처_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46

문서 번호 474

관세법

1990년 7월 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내용_

이 문서는 화폐통합 이후 도입된 새로운 관세법이다. 관세법 1장은 세관 비용의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한다. 1장 1조는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어떤 경우에 수수료가 부과되고, 어떤 경우에 부과되지 않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II장에서는 수수료를 다루고 있다. 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시간당 그리고 월별로 계산된다. 세관 직원이 지속적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업무일 경우에는 월별 수수료가 부과된다. 세관에 물품이 보관된 경우에는 보관 수수료를 징수한다. III장에는 재무 장관에 의한 수수료의 결정, 관세 행정의 인사, 관세법의 적용과 같은 의결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47, S. 849-852, Ausgabetag 06.08.1990

문서 번호 476

동서독 간 물자 및 서비스 교통에 대한 1차 시행령

1990년 7월 9일

담당자 / 기관_ 게어하르트 폴 동독 경제부 장관

내용_

이 법은 동서독 간의 모든 물자와 서비스 수송을 위해 무역청에서 발행하는 수송의 목적과 최종 목적지를 명시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이 증명서에는 납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kg으로 표시된 물건의 순 중량, 물건의 가치, 원산지, 발송일 그리고 장소, 일자, 서명 또는 회사인이 기록되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48, 08.08.1990, S. 860-861

문서 번호 483

새로운 아동청소년지원법과 청소년지원조직법의 도입에 관한 법

1990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내용_

이 문서는 새로운 아동청소년지원과 청소년지원조직법의 도입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을 통해 교육이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국가는 부모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런 의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와 청소년 보호와 같은 청소년사업의 내용이 정해져야만 하고 아동, 청소년, 청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만 한다.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지방기초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나아가 사립단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두 기관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지방기초단체는 청소년국을 설치하며 이 조직의 업무는 청소년복지위원회가 담당한다. 나아가 청소년국의 업무가 전문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연수와 현장업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한다. 사립 청소년사업기관과 자원봉사자의 경우 필요한 전문적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며 그들도 공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출처_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49

문서 번호 487

국유재산, 국유산림 및 농업과 임업의 다른 국유기업의 소유권을 주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법

1990년 7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국유재산과 농업, 임업 분야의 국유 사업체의 소유권을 주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것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의 1조에는 소유권의 이전은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라 지방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나아가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의 목록과 그 기관의 소유권 이전을 준비할 기관이 정해졌다. 나아가 신연방주가 구성될 때까지 과도기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2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주 소유재산 등 다양한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주의회가 대학 소유 또는 교육용으로 공공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p.48).

기초지방자치단체나 주정부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는 국유재산은 신탁관리청에 위임된다. 신탁청은 소유권 이전법과 국유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협동농장 또는 그 구성원에 소작권을 양도하는 법의 정신에 따라 그것을 자본회사로 전환할 책임이 있다.

4조에서는 양도받은 국유재산과 관련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주정부의 권한이 다루어진다. 이 법은 나아가 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문제와 국유 임업, 농업, 양어장 등 사업체를 양도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49, S. 897-899 - Ausgabetag: 09.08.1990

문서 번호 488

경작 중인 국유지의 소유권과 소작권을 협동농장, 협동농장의 구성원 및 다른 시민에게 이전하는 것에 관한 법

1990년 7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내용_

이 문서는 신탁관리법에 따라 협동농장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 농경지와 임야의 매각에 관해 규정한 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될 토지와 자산이 다루어진다. 대상 토지의 조사와 매각은 별도의 신탁관리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4조는 이 기구의 권한과 업무를 규정한다.

5조에서는 토지매각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경작한 또는 협동농장과 그 구성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우선권을 보유한 사람이 포기한 경우 매각절차를 규정한다.

6, 7, 9조는 매각절차와 가격을 규정한다. 매각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의 사용은 주정부와의 협의하에 신탁관리청이 결정한다. 8조에서는 이런 수익이, 특히 농업과 임업의 구조조정과 정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신탁관리청과 토지 매입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며(10조), 이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11조).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49, S. 899 f. - Ausgabetag: 09.08.1990

문서 번호 495

서독의 직업교육법이 동독에서도 유효함을 규정하는 법

1990년 7월 1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내용_

이 문서는 화폐통합 이후 서독의 직업교육법이 동독에도 적용되는 것을 규정한 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직업교육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독의 법률규정들이 동독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 기존의 견습관계는 새로운 규정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견습생이 원할 경우 그리고 그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명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도 있다. 사업체는 기존에 체결된 견습계약들이 만료될 때까지는 직업교육생의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 직업아카데미와 사업체 부설 다른 직업재교육기관의 경우 199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0 – Ausgabetag: 13. August 1990

문서 번호 496

직업학교법(동독)

1990년 7월 1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내용_

이 법은 화폐통합 이후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도입한 법으로 각 연방주가 학교법을 제정할 때까지 직업학교의 업무와 설치 그리고 재정을 규정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학교는 공립학교이다. 직업학교의 운영주체는 행정구역들 및 각 시이다. 직업교육 수업은 독일연방의 독일주문화교육장관협의회가 정한 통상의 교과과정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전문 직종의 직업교육의 경우 직업교육 서류 및 시험규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별도의 학교졸업 시험은 실시되지 않는다. 1990년 9월 1일부로 운영 주체는 직업학교를 설립해야 하며 기존의 사업체 직업학교 및 지역 직업학교는 1990년 8월 31일부로 해소된다. 그 물자 설비는 새로 설립된 직업학교로 이전된다. 국가는 사업체 운영 및 직업학교 운영 비용을 부담하며 그를 감독한다. 직업학교의 수업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0 – Ausgabetag: 13. August 1990

문서 번호 502

독일민주공화국 내 주 설립에 관한 헌법(주도입법)

1990년 7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인민회의, 제10차 임기

내용_

- 동독은 중앙집중적 단일국가였다. 동독에는 전통적인 행정단위 체제로 구, 광역군, 시가 있었다. 이러한 체제는 연방공화국(서독)의 연방주의 체제로 인해 변화되어야 하는데 과거의 전통적인 단위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 1990년 10월 14일 구동독이 서독 편입지역이 되면서 5개 주 제도가 도입되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작센, 튜링겐. 시군의 행정영역 교체 등을 통해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다;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시가 신설되었다. 주 경계의 변경을 위해 해당 주 사이에 국가조약이 필요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주민설문조사 실시, 기초자치단체대표자회의/시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절차가 초반에 만들어졌다(§2).
- 베를린은 주로서의 권한을 받았다. 이는 동-서베를린의 통합을 가져왔다(§1, 2절).
- 상기 법은 공화국, 주, 광역단체, 기초단체 간의 책임소재를 규정했다(§8, §9). 연방과 주의 재정 주권에 대한 사항도 규정되었다(§19).
- 구동독에서 활용되던 지역단위로서 구(Bezirke)의 재산은 원래의 소유주였던 주(Land) 단위로 이전되었다(§21). 그러나 신탁관리청에서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은 연방 입법권한의 대상이었다(§11).

출처_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0. Wahlperiode, Drucksache Nr. 84 a

문서 번호 506

1990-1991년 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금 신청에 관한 규정

1990년 8월 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경제부 차관 군타 할름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이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1990년 8월 6일부터 '지역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체의 과제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이 동독지역에도 적용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할 때까지로 정해졌다. 경제적인 인프라 구조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새로운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활성화하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원금은 특히 동서독 간의 접경지역과 1990-1991년에 실업률이 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동서독 접경지역에 제공될 지원금의 규모는 1990-1991년에 4억 DM이 될 것이다. 이 지원금은 동독과 서독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다. 추가로 1991년에 동독 전역에서 10억 DM의 지원금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 지원금은 지방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인이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신청이 허용된다. 모든 사업신청서는 동독 재무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평가는 동서독의 공동지원금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청자가 지원금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1991년에 시행될 지원금의 경우 신청자 또한 일정한 부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1, S. 999-1000, Ausgabetag 14.08.1990

문서 번호 508

동독 세무서 설립에 관한 지침

1990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내용_

동독의 과도 정부는 1990년 7월 1일 자로 일련의 세무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세무서는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과 법인체 그리고 협의체들의 세금을 관리한다. 1990년 6월 30일 자로 지역행정청이 세금을 관리하던 권한은 폐지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S. 1000-1002, Ausgabetag 14.08.1990

문서 번호 514

동독 가족법 개정에 관한 법(1차 가족법개정법)

1990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가족법 개정안이다. 1990년 7월 20일의 개정에 따라 1965년 12월 20일에 발효되고, 1975년 6월 19에 개정된 법안이 다시 수정되었다.

출처_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52

문서 번호 516

국립 보건제도와 수의과 약국제도의 구조개편법

1990년 7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의 최고인민회의가 건강보건 영역의 구조개편을 결정한 법이다. 그에 따라 국립의료시설, 약국 및 동물병원의 민영화 과정에서 전문의, 수의사 및 약사들이 국립의료시설을 사유재산으로 매입하거나 이용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 각 지역의 시장, 군수들은 지역에서 진료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의, 치과의사, 수의사 및 약사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근거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안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국민 대표들이 이미 1989년 10월 7일 이후에 이들 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그것이 직위를 오용하거나 다른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두 무효화하였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2 – Ausgabetag: 17. August 1990

문서 번호 522

동독 근로자의 1991 근로소득세카드 발급

1990년 7월 3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무부 장관 페터-미하엘 디스텔,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내용_

독일연방공화국의 근로소득법이 1991년 1월 1일 자로 동독지역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주거지역에서 근로소득세카드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모든 고용주들은 해당 세무서에서 고용된 근로자 수만큼 근로소득세카드를 신청할 의무를 갖는다. 해당 관청은 1990년 9월 10일까지 고용주들에게 발급해야 한다. 근로자는 1990년 10월 2일과 1990년 12월 31일 사이에 해당 관청에 근로소득세카드를 제출하여 세금감면의 대상인 부양 자녀 증명서 등을 포함하여 세금 클래스를 결정 카드에 기재하도록 한다. 근로자는 해당 관청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근로소득세카드를 1991년 1월 1일에 고용주에게 제출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2, S. 1063f., Ausgabetag 17. August 1990

문서 번호 529

군, 읍 단위 행정지역에서 보건소의 과제와 공공의료 서비스에 관한 법

1990년 8월 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보건부 장관 위르겐 클레디취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 정부가 결정한 지역 단위의 공중보건에 관한 시행령이다. 그에 따르면 지역 단위의 공중보건 업무는 각 지역의 보건소가 담당한다. 공중보건 업무를 통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며, 위생 및 건강, 소비자 보호 규칙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예를 들어 병원, 재활병원, 응급구호 서비스 및 공공시설의 의료보건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나아가 다른 관청의 의료문제도 자문을 해 준다.
보건소는 신체와 정신건강 및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계몽하고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한 자문을 해 준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3 – Ausgabetag: 22. August 1990

문서 번호 541-555

동독의 노동지원법에 대한 다양한 조치

1990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노동사회부 장관 레기네 힐데브란트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6월 22일에 결정된 동독의 노동지원법의 실질적인 집행에 관한 규정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규정은 동독 노동시장의 현황과 발전을 고려한 규정이다. 그와는 관계없이 동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동독 주민 또는 서독 주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해 실업의 위험을 막고 노동력 부족 문제 또는 경제활동의 이동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 규정은 다양한 하부 규정에 의해 보완되었다. 단축노동지원금을 보장하는 규정 또는 고용창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동행정의 업무가 규정되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3 – Ausgabetag: 22. August 1990

문서 번호 591

약국제도에 관한 시행령

1990년 8월 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보건부 차관 호르스트 숀펠더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드 메지에르 정부가 경제 및 화폐 사회통합조약 22조와 1990년 7월 22일에 도입된 건강보건 체계 구조개편법을 근거로 결정한 약국에 관한 시행령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동독 주민 그리고 1992년 1월 1일 이후에는 서독 주민 그리고 1990년 1월 1일 이전에 동독에 거주하였던 외국인들이다. 그들은 약국을 소유해야만 하고, 유럽공동체의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개원할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 등록해야만 한다. 기존의 국립 약국의 경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운영권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소유주를 변경할 경우 그에 대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병원 소유주에게 병원약국을 운영하도록 허가해 준다. 병원약국은 계약 관계에 있는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만 공급하도록 한다.

보건 장관은 정상적인 약국 운영을 보장하고 의약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약국운영법을 도입할 권한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기본방침을 따른다.

국영약국, 의약품센터 등은 민영화 및 사유화를 위해 신탁관리청으로 인계된다. 해당 지역의 관청은 신탁관리청으로 인계될 약국을 매각 또는 관리 공고를 낸다.

베치르크 단위의 약국관리청은 1991년 6월 30일 자로 해체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5 – Ausgabetag: 27. August 1990

문서 번호 617

저축금고의 영업에 관한 지침-저축금고지침

1990년 7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내용_

이 지침은 저축금고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크레디트 차입, 저축금고 자산의 투자(예를 들어 신용기관 또는 부동산), 서비스와 기타 업무(주식거래, 외환거래, 금고의 대여) 등을 규정한다. 이 지침의 부록에는 저축금고 회칙의 견본이 수록되어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5-1279, Ausgabetag 30.08.1990

문서 번호 618

어음에 대한 이중과세 제한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3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내용_

이 지침은 어음거래에 대한 세금 규정이다. 동독에서도 1990년 6월 30일 이후에는 어음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9, Ausgabetag 30.08.1990

문서 번호 627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1990년 8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23조에 따라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7, S. 1324

문서 번호 635

신탁관리법 3차 시행령-국유농장, 국유산림사업장, 국유사육장 재산의 이전

1990년 8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신탁관리청, 동독 농림식품부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개혁기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1990년 6월 17일부터 시행된 신탁관리법을 근거로 국영농장, 국유임업사업장, 산림청, 국유양봉사업장, 가축 및 경마, 가축사육사업체 등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신탁관리청에서 신탁관리하도록 이양하는 것을 결정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지방단체나 신설된 주로 관리권이 이양되지 않는 사업체는 신탁관리법에 따라 민영화한다. 국유농지와 산림은 1990년 7월 22일에 발효된 법에 따라 신탁관리청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신탁관리청은 농림식품부와 함께 농업과 임업 분야의 국유재산을 민영화 및 재조직하고 필요한 조직구조를 구축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7 – Ausgabetag 4.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636

사회보험법 시행 지침-주보험청의 구축

1990년 8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노동사회부 차관 코한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 노동사회부 차관이 1991년 1월 1일 부로 동독의 사회보험이 근로자의 법적 연금보험을 관할하는 기관인 주보험청을 준비한다고 발표한 시행지침이다. 이 업무는 동독의 사회보험 국장에게 부여되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7 – Ausgabentag: 4.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656

직업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미고용 상태인 청소년들의 일반학교 교육 재개에 대한 지시

1990년 8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직전인 1990년에 여름방학 이후 새로운 학기가 되면서 동독 교육부 장관이 8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중에 직업학교에 입학하지 못했거나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소년들이 일반학교에 재입학하여 서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중등 단계의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9-1990학년도에 학교를 떠났으나 아직 직업교육을 받지 않고 있거나 미고용 상태인 청소년들은 1990-1991학년도에 일반학교에 재입학하여, 다음 단계의 학급과정을 수료하거나 최소한 마지막 받았던 수업 단계를 끝까지 수료할 수 있다. 10학년을 수료한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미고용 상태일 경우 이들은 상응하는 수행능력을 전제로 11학년으로 확대일반고등학교(EOS)에 전입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재입학을 위한 절차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7 – Ausgabetag: 4.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657

직업학교 내 청소년 대상 1년 기간 교육과정 설치에 대한 지시–동독 교육·학술부

1990년 8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교육부 장관이 통일 직전에 내린 조치로 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특별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학교에 1년 기간의 교육과정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 과정은 현재 직업교육을 받고 있지 않거나 무직업 상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직업세계로 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을 위해 소요될 재원은 직업학교 예산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1990년 9월에 새로 시작되는 견습 및 직업교육 학년도부터 실시되며, 통일 이후 구축될 동독지역의 새로운 연방주들이 자체적인 학교법을 제정하는 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7 – Ausgabetag: 4.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665

베를린 협동조합은행의 회칙에 관한 지침 2

1990년 8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부 장관대리 마센 차관, 동독 재무부, 동독 경제부

내용_

이 문서는 화폐통합 이후 개정된 베를린 협동조합은행의 회칙이다. 그에 따르면 운영이사회가 재무 장관의 동의하에 은행의 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협동조합 조직의 신용기관에 양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운영이사회에는 앞으로 동독 재무부와 경제부의 대표가 포함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8, S. 1426, Ausgabetag 07.09.1990

문서 번호 666

동독의 병원재정법

1990년 8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병원의 재정 확보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경제 및 화폐 사회통합 조약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의 투자 그리고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비용 또는 운영자가 투입하는 자금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있는 병원을 만들며, 이들 병원은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

각 주는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한 투자계획과 병원계획을 작성한다. 주 단위의 의료보험협의회와 병원협의회 또는 병원운영자협회 등과 공동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주정부는 병원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시설 설비, 병원 확장, 병원 조직의 개편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서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병원입원비수가 규정이 동독에도 적용된다. 병원비 수가는 병원 운영자와 의료보험이 함께 공동으로 합의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9 – Ausgabetag: 14.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670

국영기업의 부채탕감 조치에 관한 규정-탕감규정

1990년 9월 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재무부 차관 베르너 슈코프론, 신탁관리청

내용_

이 문서는 신탁청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의 구채무에 관한 규정이다. 여기서 '구채무'라고 부르는 것은 1990년 6월 30일 자로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로 전환시 2:1의 비율로 개시 대차대조표에 기록된 모든 채무를 의미한다. 구채무의 탕감을 통해 기업이 회생 구조조정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구채무를 전액 또는 일부 탕감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신탁청이 결정한다. 그를 위해서 기업이 신탁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9, S. 1435-1436, Ausgabetag 14.09.1990

문서 번호 702

화폐전환에 따른 차액보전을 위한 기금 설치에 관한 법

1990년 9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베를린 국가은행, 동독 재무부 장관, 서독 연방 재무부

내용_

이 법에 따라 화폐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보전을 위한 기금이 설립되었다. 차액보전기금으로 불리는 이 기구는 베를린에 본부를 둔 법인체였다. 이 기금은 동독의 마르크를 서독의 화폐인 도이치 마르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독은행들의 손실(구채무)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

동서독 간의 화폐교환 과정에서 대출금과 예치금 간에 상이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었다. 그로 인해 동독은행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금은 가치를 상실한 대출금을 보전해 주어 동독은행이 충분한 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기금은 매해 연말에 연간정산과 사업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기금은 나아가 동독의 국가은행이었던 베를린중앙은행이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한다(1994년 10월 1일 이후 이 과제는 독일재건은행이 위임받았다. 1994년 12월 31일에 차액보전청구액은 약 753억 마르크 규모였다.). 담당 업무가 완료된 후에 이 기구는 해체된다. 기구가 해체될 때 남아 있는 잔여 기금은 동독 재무부(통일 이후 연방재부무)로 이체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61, S. 1487-1488, Ausgabetag 19.09.1990

문서 번호 708

보험 혜택에 관한 의료보험회사와의 계약관계에 대한 법-의료보험계약법

1990년 9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의료구조 개편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경제 및 화폐 사회통합조약 22조를 근거로 도입되었다. 이 법의 개별적인 항목들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의약품, 의료보조기, 병원입원 환자, 응급의료 그리고 연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61 – Ausgabetag: 19.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710

의료보험회사 설립법

1990년 9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의료보험제도 개편을 결정한 법이다. 그것은 동독에도 서독과 유사한 의료보험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경제 및 화폐 사회통합 조약 21조를 근거로 도입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법을 통해 개별적인 의료보험회사가 존재하는 것을 보장받으며 그들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사회보험법의 규정들은 의료보험에도 적용된다.

의료보험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업종의료보험, 선원의료보험, 농업의료보험, 광산의료보험, 추가보험. 의료보험의 감독은 각 주의 최고관청에 위임된다.

동베를린과 동독의 각 지역행정 단위 베치르크는 지역의료보험을 설립한다. 차후에 지역의료보험협회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450인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의 고용주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위한 직장의료보험을 설립한다.

불법적으로 설립된 의료보험 또는 운영 능력이 없고 장기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없는 의료보험은 폐업한다.

의료보험의 분리 해체 또는 폐쇄 등에 관한 신청서는 감독기관에서 평가, 결정한다. 나아가 운영 절차에 관한 규정도 감독기관에서 결정한다.

이 법은 나아가 개인이 의료보험의 종류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61 – Ausgabetag: 19.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715

퇴직 내각위원회 구성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과도기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8월 8일

담당자 / 기관_ 총리실 장관 라이헨바흐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 내각위원회에서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이유로 물러나는 내각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보장조치를 도입한 결정이다. 내각에서 물러난 후 직장을 찾지 못한 경우 먼저 3개월간 세금 후 수령했던 월급이 과도지원금으로 지급되며 그 후 3개월간은 월급의 80%가 지급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62 – Ausgabetag: 21.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724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연방주의 입법권 영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 –방송과도규정

1990년 9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자비네 베르그만-폴 의장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9월 14일에 동독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방송과도규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방송과도규정은 동독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주정부가 관할하는 연방구조로 전환하는 작업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 규정은 통일조약 36조를 보완하는 것으로 199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그 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 규정의 최종적인 목적은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새로이 신설될 신연방주에 동독 방송의 관할권을 이전하여 독립적이고 공익을 추구하는 기구로의 전환을 보장하는 것이다. 동시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관계를 규정한다. 공영방송은 기본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반면, 민영방송은 방송사 간의 경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주파수와 관련하여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동일한 기술적, 경제적 조건하에서 의견의 다양성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방송과도규정을 통해 방송국 지도부와 방송이사회, 재정, 프로그램 편성 등이 규정되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63, vom 26.09.1990, S. 1563 ff

문서 번호 732

학교 및 직업학교 관련 원칙과 규정에 대한 명령-임시 학교령

1990년 9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정부가 통일 직전에 발표한 학교령이다. 그 목적은 동독지역의 학교제도를 서독의 학교 체계와 부합하게 개혁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지닌 과제와 목표가 새로이 규정되었다. 공립학교의 운영 주체는 기초자치단체가(Kommune)가 된다. 학교제도의 계속적 발전을 위해 기존의 학교형태를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Schulversuch)을 도모하거나, 혹은 특별한 실험학교(Versuchschule)도 설립할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지원센터(Jugendhilfe) 및 특수학교, 자문단체 및 보건의료소 등의 기관들과 학교 간의 협력방식도 새로이 규정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63 – Ausgabetag: 26.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733

교원 양성에 관한 명령(동독)

1990년 9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직전에 동독 교육부 장관이 교원 양성과 교육 공무원 자격시험의 제반 조건에 관련해 내린 명령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서의 교원양성제도는 서독의 제도에 상응하게 바뀌었다. 동독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는 대학에서 수학할 필요가 없었다.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이 별도로 존재했다. 1990년까지 이 과정을 수료할 사람들은 서독의 교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대학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보충 학위과정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교원양성기관에서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이나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재직 중인 교사들도 위에 상응하는 대학과정 이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직장 경력은 교직 준비과정의 이수로서 산정될 수 있다.

1991년에 학위를 마칠 예정인 대학생의 경우 통일 이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학위를 이수한 후에는 1991년 9월 이후 1년 과정의 교직준비 과정을 이수할 자격을 얻는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63 – Ausgabetag: 26.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734

대학교에 대한 법령(임시 대학교령)

1990년 9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교육부가 통일 직전에 내린 명령으로 대학교에 관한 규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동독지역의 다양한 대학기관에서 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장학생, 마이스터 학생 및 교수 후보생들은 정해진 지원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전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박사학위 논문 심사는 현행 규정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동독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는 통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며, 본인이 신청할 경우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의 학위로 변경될 수 있다.

이 명령을 통해 장학금의 지급 및 대학교원임용령에 대한 시행규정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규정들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출처_ Gesetzblatt Teil I Nr. 63 – Ausgabetag 26.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1011

홍보처의 구조개혁과 정부 대변인의 기능과 업무에 관한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

1989년 11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홍보처, 동독 언론홍보국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내각위원회의 구조변경에 관한 것이다. 특히 정부 대변인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내각위원회 위원장실에 소속되었던 홍보처가 동독 언론홍보국으로 개칭하고 새롭게 구조개편되었다. 이 기구의 관리자는 정부 대변인이며, 그는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정부 내각위원회의 결정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정부 대변인은 국내외 언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부의 업무와 국가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준다. 내각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언론에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정부 대변인이 관여하도록 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C 20-I/3/2874; 3. Sitzung des MR vom 30. Nov. 1989

문서 번호 1012

동독 주재 외국 기자의 활동 규정에 대한 내각위원회의 새로운 결정

1989년 11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외무부, 홍보처 정부 대변인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주재 외신 기자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한 내각위원회의 결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각위원회는 외무부 홍보실이 제출한 방안에 따라 동독에 상주하는 외신 특파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동독 주재 외신 특파원과 외국 출판기관의 활동에 관한 규정'과 '외국 저널리스트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 기관, 업체 시설의 업무에 관한 지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의 규정들은 저널리스트들이 서로 상주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로 합의한 유럽안보협약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외국 언론과 특파원들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게 되었다. 동독 내에 사무실 개설 또는 특파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무부 언론관계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승인허가가 거부될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국가기관과 국책 기구 사업장 시설들이 언론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였다. 모든 관청과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은 발표된 정보의 정치적, 사실적 정확성을 보장하고 그것이 동독 국가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명시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무부에 외신 기자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외무부가 답사 등 외신 기자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조직할 수도 있다. 중요한 국내, 국제 행사의 경우 그 행사의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외신 기자 센터를 통해 보도권과 외신인가증을 관리한다. 유럽안보협력조약의 규정에 따르면 언론이 합법적인 업무를 할 때에는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중앙기관에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뷰, 영상 사진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것과 나아가 국가 기관이나 사회 기관 개인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국가의 모든 조직과 기관은 언론 담당자를 임명하여 언론인들의 질의에 신속하게 답할 수 있도록 한다. 외무부는 '동독 주재 외신 특파원을 위한 소식지'를 작성하여 공개될 정보를 알리도록 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C 20-I/3/2874; 3. Sitzung des MR vom 30. Nov. 1989 (geänderte Blattreihenfolge)

문서 번호 1013

의견, 정보, 언론의 자유 보장에 관한 동독 최고인민회의 결정을 위한 입법위원회의 미디어법 초안(발췌)

1990년 1월 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한스 모드로우 개혁 정부 시기에 중앙원탁회의와 최고인민회의가 미디어와 관련하여 도입한 새로운 규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회의가 새로운 미디어법을 완성하지 못하자 원탁회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의사표현, 정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의결할 것을 권유했다. 그에 따라 최고인민회가 새로운 미디어법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갖게 될 총 16개 항목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항목 중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특별히 강조되었다. 이 조항은 아주 광범위한 것으로 예술적 자유 및 특정 의견에 대해 반박하거나 다른 의견을 표명할 자유도 포함되었다. 동독 미디어에 대한 모든 검열이 금지되면서 동시에 미디어가 갖는 책임도 강조되었다. 특히 "미디어는 국민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나아가 내각위원회가 모든 미디어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임무를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이 항목이 특별히 중요했던 이유는 사통당의 당 기관지인 노이에스 도이칠란트紙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항목들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원탁회의의 제안에 따라 미디어조정위원회(Medienkontrollrat)를 구성했다. 라디오 및 TV 방송국장, ADN19 통신사장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 기구 대표들이 미디어조정위원회에 보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디어법 제정안은 법무부에서 준비하며,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헌법이 제정된 후에 제정하기로 하였다.

출처_ http://www.ddr89.de/ddr89/texte/medien.html vom 08.06.2010

문서 번호 1014

농업, 임업, 식료품 분야의 경제 개혁의 준비와 실현을 위한 방안-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2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농림부 장관 한스 바첵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 정부가 농업 기업을 유럽연합의 경제구조로의 완벽한 통합을 목표로 개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최종적인 목표는 과도기가 완료된 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개혁의 기준은 국가가 더 이상 경제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친환경적인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산재와 생산품의 시장 구축, 기업의 경제적, 법률적 독립 및 자기책임성, 소유권 형태의 다양성과 평등한 기회보장 등 기본적인 틀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지배적인 결핍경제의 문제는 지원금의 감축과 수요에 따른 생산을 통해 극복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 협동농장은 1990년 2월 1일에 도입된 새로운 협동농장법에 따라 자율적이고 시장경제 원칙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기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것은 농산물의 유통협동조합과 제조협동조합에도 해당한다. 협동조합이 보유한 소유권은 여전히 농업생산을 위한 기반이다.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제조, 유통을 위한 조합 연맹을 구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국유림이 지배적인 임업구조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또는 민간인 등 다른 소유자들과 계약을 통해 합의, 또는 협동농장에 대한 보상, 보유목록 작성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동독 농업을 유럽연합의 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해 동독의 가격 체계와 조정 체계가 서독의 그것과 동일하게 전환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친환경성, 농민과 협동농장 구성원의 보험의무 및 실업연금 등을 위한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C 20-I/3/2913, fol. 86-130

문서 번호 1015

동독 정부 보도 및 정보 서비스 규정-내각위원회 결정

1990년 2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홍보처 정부 대변인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내각위원회가 15차 회의에서 동독 국정홍보처의 구조와 정관에 관해 논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 정관은 국정홍보처(PIDR)의 구조와 업무를 규정하고, 정부 대변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내각위원회 위원장 휘하에 있던 홍보처의 후속기관으로 내각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변신하며 베를린에 본청을 두게 된다. 국정홍보처의 주업무는 여론에 정부정책을 알리고 보도를 담당하는 동독과 외국의 언론 미디어를 지원해 준다. 국정홍보처는 매주 정부 언론보도를 작성하고 매달 '악젠트'라는 저널을 발행하도록 한다. 국정홍보처는 나아가 동독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잡지의 수와 종류, 출판 부수를 유엔에 보고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정부 대변인이 국정홍보처의 책임자가 되며, 그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진행 방식과 업무영역을 결정한다(조직도 포함).

출처_ Bundesarchiv, Barch/DC 20-I/3/2919; 15. Sitzung des MR vom 22. Febr. 1990

문서 번호 1016

동독 방송 임시 정관

1990년 3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방송, 동독 내각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내각위원회가 1990년 3월에 도입한 새로운 방송 정관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정관을 통해 동독의 방송은 국가기구에서 공영기구로 변신하였다. 그것은 1990년 2월 5일에 최고인민회의가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지식,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임시정관은 그것이 발표되면서 동시에 효력을 갖게 되고, 체제전환 과정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법적인 문제 또는 재정적 문제, 업무와 근로방식, 지도부의 구조, 직원의 이익 대표자(노동조합), 법정 대리인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확정될 것이다.

출처_ Funkhaus Berlin (Hg.). Radio im Umbruch – Oktober 1989 bis Oktober 1990 im Rundfunk der DDR, Darstellungen, Chronik, Dokumentation, Presseresonanz, Berlin 1990, S. 373–377. Zitierweise: „Internet: JournalisMus“ (www.journalis-mus.de; Stand 26. April 2016)

문서 번호 1017

주 재편을 포함한 동독 내 주 신설에 관한 법 제안을 위한 결의문

1990년 5월 2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자유총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가 동독을 5개 주로 분할한다는 제안을 포함한 동독 내 주 신설을 위한 법(주도입법)에 관한 제안을 만장일치로 수락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입법을 위해 입법위원회를 구성한다.
- 주 소속에 관한 주민 결정 실시
- 예정된 주 신설을 위해 각 시의회는 자기 책임하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I. 동독 내 주 신설을 위한 법에 관한 원칙(주도입법)

a) 관할 영역 구분 입법 관할: 독일 국가의 연방적 성격을 보호하고 강조하기 위함. 입법에 관한 연방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할 영역이 목록화되었다.

b) 행정 구분: 서독 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지방 정부들은 국가 업무 해결을 위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c) 지방 정부의 재정적 토대 확보

d) 지방 정부 차원의 정부 시스템의 법적 토대: 기본법 제20조, 제28조: 지방 의회와 지방 정부

II. 주 신설에 관한 제안

a) 주 신설에 관한 기준과 관점

- 주민의 고향 및 지역적 연관성(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
- 주민 수, 면적, 경제적 합목적성, 주의 경쟁력
- 기존 기능적, 조직적 관계

b) 주 신설 원칙에 관한 두 가지 방법

- 1946-1952년까지의 주 형식을 근거로
- 시 영토를 통합

c) 5개 주 모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안할트주, 작센주, 튜링겐주

III. 주 설립을 위한 일정 제안: 정부위원회는 주 설립을 위한 개별 단계의 실행을 위해 일정을 제안한다.

출처_ Bundesarchiv, DC 20-I/3/2947, 4. Sitzung des MR vom 2. Mai 1990

문서 번호 1018

독일우편의 요금 체계의 개혁에 관한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6월 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체신부 장관 에밀 슈넬, 동독 총리실 장관 라이헨바흐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개혁기 동독 내각위원회가 체신부가 작성·제출한 새로운 우편요금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체신부는 독일우편의 전화통신과 우편 서비스가 제대로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술발전 수준 또한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7년 이내에 우편통신의 인프라 구조를 산업국가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 한다. 이를 위해 1997년까지 550억 DM이 투자되어야만 한다. 독일우편과 서독의 연방우편의 통합 과정에서 독일우편 직원의 일자리를 보장해야만 한다.

요금 체계는 지난 40년 동안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투자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개별적인 우편 서비스와 전화 서비스 비용을 인상해야만 한다. 요금인상은 1990년 7월 1일부터 또는 1991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통해 동독과 서독의 요금 체계가 동일해져야만 한다. 서독과 서베를린의 기업이 동독 독일우편을 통해 우편물을 배송하는 편법적인 행위는 이런 조치를 통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독일우편의 서비스 비용이 서독 연방우편보다 저렴한 것을 악용해 왔다.

출처_ Bundesarchiv, DC 20-I/3/2980

문서 번호 1019

독일우편의 새로운 요금 체계 도입에 대한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6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체신부 장관 에밀 슈넬, 동독 총리실 장관 라이헨바흐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개혁기 동독 내각이 1990년 6월 6일에 전화, 전보, 우편, 금융 서비스의 요금의 새로운 양식을 도입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서 사회적 시장경제가 구축되면 우편통신도 다른 선진 유럽 국가의 수준에 맞추어야만 하고 국제경쟁력도 높여야만 할 필요가 있다. 1990년에는 100,000개의 전화선이 개설될 것이다. 1991년에 300,000개가 추가될 것이다. 공중전화의 전환을 포함한 이런 조치를 위해 약 650만 DM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우편 서비스를 포함한 이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재원이 먼저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1991년에 51억 DM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95년까지 391억 DM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독 연방은행은 이러한 발전 프로그램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46%를 융자해 주기로 약속했다. 나머지 54%는 요금인상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130,000명의 우편통신 분야 종사원들과 그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하는 100,000명의 일자리가 보장된다.

인상된 요금은 내각위원회 결정안에 부록으로 첨부되었다. 인상분은 현재 소득을 반영한 것이며, 주민 소득과 우편의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 간의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1991년에도 요금인상이 있을 예정이다.

출처_ Bundesarchiv, DC 20-I/3/2990

문서 번호 1020

환경기초법에 대한 피카르트 차관의 최고인민회의 발언

1990년 6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환경부 차관 피카르트,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 정부의 환경부 차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환경기초법안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발언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법안은 독일이 환경 분야에서 통합을 이루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00년까지는 동독과 서독 간의 환경 분야에서의 격차를 완벽하게 소멸시키기 위해 필요한 초석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틀 위에서 엄격한 환경규율을 준수하고 장래에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오래된 시설을 보수할 수 있을 것이다. 오염이 심각한 동독 산업공단을 전부 정비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1990년 7월 1일에 내각에 제출할 것이다.

환경기본법은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유시설과 건물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자들에게는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오염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한다.

수자원, 폐기물법, 자연보호 및 조경보호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환경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이미 취해졌다. 환경기본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법의 기본적인 사안에 집중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의 환경법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었다. 예를 들어 식물보호, 비료 및 유전자 기술에 관한 법률과 같은 문제는 2단계에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환경기본법은 특히 일자리 보장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기도, 사회적 측면을 갖고 있기도 하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N 2671

문서 번호 1021

환경기본법-최고인민회의 1차 심의

1990년 6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환경부 차관 피카르트, 최고인민회의 의원들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의 최고인민회의에서 환경부가 제출한 환경기본법을 논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환경부 차관은 각 정당에 이 법안에 대한 동의를 부탁했다. 이어 이 법안을 환경자연보호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고인민회의의 각 정당들은 새로운 법안은 동독의 환경상황을 개선하고 독일에서 환경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초석이라는 데에 동의했다. 그렇지만 환경개선을 위해 폐기물처리법, 서독의 원자력법의 수용 및 과도기의 책임소재 확인 등 앞으로 시행되어야 할 문제들에 관해 우려를 표시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한편 동독의 환경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출처_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14. Tagung, S. 518-527

문서 번호 1022

동독과 서독의 화폐·경제·사회연합 설립 조약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의회 독일통일위원회의 입장 및 권고

1990년 6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독일통일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독일통일위원회에게 화폐통합조약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조약은 독일통일을 위해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짧은 시간 내에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문제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동독은 토지소유권, 토지개혁과 점령 시기의 개혁을 통해 동독 주민에게 부여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탁관리청이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통해 취득하게 될 수입은 구조조정 지원, 예산적자 보충, 국가채무의 감축, 그 외 다른 조치를 위해 사용한다. 주택, 농경지와 임야, 기초지방단체의 재산 등은 신탁관리청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연합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문화기금을 마련한다.

나아가 국가조약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들은 정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해야만 한다.

출처_ Drucksache Nr. 24 a der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문서 번호 1023

환경기초법–동독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을 위한 동독 내각위원회의 제안 및 초안

1990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효과적인 자연 및 환경 보호 그리고 서독과 함께 계획한 환경연합 실현을 위하여 도입한 환경기초법 초안이다. 이 법안은 199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 법의 내용은 대부분 서독 환경법에 근거를 두며, 특정한 과도기가 명시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기 동독의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환경오염 방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은 최대한 신속하게 새로운 시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시설을 취득한 사람은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된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받는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배기가스 조사는 인민군(Nationale Volksarmee), 독일제국철도(Deutsche Reichsbahn), 독일우체국(Deutsche Post), 독일인민경찰(Deutsche Volkspolizei) 등의 기관을 통해 실행되고, 승인될 수 있다.

- 원자력 안전 및 방사능 보호:

원자력 기술과 관련해서 이미 승인 허가가 난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그로 인해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으며 원자력법에 부합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는 5년 이후, 방사능 물질 운송은 2년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방사능 물질 수출은 철회된다.

- 수자원 관리:

1982년 7월 2일 제정된 동독의 수자원법(Wassergesetz)은 연방법(Bundesgesetz)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 폐기물 관리:

폐기물 처리를 위한 구시설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독과 동독 간의 폐기물 운송은 허가를 필요로 한다.

- 자연 보호:

1990년 3월 16일 생태계 보존 구역 및 국립공원에 대한 각료회의 의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은 한시적으로 보호가 유지된다. 국립공원과 자연 보호 및 자연경관 보호 구역은 연방주 행정기관 설립 이전까지 각료회의의 소관이다.

- 기타:

자연경관 보호, 화학물질법, 환경 보호 심사

출처_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Drucksache Nr. 65

문서 번호 1024

동독 민법(ZGB) 개정과 보완에 관한 법(민법개정법)

1990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1975년 6월 19일에 발효된 동독 민법은 이 개정안의 부록에 의거해 개정되고 보완된다.

- 국가 공증에 관한 1986년 2월 5일 자 법 개정
- 토지거래 규정: 국민에게 주어진 법적 수단에 관한 규정 통일 및 행정결정에 관한 후심사를 위한 관할 법원 결정에 관한 1988년 12월 14일 자 규정
- 민법전 제17조, 제20조, 제22조 1절의 인민재산 비분리성과 비부담성은 철폐된다.
- §62 가격: 가격은 계약 당사자와 합의된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가 정한 가격결정에 관한 법규정은 그대로 남는다.
- §257 피보험인과 보험사 간의 계약 해지 가능성
- §454 청구 저당의 비독립성
- §480 강제집행 기한은 10년이다.

출처_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0. Wahlperiode. Drucksache Nr. 72a. 22.07.1990.

문서 번호 1025

동독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관한 과도규정-내각위원회가 제출한 발의안에 대한 최고인민회의의 1차 심의

1990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각위원회, 언론정책부 장관 뮬러, 최고인민회의 의원들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내각위원회가 제출한 방송과도규정의 초안에 대해 심의한 것이다. 과도규정에 따라 동독의 방송이 연방주에 소속되는 독립적인 기구로 변신하게 되었다. 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민당 소속 뮬러 장관은 주 단위의 방송국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연방국가의 원칙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베를린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이 동독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1990년 7월 22일에 신설될 연방주는 주방송국을 설립하고 각 지역 방송의 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분리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다루는 각 주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지역 방송국들은 서로 협력하여 주 단위 방송국을 구성하기로 하였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약 2개에서 3개의 방송국이 동독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기민당 소속 슈타인만 의원은 방송과도규정이 새로 신설될 주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변혁이 시작된 이후 다양한 사안들이 자체적인 역동성을 갖고 진행되는 속에서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원탁회의와 최고인민회의의 언론입법위원회가 광범위한 언론법을 작성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사민당 소속 티어제 의원은 최고인민회의 미디어상임위원회가 이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무시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이 초안도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방송국의 감시, 방송국장의 임명, 민간방송의 허용 그리고 새로 도입될 주정부가 발전시켜야 할 구조를 사전에 정착시키는 것 등이 그런 사례라는 것이다.

민사당의 의원 비스키도 이런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는 이 법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마루쉬 의원도 발표하였다. 기민당의 슈바츠 의원은 다양한 비난으로 인해 실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동독 정부가 신속하게 과도규정을 도입할 의무가 있다는 데에 모두 합의하였다. 그러나 방송과도규정의 초안에 언급된 민영방송의 차별과 국가의 영향권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녹색당의 바이스 의원은 경제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 동독지역을 하나의 방송으로 취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20시 이후에는 광고방송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출처_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26. Tagung (Stenografische Niederschrift)

문서 번호 1026

'국유재산, 산림 및 농림산업 기업의 소유권을 주와 기초단체로 이전하는 법'과 '경작 중인 국유지의 소유권과 소작권을 협동농장, 협동농장의 구성원 및 다른 시민에게 이전하는 것에 관한 법'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토론

1990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농림식품부 장관 폴락, 최고인민회의 의원들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에서 농토와 산림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한 법 개정을 위해 논의한 회의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폴락 농림식품부 장관이 회의의 모두에 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국유농장의 소유권을 신설될 주와 기초단체로 이전하는 것은 농업구조조정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국유농장의 민영화와 재조직을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안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이 업무는 농림산업에 대한 신탁관리청 TH-LF가 담당한다. 농가를 지원하고 일부를 공원, 시유지, 대학실험장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유지나 농민 개인의 토지를 협동조합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문제이다. 농업구조조정법은 협동농장의 분할과 합병을 계획하고 있다. 국유농장도 협동농장처럼 채무를 탕감해 줄 필요가 있다. 국유농장 또는 그 토지의 매각은 제한되어야만 한다. 소유권 관계가 분명해진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한다.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국영농장의 전환과정에서 신탁관리청과의 협력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행정단위인 주가 신설될 때까지 이들 국영농장이 국가적 통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유산림의 재산은 신설될 주에 이전된다. 여기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은 직원들이 해당 사업장의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폴락 장관은 국유지의 소유권과 임대권을 협동조합에 위임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법은 농업에 이용되는 국유지를 민영화하는 것을 규정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조건은 매각되는 토지가 1945년 이후에 불법으로 소유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밝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민영화는 TH-LF가 주관한다.

사민당의 카우프폴드 의원은 법안에 민영화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이용과 관련해 농림신탁관리기구 TH-LF가 아무런 역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매각 대금이 국가예산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민과 기초지방단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 두 법안은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위임되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A 1 / 00 C 277;
Volkskammer der DDR, Plenarprotkoll der 26. Tagung, 10. Wahlperiode, 20.07.1990

문서 번호 1027

동독 문화유산 보호법 시행령-문화유산보호법

1990년 8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내무 장관대리 페터-미하엘 디스텔

내용_

이 문서는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이 '노동운동 문서자료협회'라는 명칭의 공익 단체를 설립하면서 노동운동과 관련된 자료가 외국까지 유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독 내각위원회가 결의한 문화유산보호법 시행령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각위원회는 민사당이 공익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이지만, '노동운동 문서자료협회'를 통해 문서들이 다른 시설 또는 심지어 외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그로 인해 문서자료의 확보와 이용, 보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통일당은 1949년 이후 동독의 지도부를 장악했고, 1968년과 1974년에 개정된 헌법에 의해 동독 체제에서는 주도적인 헌법 기구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 결과 사회주의통일당이 보유한 문서와 동독 국가기구의 문서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게 되었다. 사회주의통일당의 문서는 국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국가가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문서 자료들은 1945년 이후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 그리고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근거 자료들이다. 그런 자료들이 지금 민사당의 관리하에 있다. 1945년에서 1989년 사이의 사통당 지도부의 문서는 동독 중앙문서국에 의해 그리고 사통당 지부의 문서들은 해당 국가문서고에 의해 인수되어야 한다. 민사당이 보유하고 있는 동독 국가 기관의 문서들은 국가문서고로 이양되어야만 한다. 국가적인 문서관리국은 자료의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민사당 지도부는 새로이 구성될 위원회에 파견될 두 명의 전문인력을 임명할 수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C 20-I/3/3046

문서 번호 1028

방송 시청료 인상–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의

1990년 8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미디어정책부 차관 베커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내각위원회에서 시청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0월 1일 자로 시청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라디오 방송은 2마르크(DM)에서 4마르크(DM)로, 제I 방송 텔레비전은 5마르크(DM)에서 9마르크(DM), II프로그램은 3마르크(DM)에서 6마르크(DM)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시청료의 면제 또는 일부 면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준비작업은 체신부 주관으로 진행될 것이다. 1991년 1월 1일부터 모든 요금은 서독의 규정과 동일하게 매년 사분기마다 부과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근거 자료를 통해 방송 예산과 현재의 재정 상황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 자료는 동시에 보도자료의 역할도 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0년 하반기에 2억 마르크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청료의 인상을 통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부분을 모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국의 직원의 해고와 단축근무제도의 도입, 주파수 영역을 독일우편에 반납하고, 방송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해체, 프로그램의 축소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출처_ BArch, DC 20-I/3/3047, 25. Sitzung des MR vom 15. Aug. 1990

문서 번호 1029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연방주의 입법권 영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안-최고인민회의 2차 심의

1990년 9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슈바르츠 의원, 언론미디어상임위원회 대변인, 사민당 힐스베르그 의원, 민사당 비스키 의원, 녹색당 바이스 의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회프너, 동독 내무부 디스텔 장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에서 열린 방송과도규정의 초안에 대한 2차 심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방송과도규정은 동독 방송을 신속하게 주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작업을 돕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언론미디어 상임위원회의 대변인 슈바르츠 의원은 이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길게 설명하였다. 이 규정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는 동독 정부의 언론정책이 대부분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는 먼저 언급하였다. 방송 프로그램이 이전에 해 오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통당의 영향하에 놓여 있다고 비난하였다. 과잉고용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고 정부 담당자들이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의 이중 체계의 필요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 구축될 주방송국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사민당의 힐스베르그 의원은 과도규정 초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전환 작업이 1991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에 특히 유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나아가 과도기에 해야 할 일 중에서 중요한 문제는 방송 프로그램의 개발이 아니라 구체제의 잔재적인 구조를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민사당의 비스키 의원은 과도규정 초안에 동의하지만 이를 통해 마치 동독 체제하에서 동독 방송이 이룬 모든 성과들이 묻혀버리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녹색당의 바이스 의원도 통일조약 36조와 과도규정 초안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신연방주들이 공동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합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이 법안은 4명의 반대표를 제외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출처_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35. Tagung, S. 1713-1716.